



#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

2022. 12.

김빛마로·김문정



#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2022. 12.

김빛마로 · 김문정



## 서 언

정부가 조세 또는 재정적 수단을 이용해 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경우 가구는 늘어난 예산제약하에서 소비행태를 변경할 유인을 갖게 되며, 정책 설계자 입장에서 현금성 지원 이후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이 크게 부상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인 국내 소비 진작 및 가구소득 지원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금의 규모, 지급 대상(선별지원 vs 보편지원) 등을 결정할 때, 구체적인 가구소비행태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일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사례에서 보듯이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어 근로빈곤층의 소비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을 효율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향후 자동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근로빈곤층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재정정책의 규모 역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소비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소비데이터가 부족하고 소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외생적인 변수를 찾기 어려워 가구소비행태와 관련된 미시적 증거는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가구소득에 충격을 주는 사건(event)을 외생적 변화로 활용하여 가구의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에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충격 사건을 활용하여 가구소비의 반응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정책(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소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양적

효과 분석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가구 소비수준 총량에 미친 정책효과를 추정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상품에 대한 선호가 동질적이라고 판단되는 특정 상품군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이 수혜가구들의 질 높은 제품 소비를 증대시키는지 파악하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분석 결과가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과 현물 지원 정책,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본원의 김빛마로 박사와 김문정 박사가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조언을 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송호신 교수님과 세종대 이태환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 도움을 준 익명의 논평자 두 분과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통해 좋은 조언을 해주신 장우현 박사님, 고지현 박사님을 비롯한 원내외 토론자들 그리고 자료정리와 보고서 편집을 위하여 애써준 정보름 연구원, 이응준 연구원, 박주혜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 의견이며, 저자가 속한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22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개관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수혜를 받으려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시행되고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입 이후 적용대상, 소득요건, 부양자녀요건, 재산요건, 주택요건 등이 계속해서 변경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2018 귀속분부터 대폭 확대하였다. 먼저, 2013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을 폐지하였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 탈락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구당 1억 4천만원 미만이었던 재산요건을 중위소득 65% 수준의 평균적인 자산수준인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단, 재산 규모가 1.4억원~2억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되도록 하였다. 또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각각 1,300만원에서 2천만원, 2,100만원에서 3천만원,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여 수혜 가능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역시 각각 85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에서 260만원,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큰 기존의 연간 지급방식이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 결과, 근로장려세제 지급 가구수는 제도 확대 전인 2017 귀속연도까지는 약 170만가구 정도였으나 제도 확대 이후인 2018 귀속연도부터는 2배 이

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약 410만가구, 2019년에는 431만가구, 2020년에는 420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총지급규모도 2017년 1조 3천억원 수준에서 2018년 4조 5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당 평균 수혜금액도 제도 개편 이전 72만~75만원에서 제도 개편 이후 103만~110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도 개편 이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지급 가구수 및 지급금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에 대한 기존 논의

### 가. 근로빈곤가구의 소비 관련 주요 선행연구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 중 하나로서 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효과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김태우 외(2016)는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인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 수혜가구는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row and McGranahan(2000)은 미국의 EIC(Earned Income Credit)가 저소득 수혜가구들의 계절적 소비 패턴(seasonal expenditure patterns)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IC 수혜가구가 비수혜가구보다 총지출과 내구재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IC 수혜가구는 비수혜가구보다 총지출은 3%, 내구재 지출은 9% 더 많았으며, 특히 EIC가 지급되는 2월에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dman-Bacon and McGranahan(2008)은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수혜자들이 환급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ITC 수급자는 자동차 구입 및 교통비 지출 등 내구재 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ITC 환급이 이루어지는 2월의 자동차 관련 물품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이 EITC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약 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EITC뿐 아니라 여러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운

용한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을 받은 수혜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현금지원의 소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다수 진행된 바 있다. 권홍진 외(2021)는 아동돌봄포인트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4월 13일부터 4주 동안 지급액 대비 34~44%에 달하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희·이수진(2021)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김미루·오윤혜(2020), 이태석 외(2020), 노용환(2021), 홍민기(2020), 남재현·이래혁(2021), 이승호·홍민기(2021) 등 다수의 연구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소비에 유의미한 효과를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과 관련 없이 가계의 소비성향 자체를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손연정 외(2019)는 소비 기준의 불평등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전반적인 소비 규모를 통한 불평등 측정에서 더 나아가 세부 소비 항목을 분류하여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및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평균 소비성향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 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용·서정원(2020)은 최근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성향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소비성향의 유의미한 변동성은 주로 50대와 60대 이상 가구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나. 근로빈곤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주요 논의

본 소절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소비행태에 대한 기존 문헌의 내용을 보다 유기적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근로빈곤층은 일시적 차원으로 그러한 지원금이 주어지더라도 소비반응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유동성 제약 등의 요인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동성 제약은 여러 요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먼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미

래 소비를 위한 예비적 저축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안정성도 낮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득 충격이 존재할 때, 개인 차원의 저축액이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생활급여가 없거나 부족해서 양적, 질적 소비수준이 저해된다. 안정적인 소득활동이나 저축활동을 하지 못하는 근로취약층은 대출금액이나 카드금액의 연체 확률도 높을 수 있다. 낮은 소득수준과 더불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근로취약층의 금융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서 유동성을 직접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근로빈곤층은 유동성 제약으로 인하여 저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내구재 소비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당한 수준의 지원금이 일시에 지불되는 경우, 근로빈곤층은 그동안 계획해왔던 내구재 품목에 소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oodman-Bacon and McGranahan(2008)은 EITC 수급자의 근로장려금이 차량구매 혹은 대중교통 지출 분야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현재 소비가 유동성 제약이 없었을 때의 소비수준보다 낮은 근로빈곤층은 일시적인 정부의 지원금을 수급한 후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소비활동은 지원금 수급 이후 단기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 제약은 소비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제약으로도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시간제 약과 예산제약을 동시에 완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유자녀 근로빈곤층에게 특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raga et al.(2020)에서는 EITC의 장기효과로서 근로장려제도가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유년기에 EITC에 더 노출될수록(즉, 유년기 자녀가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제 수급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녀가 22~27세 시기에 비만이 될 확률을 낮추고 스스로 보고한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McGranahan and Schanzenbach(2013)에서는 다른 현금성 지원과 달리 EITC가 특정 시점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잠재적 수급가구의 식료품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결과, EITC가 지급되는 시점(월)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육류, 유제품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구매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경기변동에 따라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변동하는가는 오래된 연구 주제 중의 하나였다. Meyer and Sullivan(2011)은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변동(실업률)에 대한 소비, 소득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저지들은 검토 결과 거시적인 경기변동이 소득 및 소비의 빈곤수준과 상호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인다.

다음으로 지급 주기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이 지급받은 현금을 소비와 저축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리고 소비하는 경우 이를 언제 소비하고(소비 평탄화 여부 등) 어떠한 재화를 구입하는지 등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저축과 소비에 대한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s and consumption)은 가구 소득, 소비와 저축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재의 소비수준은 전망되는 생애 소득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projected life-time earnings)의 함수이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가정하에서 생애주기 가설은 EITC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의 지급 주기 변화는 가구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신용제약 등의 요소가 이론에 추가 되면 예측은 달라진다. 현금성 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은 유동성 제약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가구 소비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현재의 1원 가치가 미래의 1원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가구는 동일한 금액을 더 빈번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분할지급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생애주기 가설이 가구의 행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심리적 요인까지 반영한 생애주기 가설을 제시하기도 한다(Thaler and Shefrin, 1981).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주기와 관련해서는 가구가 금액이 큰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 지급보다 정기 지급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빈번한 주기로 소액이 지급되는 경우에 비해 한 번에 큰 금액이 지급되면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 3.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 분석

#### 가. 분석자료 소개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수급 혹은 수급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소비행태에 대한 정보, 기타 인구통계학 및 사회경제적 변수 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분석에 활용가능한 자료들 중 이러한 모든 요소를 이상적으로 갖춘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CB 신용카드 자료,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 세 종류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 1) KCB 신용카드 자료

Korea Credit Bureau(이하, KCB)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개인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 18개 대형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자한 개인신용평가회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신용정보에 대한 법정동 단위의 집계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KCB 법정동 단위의 가구 집계자료(이하 KCB 가구 집계자료)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정동에 대한 월 단위자료이다. KCB 가구 집계자료에서는 특정 월의 법정동별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월소득, 카드 사용금액, 총대출잔액, 카드 이용금액(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별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대출금액, 대출연체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세제 수급자가 집중되어 있는 법정동에서 카드소비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출과 연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가구의 경우 그러한 소비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데이터의 총가구수는 10,287가구이다. 해당 자료

는 가구별 가구원수, 소득, 카드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구분), 신규대출 및 대출상환 금액(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로 구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2)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

농촌진흥청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 소비자패널」(이하 농식품패널) 자료는 가구단위에서의 농식품에 대한 상세한 소비 정보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패널은 2009년 최초 1,000가구로 표본이 구축된 이후 2015년 1,500가구, 2017년 2,050가구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노후화된 패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패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소득, 가구 구성원수, 자녀 여부, 가구 주거형태(아파트, 단독주택, 원룸 등), 가구 보유 차량수, 거주 지역, 가구원별 직업, 나이, 소득 등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변수가 제공된다. 또한 농식품패널에는 구입한 재화가 속하는 상품군(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품명, 구입액, 수량, 중량, 원산지, 브랜드, 재배방법(인증종류), 결제방법, 구입처(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 등 총 8개로 구분), 구입 날짜, 상품 구입을 위해 사용한 이동수단 등 농식품 소비와 관련된 매우 상세한 정보가 존재한다.

## 3)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는 통계청이 작성한 자료로 여러 가지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그 정확성을 높여 소득분배지표를 생성하거나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기초통계량을 제공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RDC 혹은 원격 접속에 의한 가금복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금복 자료는 전체 가구 대표성을 지닌 연간조사로서 가구 및 가구원 특질, 가구 소득·자산의 수준 및 유형, 근로장려세제 수급 여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금복 자료에는 소비총량에 대한

정보와 함께 소비구조(필수재/비필수재, 내구재/비내구재)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정보는 조사(응답자가 직접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금복 자료는 행정자료와 연계되어 있어 근로장려세제의 실제 수급가구를 데이터에서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나. 근로빈곤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 분석

본 소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KCB 및 농식품패널 자료에서 관측되는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 패턴을 소개한다.

KCB의 법정동 집계자료를 활용해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패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의 절댓값이 커진다. 이는 소비 자체가 정상재로서, (정태적)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소득과 함께 늘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소득 가구는 저소득 가구에 비해 양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질적 수준이 높은 소비를 하거나, 사치재 구매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고소득 가구는 저소득 가구에 비해 소득이나 자산을 기반으로 높은 신용도를 누릴 수 있고, 그 결과 소비지출 여력 역시 증가할 수 있다. 둘째, 1분위 가구를 제외하고는 고소득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저소득 가구의 평균소비(소득 대비 소비 비율) 성향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패턴이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로 고소득 가구가 유아녀 비율이 높고, 나아가 사교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소비수준이 더 높기 때문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소비수준의 변동성은 상위분위에서 크게 늘어난다. 소비를 필수재와 비필수재로 구분할 때, 필수품목이 아닌 재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비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체 소비 중에서 비필수재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보다 높다면,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구에서 보이는 소비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넷째,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의 변동성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줄어든다. 소득의 수준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소비비중이라는 변수는 단순 소비 변수에 비해 수준(level)으로 인한 소비변동성이 제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순 규모의 차이로 인한 소비변동성 제거 시, 고소득 가구는 저소득 가구에 비해 소비수준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저소득 가구는 기간별 소비수준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유동성 제약이 높아 기간 간 평탄한 소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패널 자료에서 나타난 패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 5분위별 소비 패턴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의 비례관계가 농식품 품목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충격이 농식품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가구(5분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의 소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 가구(1분위 및 2분위)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대체로 소비가 감소하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또한, 농식품 소비에 있어 명절(설날 및 추석)이 매우 중요한 이벤트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농촌패널 조사 대상자 중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정적 소득충격을 경험한 가구는 농식품 소비수준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이러한 패턴은 소득 1분위 및 2분위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소비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패턴도 관측되는 반면,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소비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필수재 소비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가구들에서 국산 소고기 소비를 줄이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정적 소득충격을 경험한 가구들의 소고기 총소비액 중 국산 소고기 소비액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는 소득충격에 직면한 가구들이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아닌 질적 측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농식품패널에 존재하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여 잠재적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를 구분한 후 소비 패턴을 살펴보았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장려세제 잠재적 수급가구의 농식품 소비수준이 근로장려세제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패턴은 주요 품목에 걸쳐 관측되었으며, 특히 가공식품, 축산물, 필수재 항목에서 그 차이가 컸다. 다음으로 근로장

려세제 지급이 확대된 2019년에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소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2019년 9월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지 그래프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19년 10월과 11월 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 정도는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농식품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는 경우에도 모든 품목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이 관측되었다. 소비의 질적 측면을 소고기 소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수급가구의 소비가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

#### 4.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분석

##### 가. 분석대상으로서 근로장려세제 선정 이유

반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노동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중요한 조세지출 제도인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소비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제도이다.

먼저, 제도 자체가 근로빈곤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액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취업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 수급액은 없다. 또한, 수급액의 점증구간 때문에, 취업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가구라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기존 일자리에서 근로시간을 늘려 취업소득을 증진할 유인이 존재한다.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은 결국 경제활동 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생계를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집단과, 경제활동 능력이 충분히 있거나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하여 국가로부터의 별도 지원이 필요 없는 집단 사이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세제가 2019년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해당 제도 변화가 2019년 신청분부터 바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의 외생적 소득충격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반기지급을 허용하는 등 큰 폭의 제도 변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더욱 특별한 것은, 해당 제도 변화가 2018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 신청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제도 변화에 반응하여 행태를 변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18년 세법개정안이 2018년 7월 30일에 발표되었으므로,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는 제도 변화에 반응한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 가능성은 0으로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기간인 2018년 7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제 주체들의 행태변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김문정·김빛마로(2020)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에 대해 40.5%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한 가구 중 일부만이 실제로 행태를 변경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인 2018년 하반기에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확대 발표에 반응하여 경제 주체들이 내생적으로 행태를 변화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소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였다.

#### 나. KCB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분석

KCB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가구의 소비금액 및 대출상환액 증가, 신규 신용대출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절댓값 혹은 로그값을 설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강건하게 나타났다. 특히 소비증대와 관련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수혜가구들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패턴이 추정되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인 근로빈곤가구 중 신용도가 높지 않은 가구의 비중이 높아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상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다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출상환금액 증가 효과는 소비 증가분의 약 20%로 나타났다. 즉, 지원금의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소비에 사용하고 일부는 대출상환에 활용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이후 전체 신규 신용대출금액은 감소하지만, 전체 신규 대출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근로빈곤가구의 신용대출이 일반적인 소비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인 경우가 많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한 결과는 수혜가구들의 소비수준을 확대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체크카드 사용액 대비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 다.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이하 농식품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이 농식품 소비 총량을 늘리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추가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수급가구들 소비의 질적 수준을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육류 소비액과 소비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소비액은 증가하면서 소비량은 감소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수급가구들이 소비량은 오히려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가격이 높은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패턴이 관측된 것이다. 또한 수급가구들은 과일 소비액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반면, 라면류 소비액은 유의미하게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품군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들이 노점 및 무점포에서의 소비액을 유의미하게 줄이는 패턴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수급가구들의 소비가 질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상술한 결과들 모두 자녀(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더 강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라.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자료를 활용해서는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잠재적 근로장려세제 수급집단 중에서 실제로 수급한 경우

를 처리집단으로 상정하고, 잠재적 근로장려세제 수급집단 중에서 실제로 수급하지 않은 경우를 통제집단으로 상정하였다. 둘째, 근로장려세제를 실제로 수급한 경우를 처리집단으로 상정하고, 근로장려세제를 수급하지 않으면서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임계수준 이하에 속하는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상정하였다. 잠재적 수급가구라는 테두리 내에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검토하는 경우 평균적인 소득이 1,500만원 이하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반면, 그러한 테두리를 추가로 제한하지 않고 실제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를 처리집단으로 상정하는 경우 평균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첫 번째 방식의 경우 2018년 귀속연도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지급 받은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집단의 소비효과를 포착하고, 두 번째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처리집단의 소비효과를 포착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의 절댓값을 종속변수로 상정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 처리집단(첫 번째 분석방법)의 경우 전체 표본에서는 식료품과 교육비에서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나타났다. 배우자 여부에 따라 표본을 분리하면, 무배우자 표본에서는 식료품과 통신비에서 유의미한 양의 소비효과가 나타났으며, 유배우자 표본에서는 교육비 지출은 늘어나지만 통신비 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집단(두 번째 분석방법)에서 무배우자 표본은 식료품과 가사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양(+)의 소비효과가 나타났고, 유배우자 표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무배우자 표본은 식료품, 통신, 가사서비스 측면에서 소비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통신기기는 오늘날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재인 점을 고려할 때, 통신비가 증가한 추정 결과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무배우자 가구가 기존에는 이러한 필수재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사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가사나 돌봄 등의 서비스를 의미할 수 있는데, 무배우자 가구의 가사서비스 소비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독거노인 가구 등을 다수 포함하는 무배우자 가구에서 그러한 서비스 수요가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유배우자 표본 분석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들의 교육비 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5. 결론 및 정책시사점

본고에서는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을 외생적 소득충격으로 이용하여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근로빈곤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CB 신용카드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근로빈곤가구가 소비의 양적, 질적 패턴을 유의미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구가 소비 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료품, 통신비, 가사서비스, 교육비 등 특정 분야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또한 KCB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수급가구가 전체 카드소비액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대출상환금액을 통계적으로 늘리고, 신규 신용대출금액은 줄이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일관되게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은 향후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 설계 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소비 진작 목적의 정책에서는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의한 효과가 강조되어 왔으나, 비교적 저소득 계층으로 볼 수 있는 근로빈곤가구에서도 현금 지원에 따른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관측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특정 기한을 두고 소비하지 않으면 지원 금액이 사라지는 형태가 아닌 활용처 및 기한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근로장려금에서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본 연구를 통해 근로빈곤가구의 소비가 제약되었던 분야를 식별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정책 설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정부가 본 연구에서 식별한 ‘현금지급 이후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제품군’의 소비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행정비용이 적고

소비자의 후생이 가장 크게 개선될 수 있는 현금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현금지급 이후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제품군’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현금지원보다는 현물지원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만, 현금지원 이후 해당 제품군의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제품군 소비가 가구 후생에 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책 목표가 적절히 설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현금지원으로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을 우려하여 현물지원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정부가 근로빈곤가구에 바우처 형식으로 현물 지원할 때 통신비, 육류, 과일 등의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효용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수혜가구들 소비의 질적 수준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정책을 평가할 때 장기적 재정 부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금성 지원 수혜가구가 유의미하게 과일류 소비를 증대시키고, 노점 및 무점포 소비를 감소시킨다면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장기적인 정부 지출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장기 영향이 존재한다면 근로빈곤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비교해볼 때 근로장려세제의 소비 효과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이들 가구 소비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외생적 제도 변화가 있었던 2019년 지급분의 소비효과만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에 의한 노동공급 행태 및 소득 변화가 소비에 미친 영향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주 목적은 수혜가구들의 근로 유인을 증대하고,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소비수준의 개선은 다소 부차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함에 있어 간과될 수 있는 가구 소비 효과가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때 제도 본연의 목적인 근로유인 증대 및 소득 재분배 개선 외에도 가구의 소비를 개선함으로써 수혜가구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목 차

I. 서론 .....	29
II.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개관 .....	31
1. 근로장려세제 개요 및 연혁 .....	31
가. 근로장려세제 개요 .....	31
나. 근로장려세제 연혁 .....	35
2.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50
III.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에 대한 기존 논의 .....	66
1. 근로빈곤가구의 소비 관련 주요 선행연구 .....	66
가. 근로장려세제 및 기타 현금성 지원정책의 소비효과 관련 연구 .....	66
나. 소비성향 관련 연구 .....	75
2. 근로빈곤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주요 논의 .....	76
IV.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 분석 .....	82
1. 분석자료 소개 .....	82
가. KCB 신용카드 자료 .....	82
나.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 .....	87
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	89
라. 요약 .....	91
2. 근로빈곤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 분석 .....	92
가. KCB 신용카드 자료 .....	93
나. 농식품패널 자료 .....	98

V.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분석 ..... 115

- 1. 분석대상으로서 근로장려세제 선정 이유 ..... 115
- 2. KCB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분석 ..... 119
  - 가. 분석방법 개관 ..... 119
  - 나. 분석 결과 ..... 127
- 3.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 136
  - 가. 분석방법 개관 ..... 136
  - 나. 분석 결과 ..... 146
- 4.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 168
  - 가. 분석방법 개관 ..... 168
  - 나. 분석 결과 ..... 172
- 5. 소결 ..... 182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 185

참고문헌 ..... 189

부록 ..... 194

---

---

## 표목차

〈표 II-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2022년 기준) .....	32
〈표 II-2〉 가구 유형 분류 기준(2022년 기준) .....	32
〈표 II-3〉 재산 요건(2022년 기준) .....	32
〈표 II-4〉 근로장려금 산정방법(2022년 기준) .....	34
〈표 II-5〉 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산정방법 .....	35
〈표 II-6〉 근로장려금 주요 개정 내역 .....	38
〈표 II-7〉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주요 개정 내역 .....	39
〈표 II-8〉 2019년 근로장려금 주요 개편 사항 .....	42
〈표 II-9〉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주요 개정 내역 .....	43
〈표 II-10〉 미국의 소득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44
〈표 II-1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액(2022년) .....	46
〈표 II-12〉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비교 .....	49
〈표 II-13〉 소득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51
〈표 II-14〉 업종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2016~2020년) .....	56
〈표 II-15〉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2016~2020년) .....	58
〈표 II-16〉 총급여액 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2016~2020년) .....	59
〈표 II-17〉 근로장려금 규모별 지급 현황(2016~2020년) .....	61
〈표 II-18〉 총급여액 및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수 및 가구수 비중 .....	63
〈표 II-19〉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가구수) .....	64
〈표 II-20〉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금액) .....	64
〈표 IV-1〉 법정동 단위 KCB 신용카드 자료: 기초통계량 .....	84
〈표 IV-2〉 가구단위 KCB 신용카드 자료: 기초통계량 .....	85
〈표 IV-3〉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 주요 변수 단순평균 통계량 .....	88
〈표 IV-4〉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자료 기초통계량 .....	91
〈표 IV-5〉 분석자료 요약 및 비교 .....	92

---

〈표 V-1〉 실증분석 개관 .....	118
〈표 V-2〉 자산 2억원 만족 여부에 관한 회귀분석(probit) .....	123
〈표 V-3〉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 기초통계량 .....	125
〈표 V-4〉 카드사용액 효과 .....	130
〈표 V-5〉 소득 대비 카드사용액의 비중 효과 .....	131
〈표 V-6〉 신규대출 효과 .....	132
〈표 V-7〉 대출상환금액 효과 .....	133
〈표 V-8〉 하위표본 분석 .....	135
〈표 V-9〉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총농식품소비액 .....	147
〈표 V-10〉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육류 소비액 .....	148
〈표 V-11〉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육류 소비량 .....	148
〈표 V-12〉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소고기 소비액 .....	149
〈표 V-13〉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소고기 소비량 .....	150
〈표 V-14〉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한우 소비액 .....	151
〈표 V-15〉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한우 소비량 .....	151
〈표 V-16〉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과일 소비액 .....	152
〈표 V-17〉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라면류 소비액 .....	153
〈표 V-18〉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노점 및 무점포 소비액 .....	154
〈표 V-19〉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필수재 1 소비액 .....	155
〈표 V-20〉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필수재 2 소비액 .....	155
〈표 V-21〉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효과: 전체 표본 .....	173
〈표 V-2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효과: 무배우자 표본 .....	173
〈표 V-23〉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효과: 유배우자 표본 .....	174

---

## 그림목차

[그림 II-1]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규모 .....	34
[그림 II-2]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2016~2020년) .....	51
[그림 II-3] 근로장려세제 여성 비중 추이(2016~2020년) .....	52
[그림 II-4] 근로장려세제 가구유형별 비중 추이(2016~2020년) .....	53
[그림 II-5] 근로장려세제 연령별 비중 추이(2016~2020년) .....	54
[그림 II-6] 근로장려세제 부양자녀 인원별 비중 추이(2016~2020년) .....	55
[그림 III-1] 실업률과 소득 및 소비 빈곤율 .....	79
[그림 IV-1] 소득과 소비 수준의 관계 .....	95
[그림 IV-2] 소득, 소비, 유동성 제약 간의 관계 .....	97
[그림 IV-3]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지출액(2017~2020년): 모든 농식품 .....	100
[그림 IV-4]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지출액(2017~2020년): 가공식품 .....	101
[그림 IV-5]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지출액(2017~2020년): 과일 및 채소류 .....	102
[그림 IV-6]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지출액(2017~2020년): 축산물 .....	103
[그림 IV-7]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지출액(2017~2020년): 수산물 .....	104
[그림 IV-8]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지출액(2017~2020년): 필수재 .....	105
[그림 IV-9] 부정적 소득충격 경험 가구 소비지출액(2019~2020년) .....	107
[그림 IV-10] 부정적 소득충격 경험 가구 소고기 품목 소비 패턴 (2019~2020년) .....	108
[그림 IV-11] 부정적 소득충격 경험 가구 중 소득 1분위 및 2분위 소비지출액 (2019~2020년) .....	109
[그림 IV-12] 부정적 소득충격 경험 가구 중 소득 1분위 및 2분위 소고기 품목 소비 패턴(2019~2020년) .....	110
[그림 IV-13] 잠정적 ETC 수급 여부에 따른 소비 패턴 비교(2018~2019년) ..	113

---

[그림 IV-14] 잠재적 EITC 수급 여부에 따른 소고기 품목 소비 패턴 (2018~2019년) .....	114
[그림 V-1] 자산 2억원 미만 확률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	124
[그림 V-2] KCB 가구자산 2018년 연소득(추정) 분포 .....	124
[그림 V-3] KCB 분석표본의 평행추세 가정 검토 .....	126
[그림 V-4] 평행추세 가정 확인 .....	142
[그림 V-5]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추정 결과: 소비액 .....	156
[그림 V-6] 근로장려세제의 육류 소비효과 추정 결과: 소비량 .....	157
[그림 V-7]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통제집단 재설정	158
[그림 V-8]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자녀 부양 효과	· 164
[그림 V-9]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전체 표본(자산=2억원 미만) .....	175
[그림 V-10]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무배우자 표본(자산=2억원 미만) .....	176
[그림 V-11]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유배우자 표본(자산=2억원 미만) .....	176
[그림 V-12]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전체 표본(자산=1억 5천만원 미만) ·	177
[그림 V-13]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무배우자 표본 (자산=1억 5천만원 미만) .....	177
[그림 V-14]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유배우자 표본 (자산=1억 5천만원 미만) .....	178
[그림 V-15]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전체 표본 (자산=2억원 미만) .....	179
[그림 V-16]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무배우자 표본 (자산=2억원 미만) .....	179
[그림 V-17]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유배우자 표본 (자산=2억원 미만) .....	180
[그림 V-18]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전체 표본 (자산=1억 5천만원 미만) .....	180

---

[그림 V-19]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무배우자 표본 (자산=1억 5천만원 미만) .....	181
[그림 V-20]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유배우자 표본 (자산=1억 5천만원 미만) .....	181

---



---

# I. 서론

---

정부가 조세 또는 재정적 수단을 활용해 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경우 가구는 늘어난 예산제약하에서 소비행태를 변경할 유인을 갖게 되며, 정책 설계자 입장에서 현금성 지원 이후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 소비는 여가수준과 함께 가구의 후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만큼 가구소비 행태를 이해함으로써 가구의 지원 전후 후생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구의 후생을 증진하는 지원방식 설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비성향을 파악함으로써 가구에 지급되는 소득지원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이 크게 부상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인 국내 소비 진작 및 가구소득 지원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금의 규모, 지급 대상(선별지원 vs 보편지원) 등을 결정할 때, 구체적인 가구소비행태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만한 소비데이터가 부족하고 소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외생적인 변수를 찾기 어려워 가구소비행태와 관련된 미시적 증거는 충분히 수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사례에서 보듯이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어 근로빈곤층의 소비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소득지원정책을 효율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구는 생애에 걸쳐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하에서(생애주기가설), 갑작스러운 소득충격에 대해 소비가 연동되는 가구는 유동성제약 및 보험부재 등의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구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소득이 충분하지

많은 근로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근로빈곤층은 자동화로 인하여 노동수요가 줄어드는 중간일자리(Autor and Dorn, 2013) 혹은 노동수요는 늘어나지만 직업안정성은 낮은 저숙련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자동화, 기술발전에 따라 근로빈곤층이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재정정책의 규모 역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의 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들의 소비행태를 파악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가구소득에 충격을 주는 사건(event)을 외생적 변화로 활용하여 가구의 소비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충격 사건을 활용하여 가구소비의 반응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정책(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소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양적 효과 분석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가구소비 수준에 미친 정책효과를 추정한다. 이때, 가구 특성에 따른 정책효과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질적 효과 분석에서는 상품에 대한 선호가 동질적이라고 판단되는 특정 상품군을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이 수혜가구들의 질 높은 제품 소비를 증대시키는지 파악하였다. 소비의 질적 효과 분석에서도 가구특성에 따른 이질성 분석을 함께 수행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통해 제도 현황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에 대한 선행연구 및 주요 논의를 소개한다. 제Ⅳ장에서는 분석자료를 소개한 후 근로빈곤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행한다. 제Ⅴ장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을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과 관련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

## Ⅱ.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개관<sup>1)</sup>

---

### 1. 근로장려세제 개요 및 연혁

#### 가. 근로장려세제 개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에 도입 목적,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산정 방법,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부모가 없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양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표 Ⅱ-1〉참고). 해당 금액 기준은 기존 금액에서 200만원씩 상향 조정한 것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혹은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표 Ⅱ-2〉참고).

---

1) 본 장의 일부 내용은 김문정·김빛마로(2020)의 제Ⅱ장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였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하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를 지급받는다(〈표 II-3〉 참고).

〈표 II-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2022년 기준)

(단위: 만원)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	3,200	3,8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표 II-2〉 가구 유형 분류 기준(2022년 기준)

가구 유형	기 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음
홀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 300만원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 300만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표 II-3〉 재산 요건(2022년 기준)

재산 합계액	재산요건 충족 여부
1억 4천만원 미만	요건 충족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요건 충족 단,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
2억원 이상	요건 미충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또한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제외), 해당 소득세 과세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은 신청제 외자에 해당하며, 2022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는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sup>2)</sup>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연간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고소득 종사자들이 취업 시기 등의 이유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결정된다. 각 가구구분별로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액이 같이 증가하는 점증구간, 근로장려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탄구간, 총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으로 구성된다(〈표 II-4〉, [그림 II-1] 참고).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은 점증구간으로 해당 총급여액의 400분의 150이 지급된다. 총급여액 400만~900만원 구간에서는 1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고(평탄구간), 총급여액 900만~2,200만원 구간은 점감구간으로 150만원에서 (총급여액 - 900만원) × 1,300분의 150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 가구도 단독가구와 마찬가지로 점증, 평탄, 점감 구간으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며, 가구 유형별로 기준 금액은 상이하다.

---

2)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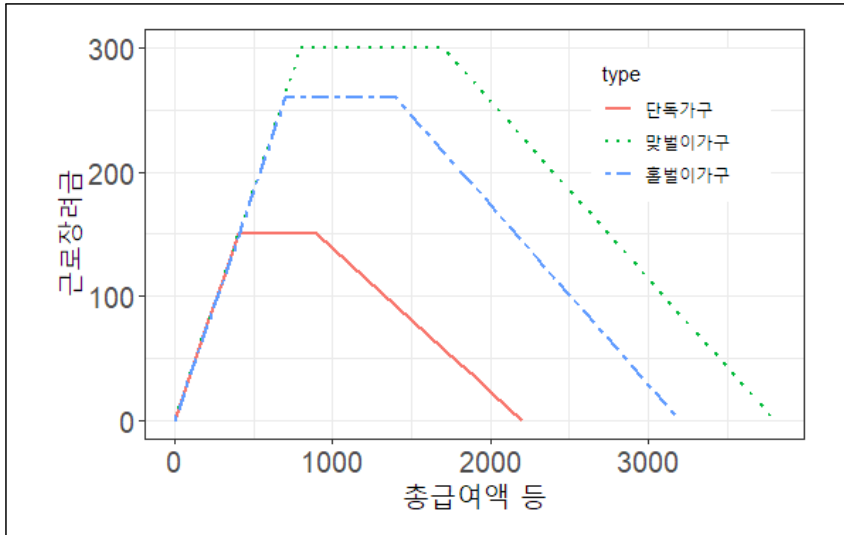
〈표 II-4〉 근로장려금 산정방법(2022년 기준)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50
홀별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60
맞별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그림 II-1] 가구 구성 및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규모

(단위: 만원)



자료: 저자 작성

한편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우선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표 II-5〉 참조).

〈표 II-5〉 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산정방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하반기 소득분	2022. 3. 1. ~ 3. 15	2022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 정산)
2022년 상반기 소득분	2022. 9. 1. ~ 9. 15	2022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id=7784>, 검색일자: 2022. 6. 27.

## 나. 근로장려세제 연혁

### 1) 최초 도입 이후 주요 변경사항<sup>3)</sup>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2006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2008년 시행, 2009년부터 지급되었다. 근로장려세제는 도입 이후 적용대상, 소득요건, 부양자녀요건, 재산요건, 주택요건 등이 계속해서 변경된 바 있다.

제도 시행 직후인 2009년에는 부양자녀조건이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주택요건’을 신설하여 5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 세대까지 제도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2년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무자녀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다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최대지급액은 다르게 적용하였다. 또 기존에는 소득과약이 용이한 근로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신상화·김문정(2019), 송헌재(2022), 기획재정부(2013) 등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적용 대상을 보험모집원과 방문판매원까지 확대하였으며, 2009년 도입한 주택요건의 금액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2013년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단독가구)와 탈기초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도입 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에 신청연도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급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2014년에는 부양자녀 수가 아닌 현재와 같은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단독가구는 가구주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면 최대 70만원을 지급하였다.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2,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70만원을,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이 연간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10만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재산 요건이 기존 1억원 미만에서 1억 4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무주택 또는 6천만원 이하 1주택 소유가구로 수혜대상을 한정하는 ‘주택요건’은 폐지되었다. 재산은 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예·적금, 골프장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재산규모가 1억원~1억 4천만원 구간에 속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2015년에는 지급 대상을 전문직<sup>4)</sup>을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을 기존 60세에서 50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2017년에는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을 재차 완화하여 40세 이상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상향 조정하였다. 단독가구에 대한 최대지급액은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최대지급액도 각각 170만원과 210만원에서 185만원과 23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주택요건이 폐지되어 무주택 또는

---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만 부여되던 신청자격을 보유주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2018년에는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30세 이상으로 다시 하향되면서 수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 85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019년에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제도변화가 있었다. 특히, 2019년 제도 변화는 뒤에서 소개하는 실증분석 파트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식별하는 데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9년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소절에서 별도로 소개한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한 소득상한금액을 가구유형별로 각 200만원씩 상향 조정하였다. 기존에는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표 II-6〉 근로장려금 주요 개정 내역<sup>1)</sup>

구분	2009	2012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자영업자 <sup>2)</sup> 포함	-	-	-
신청 제외	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	신청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급여를 받은 자	-	-	-	-	-
가구원 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무자녀 가구 포함 (단, 배우자 필요)	60세 이상 단독가구 포함	-	50세 이상 단독가구 포함	40세 이상 단독가구 포함	30세 이상 단독가구 포함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재산 요건	1억원 미만	-	-	1억 4천만원 미만	-	-	-	2억원 미만
주택 요건	5천만원 이하 1주택보유 가구 포함	6천만원 이하 1주택 보유 가구 포함	-	1주택 가격 기준 폐지	-	주택요건 폐지	-	-

주: 1) 근로장려금 산정방식 관련 개정 사항은 〈표 II-7〉에서 별도로 소개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은 제외

자료: 신상화·김문정,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송헌재, 「근로장려세제(ETC)의 정책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2; 기획재정부,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설명」, 2013;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7〉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주요 개정 내역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
2008 (최초 시행 당시)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분의 10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80만원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16
2009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분의 15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만원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4
2012	부양 자녀 없는 경우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분의 7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1,300만원 -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부양 자녀 1명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분의 7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8
	부양 자녀 2명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2,100만원 미만	(2,100만원 - 총급여액 등) × 90분의 17
	부양 자녀 3명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분의 2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2,500만원 - 총급여액 등) × 13분의 2
2014	단독 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0
	홀벌이 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2,100만원 미만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170
	맞벌이 가구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천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1,200분의 210

〈표 II-7〉의 계속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
2017	단독 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7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77만원
		9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77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7
	홀벌이 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85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85만원
		1,200만원 이상~2,100만원 미만	185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185
	맞벌이 가구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30
		1천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230만원
		1,3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23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1,200분의 230
2018	단독 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85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85만원
		9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8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85
	홀벌이 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200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이상~2,100만원 미만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200
	맞벌이 가구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50
		1천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250만원
		1,3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1,200분의 250
2019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150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50
	홀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1,900분의 300

〈표 II-7〉의 계속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
2022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300분의 150
	홀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8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2,100분의 3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225&ancYd=20211228&ancNo=18634&efYd=2022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J100:5>, 검색일자: 2022. 10. 18.

## 2) 2019년 제도 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2018 귀속분부터 대폭 확대하였다(〈표 II-8〉 참조). 정부는 경제 양극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및 소득여건 악화와 당시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도를 개정하였다.

먼저, 2013년부터 지속되어 오던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을 폐지하였다. 2013년 60세를 시작으로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완화해 오다가 2019년에는 이를 완전 폐지하여 연령과 관계없이 기타 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단독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가구당 1억 4천만원 미만이던 재산요건을 중위소득 65% 수준의 평균적인 자산수준인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단, 재산 규모가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 구간에 속하면 지급액이 50% 감액되도록 하였다. 또한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각각 1,300만원에서 2천만원, 2,100만원

에서 3천만원,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여 수혜 가능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단독가구는 독신·고령 가구의 근로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존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다. 맞벌이가구와 홀벌이가구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넓은 수준인 중위소득의 65% 수준까지 확대하였다.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역시 각각 85만원에서 150만원, 200만원에서 260만원,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단독가구의 지원 강화를 위해 맞벌이가구 최대지급액에 균등화소득<sup>5)</sup> 개념을 적용하여 단독가구 75%, 홀벌이가구 30%, 맞벌이가구 20%를 각각 인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큰 기존의 연간 지급방식이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효과가 미미한 점을

〈표 II-8〉 2019년 근로장려금 주요 개편 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연령요건		30세 미만 단독 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포함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재산 1억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가구당 2억원 미만 재산 1.4억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1인 중위 65%)	2천만원 미만(중위 100%)
	홀벌이	2,100만원 미만(3인 중위 48%)	3천만원 미만(중위 65%)
	맞벌이	2,500만원 미만(4인 중위 46%)	3,600만원 미만(중위 65%)
최대 지급액	단독	85만원	150만원
	홀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	600만~900만원	400만~900만원
	홀벌이	900만~1,200만원	700만~1,400만원
	맞벌이	1천만~1,300만원	800만~1,700만원
지급방식		다음 연도 연 1회 지급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 가능 (근로소득자)
압류규정		압류규정 미비	일정 금액 이하 압류 금지

주: 변경사항은 2019년 신청분부터 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2018 저자 수정

5) 균등화소득은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눈 개념이다.

〈표 II-9〉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주요 개정 내역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
2018년	단독 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85
		6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85만원
		9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8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85
	홀벌이 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200
		9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만원 이상~2,100만원 미만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200
	맞벌이 가구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50
		1천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250만원
		1,3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25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1,200분의 250
2019년	단독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분의 150
	홀벌이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600분의 260
	맞벌이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1,900분의 3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undefined>, 검색일자: 2022. 6. 27.

고려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19년 제도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0세 이상으로 한정했던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대 단독가구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들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미국의 근로장려세제 운영방향과 상이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미국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부양자녀 수에 연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대폭 축소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021년 1,502달러에서 2022년 560달러로 축소하였으며,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한 지급기준액도 축소하여 수급대상을 제한하였다. 반면, 부양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과 지급기준액 모두 소폭 상향하였다.

〈표 II-10〉 미국의 소득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부양자녀 수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지급기준액(Max Adjusted Gross Income)	
		single or head of household filers	married joint filers
2021 Tax Year			
0명	\$1,502	\$21,430	\$27,380
1명	\$3,618	\$42,158	\$48,108
2명	\$5,980	\$47,915	\$53,865
3명 이상	\$6,728	\$51,464	\$57,414
2022 Tax Year			
0명	\$560	\$16,480	\$22,610
1명	\$3,733	\$43,492	\$49,622
2명	\$6,164	\$49,399	\$55,529
3명 이상	\$6,935	\$53,057	\$59,187

자료: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www.irs.gov, 검색일자: 2022. 9. 1.

###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정부는 앞서 소개한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다양한 현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소절에서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거나 도입 예정인 주요 현금지원 제도의 개요를 소개한다.

### 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빈곤층 및 실업자 등의 안정적 생활을 돕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0년에 도입되었다. 201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기초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고,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가지 급여로 구성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30%에 가구의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하는 보충급여적 성격의 급여이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진찰,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개량 관련 급여를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해산·장제 급여는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사망 시 1인당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급여이다.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때 지급하며 기준 중위소득 비율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egin{aligned} \text{소득평가액} &=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공제}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 \end{aligned}$$

소득평가액의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이며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필요한 가구의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비용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차감해주는 항목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기본재산액은 신청가구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액이다. 생계·주거·교육 급여는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의료급여는 대도시 54백만원, 중소도시 34백만원, 농어촌 29백만원을 기본재산액에서 제외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를 적용한다.

2022년 기준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은 가구 규모별로 상이하며 1인가구 583,444원, 7인가구 2,334,178원이다. 생계급여 지원액은 각 가구가 속하는 가구 규모에 해당하는 지급기준액에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표 II-1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액(2022년)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기준금액 (A의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2, p. 247

#### 나) 기초연금

정부는 2014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자 만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소득평가액} = (\text{근로소득} - 103\text{만원}) \times 70\% + \text{기타소득}$$

$$\begin{aligned}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 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text{천만원}) \\ & - \text{부채} \times 4\% \div 12\text{개월} + \text{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end{aligned}$$

제도 도입 당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이었으며, 2022년 현재는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이다. 또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4년 20만원, 2015년 20만2,600원, 2016년 20만4,010원, 2017년 20만6,050원,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2022년 30만7,500원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 2020년 566만명이었으며 2022년에는 약 628만명이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2018년 9월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만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연령 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도입 당시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였다.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 조건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보편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하였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하였고, 2022년 4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였다.

아동수당은 대상아동당 월 10만원을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

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지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 라) 가정양육수당(영아수당)<sup>6)</sup>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120% 기준 저소득층의 만 0~1세 아동(24개월 미만)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이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한정됨에 따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였다.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편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지원대상 아동의 연령도 만 0~6세(83개월)까지 확대하였다. 지원금액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3개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였다. 2019년부터는 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인 12월까지로 보육료·유아 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였다.

2022년 1월부터는 영아수당이 기존 양육수당을 대체하여 시행되고 있다. 2021년생까지는 양육수당을, 2022년생부터는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면 영아수당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전환되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매달 30만원이다.

---

6) 보건복지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2020. 3. 5.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보도자료, 2019. 1. 11.  
보건복지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2013. 1. 25.  
보건복지부, 「2011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도자료, 2010. 12. 30.  
보건복지부,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아동(0~1세)에게 양육수당 지원」, 보도자료, 2009. 5. 4.

〈표 II-12〉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비교

구분	근로장려세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sup>2)</sup>
지급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만 65세 이상	만 0~7세 아동	86개월 미만 아동	만 0~1세 아동
재산요건	가구당 2억원 미만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생계 30%, 의료 40%, 주거 46%, 교육 50%)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0만원)	없음	없음	없음
소득 요건	단독	2,200만원 미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홀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sup>1)</sup>	단독	150만원	· 생계급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1인당 80만원	3,690,000원	120만원	0~11개월 240만원, 12~23개월 180만원, 24~35개월 120만원	2023년: 0~11개월 840만원, 12~23개월 420만원 2024년: 0~11개월 1,200만원, 12~23개월 600만원
	홀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					
지급주기	연1회		생계급여 월1회	월 1회	월 1회	월 1회	월 1회
지급방식	계좌지급		계좌지급	계좌지급	계좌지급	계좌지급	계좌지급

주: 1) 기초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는 월별 지급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금액

2)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2023년 예산안의 시행예정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마) 부모급여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만 0~1세 아동의 가정에 월 30만원을 지급하던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하여 도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여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2024년에 만 0세 100만원, 만 1세에게는 5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2.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본 소절에서는 근로장려세제 현황을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 총계 추이를 살펴본 후 성별, 연령, 업종, 가구유형, 자산, 소득 등 다양한 변수를 기준으로 통계를 제시하여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의 특징을 식별하고자 한다.

근로장려세제 지급 가구수는 제도 확대 전인 2017 귀속연도까지는 약 170만 가구 정도였으나 제도가 확대된 2018 귀속연도부터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약 410만가구, 2019년에는 431만 가구, 2020년에는 42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총지급규모도 제도 개편 이전인 2017년 1조 3천억원 수준에서 2018년 4조 5천 억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당 평균 수혜금액도 제도 개편 이전 72만~75만원에서 제도 개편 이후 103만~110만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제도개편을 통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지급 금액도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도 개편 이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지급 가구수 및 지급금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사이의

평균 지급금액 차이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소득 신고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2016년 69만원에서 2020년 103만원으로, 사업소득 신고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2016년 78만원에서 2020년 109만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II-13〉 소득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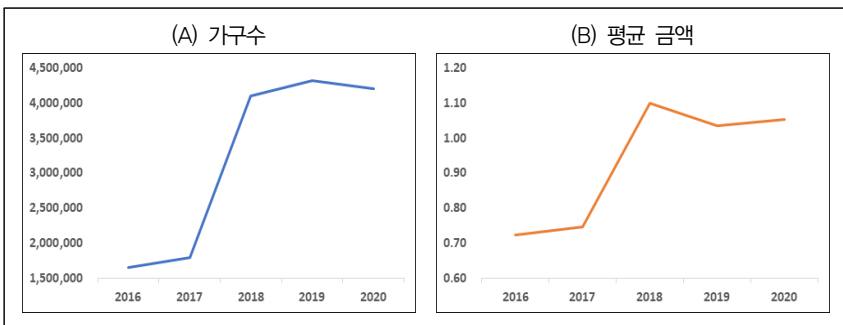
귀속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근로소득	가구수	1,092,306	1,163,074	2,593,410	2,731,655	2,535,565
	금액	756,134	832,025	2,754,273	2,743,629	2,603,426
	평균	0.69	0.72	1.06	1.00	1.03
사업소득	가구수	562,752	630,160	1,489,796	1,573,052	1,655,775
	금액	440,573	506,071	1,723,674	1,704,885	1,803,590
	평균	0.78	0.8	1.16	1.08	1.09
종교인 소득	가구수	-	-	-	14,260	15,493
	금액	-	-	-	19,752	21,627
	평균	-	-	-	1.39	1.40
합계	가구수	1,655,058	1,793,234	4,102,022	4,318,967	4,206,833
	금액	1,196,707	1,338,096	4,504,865	4,468,265	4,428,643
	평균	0.72	0.75	1.10	1.03	1.05

-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평균은 1가구당 해당 소득의 평균 금액을 의미  
 3) 2020년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14-3-2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II-2〉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2016~2020년)

(단위: 가구,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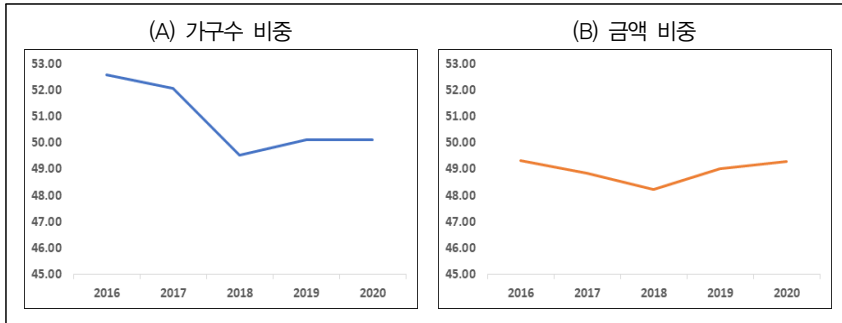
-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평균 금액은 1가구당 해당 소득의 평균 금액을 의미  
 3) 2020년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14-3-2를 참고하여 작성

근로장려세제 지급 가구 중 여성의 비중은 제도 개편 이전에는 남성보다 높았으나, 제도 개편 이후에는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금액 기준으로도 제도 개편 이후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과 2020년에는 소폭 반등하는 패턴도 확인된다.

[그림 II-3] 근로장려세제 여성 비중 추이(2016~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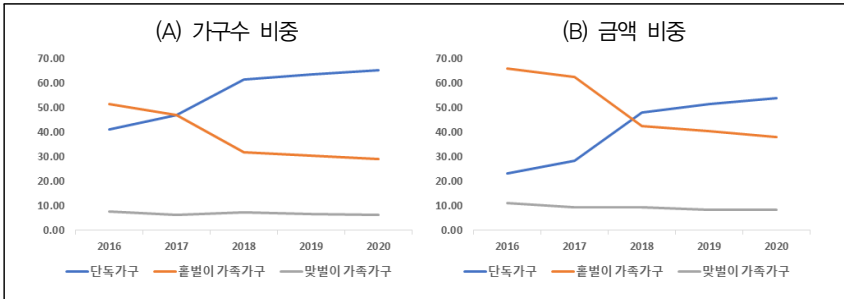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모든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자료: 각 연도의 『국세통계연보』 14-3-2를 참고하여 작성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 지급 현황을 가구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제도 개편 이후 단독가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홑벌이가구의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홑벌이가구의 가구수 비중은 2016년 51.34%로 가장 높았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단독가구의 가구수 비중은 2016년 41.17%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두 가구 비중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지급 금액 비중 역시 2018년부터 단독가구의 비중이 홑벌이가구의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18 귀속분부터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20대 저소득 단독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편 이전과 이후 기간에 걸쳐 맞벌이가구의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 근로장려세제 가구유형별 비중 추이(2016~2020년)

(단위: %)



-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모든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3) 홀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동거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4)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자료: 각 연도의 『국세통계연보』 14-3-2를 참고하여 작성

2018 귀속분부터 적용된 근로장려세제 연령요건 폐지의 효과는 연령별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18년부터 20~30세 근로장려세제 지급 가구수 및 지급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모든 연령 구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40세의 수급 비중은 단독가구 연령제한을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한 2017 귀속년에 소폭 증가한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세, 50~60세 구간의 경우 가구수와 금액 비중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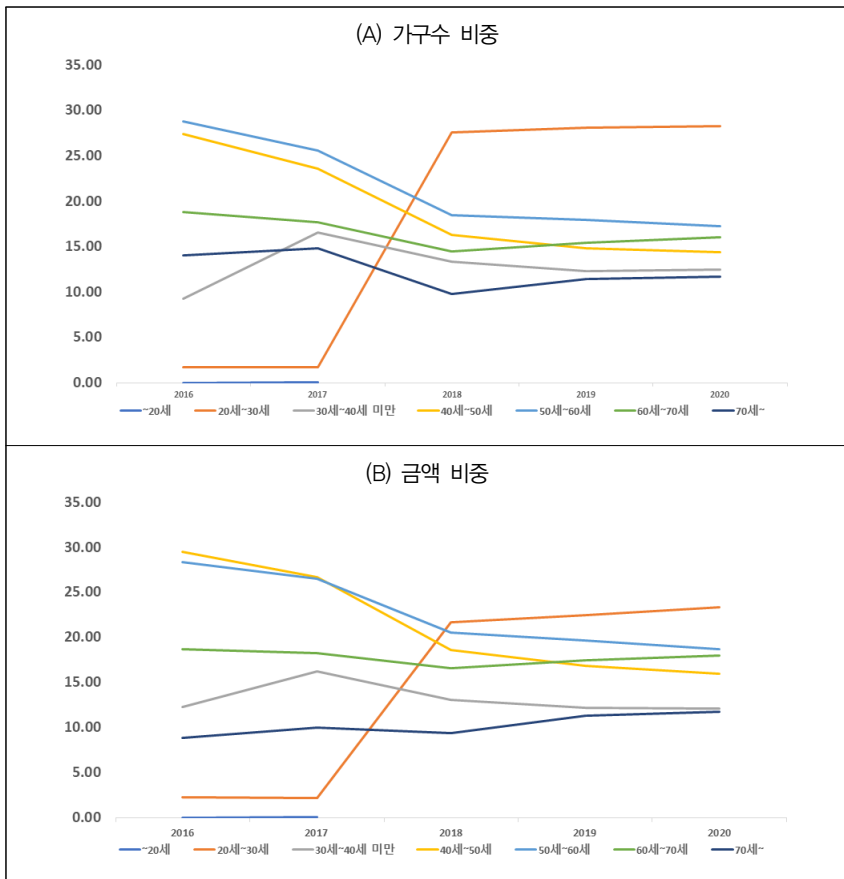
또한 2018 귀속분부터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수혜비중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녀 인원에 따른 비중을 살펴보면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수 비중이 2016년 69.75%에서 2020년 87.49%로 증가하였다. 부양자녀가 1명 및 2명인 가구수 비중은 각각 2016년 16.96%, 10.58%에서 2020년 7.15%, 4.28%로 감소하였으며 지급 금액 비중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된다. 이러한 패턴은 앞서 언급한 제도 변화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저출산에 의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의 비중 자체가 감소한 영향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저연령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8 귀속연도부터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금액과 지원금액을 모두 상향한 바 있다. 이는 부양자녀 수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연동하고 있고 최근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과 지급 기준 소득상한액을 대폭 축소한 미국과 상이한 제도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II-5] 근로장려세제 연령별 비중 추이(2016~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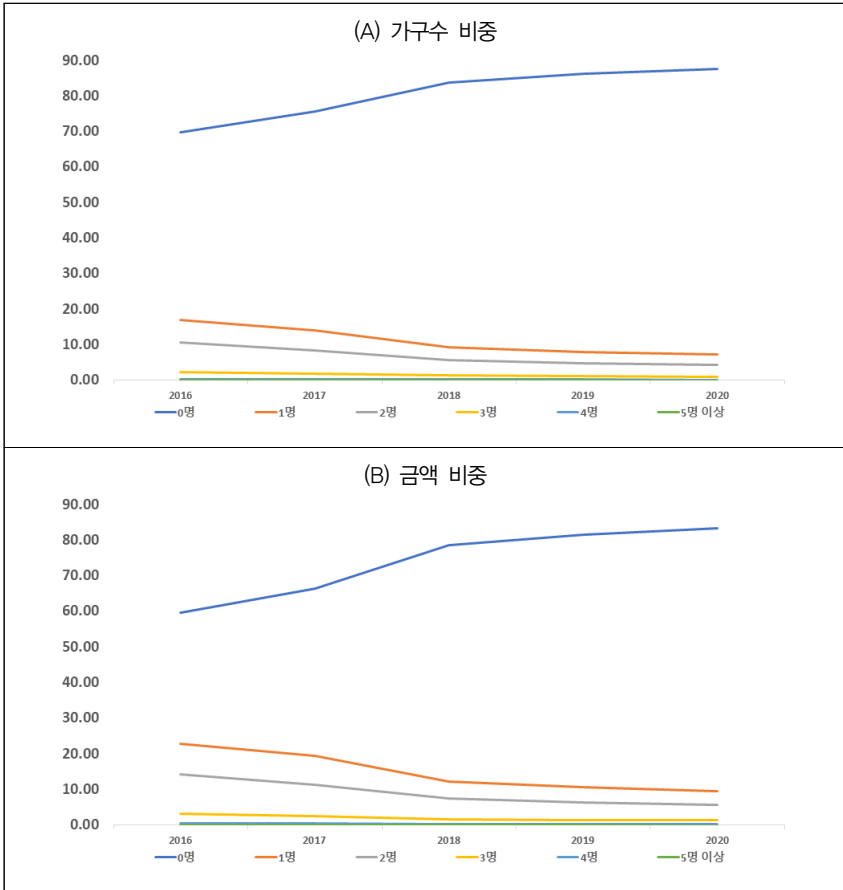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모든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자료: 각 연도의 『국세통계연보』 14-3-2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11-6] 근로장려세제 부양자녀 인원별 비중 추이(2016~2020년)

(단위: %)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모든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자료: 각 연도의 『국세통계연보』 14-3-2를 참고하여 작성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적용역과 서비스업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가구수 비중은 2020년 기준 각각 25.81%, 12.18%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용역 업종의 가구수를 살펴보면 2017년 302,795가구에서 2018년 874,110가구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플랫폼 기반 인적용역 사업자 등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용역과 서비스업 외에도 건설업, 음식업, 제조업 가구수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2016년 각각 11.08%, 9.46%, 9.02%로 인적용역과 서비스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건설업의 2020년 가구수 비중이 7.55%로 2016년 11.08%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음식업과 제조업은 각각 8.91%, 7.82%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밖에, 농·임·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부동산매매업, 숙박업은 가구수와 금액 비중 모두 1% 미만으로 확인된다.

〈표 II-14〉 업종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2016~2020년)

(단위: 가구, 백만원, %)

구분	가구수					금액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농·임·어업	13,208 (0.84)	12,598 (0.74)	18,140 (0.47)	21,664 (0.51)	21,228 (0.50)	9,133 (0.80)	9,455 (0.74)	21,767 (0.51)	24,231 (0.55)	23,958 (0.54)
광업	475 (0.03)	517 (0.03)	923 (0.02)	951 (0.02)	796 (0.02)	343 (0.03)	415 (0.03)	1,122 (0.03)	1,106 (0.03)	876 (0.02)
제조업	141,611 (9.02)	145,098 (8.57)	277,573 (7.14)	354,457 (8.41)	328,784 (7.82)	106,277 (9.31)	111,368 (8.70)	294,123 (6.84)	353,414 (8.05)	331,038 (7.47)
전기·가스·수도업	773 (0.05)	818 (0.05)	1,575 (0.04)	4,180 (0.10)	4,992 (0.12)	462 (0.04)	559 (0.04)	1,65 (0.04)	4,063 (0.09)	5,044 (0.11)
도매업	74,401 (4.74)	78,842 (4.66)	176,789 (4.55)	188,979 (4.48)	175,460 (4.17)	59,013 (5.17)	63,653 (4.97)	194,546 (4.52)	194,409 (4.43)	182,462 (4.12)
소매업	94,046 (5.99)	105,026 (6.20)	235,158 (6.05)	257,410 (6.11)	257,596 (6.12)	74,063 (6.49)	84,087 (6.57)	271,257 (6.31)	277,972 (6.33)	277,662 (6.27)
부동산매매업	1,634 (0.10)	1,665 (0.10)	2,305 (0.06)	3,745 (0.09)	3,436 (0.08)	1,272 (0.11)	1,317 (0.10)	2,568 (0.06)	3,898 (0.09)	3,584 (0.08)
건설업	174,050 (11.08)	180,895 (10.68)	194,078 (5.00)	345,329 (8.19)	317,517 (7.55)	128,599 (11.26)	142,282 (11.11)	231,556 (5.38)	383,121 (8.72)	350,279 (7.91)
음식업	148,564 (9.46)	158,819 (9.38)	345,849 (8.90)	405,274 (9.62)	374,906 (8.91)	106,039 (9.29)	118,693 (9.27)	377,671 (8.78)	413,316 (9.41)	386,300 (8.72)
숙박업	6,671 (0.42)	7,394 (0.44)	18,815 (0.48)	20,686 (0.49)	16,269 (0.39)	4,564 (0.40)	5,234 (0.41)	19,162 (0.45)	19,749 (0.45)	16,376 (0.37)

〈표 II-14〉의 계속

구분	가구수					금액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운수·창고 ·통신업	99,678 (6.35)	95,856 (5.66)	162,634 (4.19)	162,956 (3.87)	153,970 (3.66)	90,307 (7.91)	94,820 (7.40)	234,891 (5.46)	221,664 (5.05)	204,205 (4.61)
부동산임대업 포함	94,598 (6.02)	102,042 (6.03)	164,639 (4.24)	203,982 (4.84)	222,359 (5.29)	52,208 (4.57)	61,032 (4.77)	178,113 (4.14)	213,004 (4.85)	248,790 (5.62)
대리·중개 ·도급업	60,915 (3.88)	69,662 (4.11)	176,086 (4.53)	194,840 (4.62)	207,751 (4.94)	43,266 (3.79)	49,889 (3.90)	175,471 (4.08)	185,446 (4.22)	195,611 (4.42)
서비스업	195,983 (12.48)	206,045 (12.17)	444,422 (11.44)	537,633 (12.76)	512,542 (12.18)	152,917 (13.39)	165,737 (12.94)	484,877 (11.28)	543,340 (12.37)	528,918 (11.94)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50,830 (3.24)	50,719 (2.99)	93,166 (2.40)	91,740 (2.18)	93,914 (2.23)	40,209 (3.52)	41,836 (3.27)	111,905 (2.60)	104,317 (2.38)	106,818 (2.41)
인적응역	247,660 (15.77)	302,795 (17.88)	874,110 (22.50)	994,843 (23.61)	1,085,940 (25.81)	181,924 (15.94)	228,177 (17.81)	939,944 (21.86)	1,008,189 (22.96)	1,110,725 (25.08)
기타	165,345 (10.53)	174,821 (10.32)	698,949 (17.99)	425,608 (10.10)	429,373 (10.21)	91,010 (7.97)	102,267 (7.98)	759,718 (17.67)	440,289 (10.03)	455,997 (10.30)
합계	1,570,442 (100.00)	1,693,612 (100.00)	3,885,211 (100.00)	4,214,277 (100.00)	4,206,833 (100.00)	1,141,606 (100.00)	1,280,821 (100.00)	4,300,342 (100.00)	4,391,528 (100.00)	4,428,643 (100.00)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모든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자료: 각 연도의 『국세통계연보』 14-3-4를 참고하여 작성

재산규모별로 살펴보면 2020 귀속연도 기준 재산이 비교적 높은 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먼저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재산규모 1억 4천만원 이상인 가구수 비중이 19.22%로 가장 높았으며, 3천만원~5천만원 구간 17.24%, 1억원~1억 4천만원 구간 16.91%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금액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구간은 재산규모 1억원~1억 4천만원 구간 (19.69%)이었으며, 다음으로는 7천만원~1억원 구간(18.33%), 3천만원~5천만원 구간(18.29%)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1천만원 미만 가구수 비중은 2016년 4.24%에서 2020년 3.24%로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재산규모 구간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15〉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2016~2020년)

(단위: 가구, 백만원, %)

구분	가구수					금액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1천만원	66,553 (4.24)	78,090 (4.61)	111,925 (2.88)	118,952 (2.82)	136,318 (3.24)	43,736 (3.83)	57,446 (4.49)	123,382 (2.87)	123,507 (2.81)	142,192 (3.21)
1천만원~ 3천만원	306,647 (19.53)	312,246 (18.44)	545,566 (14.04)	551,370 (13.08)	527,480 (12.54)	226,681 (19.86)	240,800 (18.80)	623,934 (14.51)	606,407 (13.81)	580,372 (13.10)
3천만원~ 5천만원	359,984 (22.92)	380,250 (22.45)	735,293 (18.93)	754,899 (17.91)	725,466 (17.24)	282,049 (24.71)	307,858 (24.04)	855,895 (19.90)	844,036 (19.22)	809,792 (18.29)
5천만원~ 7천만원	264,273 (16.83)	286,446 (16.91)	565,752 (14.56)	608,138 (14.43)	616,342 (14.65)	215,951 (18.92)	242,349 (18.92)	679,345 (15.80)	696,421 (15.86)	706,588 (15.95)
7천만원~ 1억원	300,388 (19.13)	330,531 (19.52)	623,504 (16.05)	665,056 (15.78)	681,585 (16.20)	254,534 (22.30)	292,554 (22.84)	776,704 (18.06)	790,099 (17.99)	811,753 (18.33)
1억원~ 1억 4천만원	272,597 (17.36)	306,049 (18.07)	644,904 (16.60)	691,518 (16.41)	711,256 (16.91)	118,655 (10.39)	139,814 (10.92)	819,784 (19.06)	840,382 (19.14)	871,805 (19.69)
1억 4천만원~	-	-	658,267 (16.94)	824,344 (19.56)	808,386 (19.22)	-	-	421,298 (9.80)	490,676 (11.17)	506,140 (11.43)
합계	1,570,442 (100.00)	1,693,612 (100.00)	3,885,211 (100.00)	4,214,277 (100.00)	4,206,833 (100.00)	1,141,606 (100.00)	1,280,821 (100.00)	4,300,342 (100.00)	4,391,528 (100.00)	4,428,643 (100.00)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모든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자료: 각 연도의 『국세통계연보』 14-3-4를 참고하여 작성

총급여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수 비중이 대체로 높고, 금액 비중은 중간구간 소득의 비중이 높았다. 예를 들어, 1백만원 이하 및 1백만원~2백만원 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가구수 비중은 각각 2016년 7.96%와 10.59%, 2020년 8.24%와 6.32%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이들 가구의 금액 비중은 각각 2016년 0.9%와 1.49%, 2020년 3.48%와 3.1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중 중간 정도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 10백만원~12백만원 구간에 속하는 가구의 가구수 비중은 2016년 9.53%, 2020년 6.80%였는데 금액 비중은 2016년 13.86%, 2020년 9.37%로 가구수보다 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총급여액 등 규모가 큰 구간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수와 금액 비중이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지원대상이 되는 가구유형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2018 귀속연도 기준 3천만원 이상 구간의 경우 단독가구 및 홑벌이가구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맞벌이가구에 속하는 경우에만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표 II-16〉 총급여액 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2016~2020년)

(단위: 가구, 백만원, %)

구분	가구수					금액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1백만원	124,985 (7.96)	134,500 (7.94)	303,935 (7.82)	334,595 (7.94)	346,612 (8.24)	10,225 (0.90)	11,781 (0.92)	51,967 (1.21)	64,249 (1.46)	66,131 (1.49)
1백만원~ 2백만원	166,287 (10.59)	136,961 (8.09)	232,845 (5.99)	254,082 (6.03)	265,777 (6.32)	39,748 (3.48)	33,222 (2.59)	124,458 (2.89)	133,035 (3.03)	139,984 (3.16)
2백만원~ 3백만원	121,125 (7.71)	188,289 (11.12)	322,100 (8.29)	359,388 (8.53)	325,459 (7.74)	43,188 (3.78)	70,295 (5.49)	281,787 (6.55)	308,320 (7.02)	281,009 (6.35)
3백만원~ 4백만원	85,890 (5.47)	92,488 (5.46)	197,702 (5.09)	251,738 (5.97)	310,643 (7.38)	45,908 (4.02)	52,559 (4.10)	239,672 (5.57)	290,222 (6.61)	360,641 (8.14)
4백만원~ 5백만원	82,651 (5.26)	95,999 (5.67)	180,976 (4.66)	182,172 (4.32)	201,477 (4.79)	56,321 (4.93)	70,214 (5.48)	257,481 (5.99)	250,885 (5.71)	279,398 (6.31)
5백만원~ 6백만원	77,633 (4.94)	87,372 (5.16)	166,412 (4.28)	182,191 (4.32)	195,202 (4.64)	64,786 (5.67)	77,944 (6.09)	251,775 (5.85)	267,994 (6.10)	286,984 (6.48)
6백만원~ 7백만원	- -	- -	158,562 (4.08)	165,590 (3.93)	183,459 (4.36)	- -	- -	255,085 (5.93)	258,767 (5.89)	287,064 (6.48)
7백만원~ 8백만원 <sup>1)</sup>	159,274 (10.14)	177,137 (10.46)	155,020 (3.99)	161,201 (3.83)	168,328 (4.00)	159,212 (13.95)	186,990 (14.60)	257,892 (6.00)	259,738 (5.91)	270,655 (6.11)
8백만원~ 9백만원	74,611 (4.75)	85,017 (5.02)	148,656 (3.83)	150,901 (3.58)	160,027 (3.80)	85,710 (7.51)	100,727 (7.86)	248,287 (5.77)	245,031 (5.58)	258,343 (5.83)
9백만원~ 10백만원	79,012 (5.03)	87,681 (5.18)	144,898 (3.73)	146,337 (3.47)	153,506 (3.65)	91,611 (8.02)	104,769 (8.18)	239,005 (5.56)	232,796 (5.30)	242,498 (5.48)
10백만원 ~ 12백만원	149,649 (9.53)	168,702 (9.96)	270,725 (6.97)	282,796 (6.71)	286,088 (6.80)	158,234 (13.86)	176,993 (13.82)	416,258 (9.68)	413,576 (9.42)	415,127 (9.37)

〈표 II-16〉의 계속

구분	가구수					금액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12백만원~ 13백만원	76,544 (4.87)	84,673 (5.00)	141,472 (3.64)	150,986 (3.58)	146,853 (3.49)	74,899 (6.56)	79,309 (6.19)	203,216 (4.73)	204,042 (4.65)	196,093 (4.43)
13백만원~ 14백만원	-	-	131,609 (3.39)	146,464 (3.48)	137,611 (3.27)	-	-	178,774 (4.16)	185,479 (4.22)	172,034 (3.88)
14백만원~ 15백만원 <sup>2)</sup>	85,638 (5.45)	80,401 (4.75)	136,288 (3.51)	145,640 (3.46)	141,518 (3.36)	117,472 (10.29)	118,830 (9.28)	173,555 (4.04)	171,080 (3.90)	163,799 (3.70)
15백만원~ 17백만원	94,253 (6.00)	91,243 (5.39)	261,176 (6.72)	282,082 (6.69)	264,879 (6.30)	96,626 (8.46)	99,156 (7.74)	287,567 (6.69)	282,560 (6.43)	263,203 (5.94)
17백만원~ 20백만원	118,626 (7.55)	115,262 (6.81)	418,073 (10.76)	397,543 (9.43)	361,795 (8.60)	73,228 (6.41)	74,735 (5.83)	345,400 (8.03)	294,500 (6.71)	270,977 (6.12)
20백만원~ 21백만원	34,419 (2.19)	33,158 (1.96)	56,181 (1.45)	59,168 (1.40)	47,283 (1.12)	10,284 (0.90)	9,952 (0.78)	85,465 (1.99)	79,736 (1.82)	63,660 (1.44)
21백만원~ 25백만원	39,845 (2.54)	34,729 (2.05)	192,418 (4.95)	243,527 (5.78)	228,260 (5.43)	14,154 (1.24)	13,345 (1.04)	237,045 (5.51)	266,468 (6.07)	248,640 (5.61)
25백만원 ~28백만원	-	-	119,953 (3.09)	136,508 (3.24)	125,904 (2.99)	-	-	96,966 (2.25)	99,814 (2.27)	91,623 (2.07)
28백만원 ~30백만원	-	-	68,428 (1.76)	76,276 (1.81)	67,420 (1.60)	-	-	34,052 (0.79)	36,233 (0.83)	31,919 (0.72)
30백만원 ~33백만원	-	-	41,187 (1.06)	47,039 (1.12)	41,687 (0.99)	-	-	26,204 (0.61)	28,361 (0.65)	24,355 (0.55)
33백만원 ~36백만원	-	-	36,595 (0.94)	58,053 (1.38)	47,045 (1.12)	-	-	8,431 (0.20)	18,642 (0.42)	14,506 (0.33)
합계	1,570,442 (100.00)	1,693,612 (100.00)	3,885,211 (100.00)	4,214,277 (100.00)	4,206,833 (100.00)	1,141,606 (100.00)	1,280,821 (100.00)	4,300,342 (100.00)	4,391,528 (100.00)	4,428,643 (100.00)

-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2016, 2017년은 6백만원~8백만원을 의미  
 3. 2016, 2017년은 13백만원~15백만원을 의미  
 4. 모든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5. 총급여액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합계를 의미

자료: 각 연도의 『국세통계연보』 14-3-6를 참고하여 작성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제도 개편 이후 150만원~1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들 가구의 가구수 비중은 2018년 17.26%, 2019년 13.68%, 2020년 15.11%로 제도 확대 첫 해인 2018년에 특히 그 비중이 높았다. 260만~270만원의 큰 금액을

지급받은 가구수 비중도 제도 개편 이후인 2018년 7.65%, 2020년에는 4.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50만원 이하의 비교적 소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는 가구의 비중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이하, 10만원~30만원, 30만원~50만원의 가구수 비중은 각각 2016년 6.34%, 17.92%, 14.03%, 2018년 3.72%, 8.32%, 7.88%, 2020년에는 4.48%, 11.45%, 9.45%였다. 요약하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지급 금액은 가구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주로 활용하는 2018년 귀속분(2019년 지급분)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급받은 가구의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낮아 유의미한 소득충격을 경험한 가구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7〉 근로장려금 규모별 지급 현황(2016~2020년)

(단위: 가구, 백만원, %)

구분	가구수					금액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10만원	99,631 (6.34)	97,422 (5.75)	144,484 (3.72)	303,852 (7.21)	188,374 (4.48)	5,339 (0.47)	5,178 (0.40)	7,930 (0.18)	99,267 (2.26)	54,039 (1.22)
10만원~ 30만원	281,404 (17.92)	262,890 (15.52)	323,219 (8.32)	483,685 (11.48)	481,864 (11.45)	54,113 (4.74)	49,804 (3.89)	55,751 (1.30)	86,888 (1.98)	85,653 (1.93)
30만원~ 50만원	220,370 (14.03)	267,624 (15.80)	306,174 (7.88)	398,071 (9.45)	397,485 (9.45)	80,018 (7.01)	96,309 (7.52)	110,761 (2.58)	161,164 (3.67)	158,977 (3.59)
50만원~ 70만원	196,074 (12.49)	205,308 (12.12)	292,863 (7.54)	398,312 (9.45)	412,227 (9.80)	108,358 (9.49)	113,321 (8.85)	161,587 (3.76)	242,011 (5.51)	247,126 (5.58)
70만원~ 90만원	242,091 (15.42)	319,629 (18.87)	295,127 (7.60)	407,470 (9.67)	440,908 (10.48)	173,518 (15.20)	243,512 (19.01)	215,376 (5.01)	321,900 (7.33)	343,883 (7.76)
90만원~ 100만원	42,519 (2.71)	37,344 (2.20)	254,169 (6.54)	183,228 (4.35)	184,512 (4.39)	36,153 (3.17)	31,532 (2.46)	220,507 (5.13)	174,004 (3.96)	173,735 (3.92)
100만원~ 120만원	86,244 (5.49)	77,628 (4.58)	306,642 (7.89)	378,578 (8.98)	355,580 (8.45)	85,408 (7.48)	75,675 (5.91)	308,145 (7.17)	415,692 (9.47)	387,892 (8.76)
120만원~ 130만원	42,618 (2.71)	42,194 (2.49)	176,809 (4.55)	182,897 (4.34)	215,340 (5.12)	47,889 (4.19)	47,045 (3.67)	201,998 (4.70)	228,105 (5.19)	266,373 (6.01)
130만원~ 140만원	44,582 (2.84)	31,789 (1.88)	161,091 (4.15)	206,080 (4.89)	227,779 (5.41)	54,219 (4.75)	38,352 (2.99)	199,581 (4.64)	276,900 (6.31)	304,063 (6.87)
140만원~ 150만원	32,664 (2.08)	40,747 (2.41)	137,330 (3.53)	128,225 (3.04)	122,694 (2.92)	42,431 (3.72)	52,849 (4.13)	182,253 (4.24)	185,868 (4.23)	176,825 (3.99)

〈표 II-17〉의 계속

구분	가구수					금액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150만원~ 160만원	39,384 (2.51)	30,457 (1.80)	670,470 (17.26)	576,310 (13.68)	635,507 (15.11)	54,506 (4.77)	42,012 (3.28)	932,306 (21.68)	866,756 (19.74)	951,871 (21.49)
160만원~ 170만원	40,976 (2.61)	38,757 (2.29)	43,627 (1.12)	27,703 (0.66)	26,473 (0.63)	60,381 (5.29)	57,113 (4.46)	64,271 (1.49)	45,741 (1.04)	43,530 (0.98)
170만원~ 180만원	38,831 (2.47)	34,421 (2.03)	56,536 (1.46)	32,718 (0.78)	30,565 (0.73)	60,831 (5.33)	53,981 (4.21)	88,375 (2.06)	57,134 (1.30)	53,170 (1.20)
180만원~ 190만원	135,799 (8.65)	36,144 (2.13)	59,951 (1.54)	31,818 (0.76)	30,390 (0.72)	225,601 (19.76)	60,031 (4.69)	98,705 (2.30)	58,810 (1.34)	55,967 (1.26)
190만원~ 200만원	3,751 (0.24)	28,884 (1.71)	46,373 (1.19)	32,779 (0.78)	31,140 (0.74)	6,470 (0.57)	50,426 (3.94)	80,735 (1.88)	63,933 (1.46)	60,513 (1.37)
200만원~ 210만원	3,938 (0.25)	118,916 (7.02)	43,161 (1.11)	32,141 (0.76)	29,956 (0.71)	7,127 (0.62)	214,140 (16.72)	78,989 (1.84)	65,895 (1.50)	61,215 (1.38)
210만원~ 220만원	3,509 (0.22)	3,243 (0.19)	45,453 (1.17)	33,531 (0.80)	31,496 (0.75)	6,704 (0.59)	6,160 (0.48)	87,573 (2.04)	72,161 (1.64)	67,571 (1.53)
220만원~ 230만원	16,057 (1.02)	3,324 (0.20)	39,614 (1.02)	29,261 (0.69)	27,919 (0.66)	32,540 (2.85)	6,596 (0.51)	79,968 (1.86)	65,850 (1.50)	62,648 (1.41)
230만원~ 240만원	-	3,092 (0.18)	43,305 (1.11)	32,244 (0.77)	30,583 (0.73)	-	6,404 (0.50)	90,938 (2.11)	75,619 (1.72)	71,498 (1.61)
240만원~ 250만원	-	13,799 (0.81)	42,506 (1.09)	30,705 (0.73)	30,990 (0.74)	-	30,381 (2.37)	93,099 (2.16)	75,151 (1.71)	75,609 (1.71)
250만원~ 260만원	-	-	40,788 (1.05)	28,533 (0.68)	27,659 (0.66)	-	-	92,977 (2.16)	72,592 (1.65)	70,183 (1.58)
260만원~ 270만원	-	-	297,315 (7.65)	216,871 (5.15)	206,616 (4.91)	-	-	695,831 (16.18)	564,054 (12.84)	535,947 (12.10)
270만원~ 280만원	-	-	6,305 (0.16)	4,153 (0.10)	4,249 (0.10)	-	-	15,330 (0.36)	11,399 (0.26)	11,640 (0.26)
280만원~ 290만원	-	-	5,136 (0.13)	3,511 (0.08)	3,399 (0.08)	-	-	12,907 (0.30)	10,008 (0.23)	9,676 (0.22)
290만원~ 300만원	-	-	46,763 (1.20)	31,601 (0.75)	33,128 (0.79)	-	-	124,449 (2.89)	94,626 (2.15)	99,039 (2.24)
합계	1,570,442 (100.00)	1,693,612 (100.00)	3,885,211 (100.00)	4,214,277 (100.00)	4,206,833 (100.00)	1,141,606 (100.00)	1,280,821 (100.00)	4,300,342 (100.00)	4,391,528 (100.00)	4,428,643 (100.00)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모든 연도의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3.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의 합계금액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근로장려금 규모별 계급구간은 근로장려금 산정금액 기준

자료: 각 연도의 『국세통계연보』 14-3-6를 참고하여 작성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의 결합분포에 대해 살펴본다. 근로장려제 수급가구의 소득(총급여액 등)과 재산 규모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등이 0~6백만원 구간에 속하고 재산규모가 7천만원 이하 가구의 비중은 19.09%로 총급여액 등이 0~6백만원 구간에 속하고 재산규모가 1억 4천만원 이상인 가구 비중 7.45%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총급여액 등이 30백만원~36백만원 구간에 속하고 재산규모가 7천만원 이하인 가구의 비중은 0.69%, 총급여액 등이 25백만원~30백만원 구간에 속하고 재산규모가 1억 4천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0.55%로 유사한 수준을 보여 근로장려제 수급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재산규모도 높은 양(+)의 상관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8〉 총급여액 및 재산규모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수 및 가구수 비중

(단위: 가구, %)

총급여액 \ 재산	~3천만원	3~7천만원	7천만원~1억원	1억~1억 4천만원	1억 4천만원~	합계
~6백만원	285,016 (6.78)	517,971 (12.31)	257,442 (6.12)	271,126 (6.44)	313,615 (7.45)	1,645,170 (39.11)
6백만원~12백만원	158,976 (3.78)	314,396 (7.47)	151,098 (3.59)	152,814 (3.63)	174,124 (4.14)	951,408 (22.62)
12백만원~17백만원	113,231 (2.69)	233,776 (5.56)	112,495 (2.67)	110,303 (2.62)	121,056 (2.88)	690,861 (16.42)
17백만원~25백만원	83,609 (1.99)	200,796 (4.77)	108,244 (2.57)	115,304 (2.74)	129,385 (3.08)	637,338 (15.15)
25백만원~30백만원	16,623 (0.40)	52,335 (1.24)	35,735 (0.85)	41,730 (0.99)	46,901 (1.11)	193,324 (4.60)
30백만원~36백만원	6,343 (0.15)	22,534 (0.54)	16,571 (0.39)	19,979 (0.47)	23,305 (0.55)	88,732 (2.11)
합계	663,798 (15.78)	1,341,808 (31.90)	681,585 (16.20)	711,256 (16.91)	808,386 (19.22)	4,206,833 (100.00)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총급여액 등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 합계를 의미

3.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자료: 국세청, 『2021 국세통계연보』 14-3-22를 참고하여 작성

마지막으로, 2019 귀속연도부터 희망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현황을 살펴본다. 2020 귀속연도의 지급 가구수 기준으로 보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전체 근로소득자 중 반기 지급을 활용하는 가구의 비중은 상반기 35.9%, 하반기 4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각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비중은 절반 이하로 확인된다. 2020 귀속연도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된 근로장려금 중 반기 지급된 금액은 약 35.27%(상반기와 하반기분 금액 합계의 비중)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이 선택 가능한 근로소득자 중 과반수는 여전히 기존의 연간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I-19〉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가구수)

(단위: 가구, %)

구분	상반기분 (A)	하반기분 (B)	연간 총 근로소득 (C)	연간 총 합계 (D)	상반기분의 연간 총 근로소득 대비 비중 (100×A/C)	상반기분의 연간 총 합계 대비 비중 (100×A/D)	하반기분의 연간 총 근로소득 대비 비중 (100×B/C)	하반기분의 연간 총 합계 대비 비중 (100×B/D)
2019	958,726	1,327,466	2,731,655	4,318,967	35.10	22.20	48.60	30.74
2020	910,716	1,138,761	2,535,565	4,206,833	35.92	21.65	44.91	27.07

-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2020년의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자료: 각 연도의 『국세통계연보』 14-3-2, 14-5-1을 참고하여 작성

〈표 II-20〉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금액)

(단위: 백만원, %)

구분	상반기분 (A)	하반기분 (B)	연간 총 근로소득 (C)	연간 총 합계 (D)	상반기분의 연간 총 근로소득 대비 비중 (100×A/C)	상반기분의 연간 총 합계 대비 비중 (100×A/D)	하반기분의 연간 총 근로소득 대비 비중 (100×B/C)	하반기분의 연간 총 합계 대비 비중 (100×B/D)
2019	420,707	596,238	2,743,629	4,468,265	15.33	9.42	21.73	13.34
2020	397,215	520,827	2,603,426	4,428,643	15.26	8.97	20.01	11.76

- 주: 1. 해당 연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준  
2. 2020년의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분 미포함

자료: 각 연도의 『국세통계연보』 14-3-2, 14-5-1을 참고하여 작성

이상의 논의를 통해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 및 가구당 수급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공통적으로 관측된다. 또한 근로소득자에 대한 반기지급이 허용되었으나, 여전히 정기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근로소득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 Ⅲ.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에 대한 기존 논의

---

#### 1. 근로빈곤가구의 소비 관련 주요 선행연구

##### 가. 근로장려세제 및 기타 현금성 지원정책의 소비효과 관련 연구

###### 1)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 중 하나로서 제도의 노동공급 효과, 소득 재분배 효과, 소비효과 등에 대해 국내외에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소절에서는 그중에서 일부 연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김태우 외(2016)는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층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제도 시행 이전인 2008년을 기준으로 시행 다음 해인 2010년 소비 패턴을 비교하고, 근로장려금이 9월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9월 전후의 소비 패턴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가계동향조사 2008년과 2010년 월별자료를 활용하였는데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별 소비에 관한 세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근로장려세제 수혜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근로장려세제 자격조건을 기준으로 제도 수혜 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 수혜가구는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가구의 저축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선행연구와 달리, 근로장려세제가 내구재 소비, 비내구재소비 및 총 소비 어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저자들은 국내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있어 해외의 근로장려세제 수혜대상 가구와 차이가 있다는 점, 근로장려금을 향상소득 증가가 아닌 일시소득 증가로 인식한 점들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수혜가구의 저축

은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Athreya et al.(2014)과 같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예비적 저축을 늘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은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저자들은 이를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가 부채의 원금을 갚기에 충분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Barrow and McGranahan(2000)은 미국의 EIC(Earned Income Credit)가 저소득 수혜가구들의 계절적 소비 패턴(seasonal expenditure patterns)을 변화시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1982~1996년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CES에는 EIC 수급 여부에 대한 명시적 정보가 없어 자녀, 소득 및 가구 구조(household structure) 변수를 사용하여 가구별 EIC 지급액을 자체적으로 계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EIC 수혜가구가 비수혜가구에 비해 총지출과 내구재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IC 수혜가구는 비수혜가구보다 총지출은 3%, 내구재 지출은 9% 더 높았으며, 특히 EIC가 지급되는 2월에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odman-Bacon and McGranahan(2008)은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수혜자들이 환급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997~2006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녀 수, 소득 및 가구 구조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별 EITC 지급액을 계산하였다. 이들은 EITC 지급월(매년 2월)에 내구재 및 비내구재 지출이 EITC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EITC 수급자는 자동차 구입 및 교통비 지출 등 내구재 관련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ITC 환급이 이루어지는 2월의 자동차 관련 물품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이 EITC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약 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련 물품에 대한 지출과 교통비 지출 증가는 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EITC의 정책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 2) 기타 현금성 지원정책의 소비효과

정부는 EITC뿐 아니라 여러 목적을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운용한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을 받은 수혜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한 현금지원의 소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다수 진행된 바 있다. 본 소절에서는 정부의 현금지원 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 주요 연구를 정리하였다.

권흥진 외(2021)는 아동돌봄포인트 지급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아동돌봄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아동돌봄포인트는 대부분 영업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각 가구의 기존 소비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 보조금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분석을 위해 국내 카드사(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의 일자별, 행정동별, 연령대별 카드지출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행정동별 아동돌봄포인트 금액 자료에 결합하였다. 또한, 동 카드 소비지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 자료와 보건복지부의 시군구별, 일자별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병합하였다. 이중차분법 및 삼중차분법 분석 결과,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4월 13일부터 4주 동안 지급액 대비 34~44%에 달하는 추가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 진작 효과는 1~2주차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3~4주차에 접어들며 음(-)의 값을 보이거나 대체로 0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카드사들의 자체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소비 진작 효과는 대부분 저소득 계층(소득 5분위 중 1분위와 2분위)에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소비 진작 효과의 크기가 상이하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의 특성, 혹은 감염 전파 정도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철희·이수진(2021)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아동돌봄쿠폰이 가구소비 지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신한카드 가구별 카드 사용 집계자료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지원 직전 기간과 4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지원 기간을 비교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가구별 카드사용 집계자료는 성별, 연령, 소득, 거주지 등 개인(가구)별 특성에 따라 구성된 각 범주에 대해 주별 가구 카드지출액과 개인 돌봄포인트 사용액을 각각 집계한 후 연결한 데이터이다. 또 통제집단 자료 구축을 위해 신한카드 실질 회원 1,100만명(전체 가입자 2,200만명) 중 돌봄포인트를 지원받은 개인의 성, 연령 분포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임의계층적 표본추출 방식으로 돌봄포인트를 지원받지 않은 개인의 10% 표본을 얻고 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비지원 개인들의 가구원들을 연결하여 가구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층차분법 분석 결과,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의 소비진작 효과는 지원 시작 후 10주 동안 주 평균 22,355원(지원가구 분석기간 평균 지출액의 8.8%), 지급 후 5주 동안 주 평균 40,749원(지원가구 분석기간 평균 지출액의 16.0%)으로 추정되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의 전반적인 소비진작 효과는 첫 주에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후 효과의 규모가 빠르게 감소했다가 5~7주에 약간의 반등세를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지급 후 10주 동안 주 평균액을 기준으로 마트(10,296원), 일반음식점(9,405원), 아동 관련 업종(5,585원), 패션/의류(3,347원) 등 업종에 대한 카드지출액이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병원/약국(-2,260원)과 아동과 관련되지 않은 업종(-3,211원) 지출액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아동돌봄쿠폰 지급은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증가에 더 큰 효과가 있었으며,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김미루·오윤해(2020)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KCB 월별 전체 카드사용액 자료와 신한카드 가구특성 정보를 결합하여 신한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 203.8만 표본의 소득분위별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 증감액을 파악하였다. 이때 취약계층인 현금수급 가구(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 수급자 등)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자택주소를 기준으로 가구원을 파악하고, 신한카드사 추정 소득 정보를 활용하였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후의 가계소비 변동을

살펴보기 위해 카드소비액을 지역별, 소득분위별, 연체 경험 유무별로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 코로나19 확산 직후 고소득 가구일수록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를 크게 줄였으며, 필수재 소비 비중이 높은 1·2분위 저소득 가구의 카드소비 감소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국 1인가구의 4월 전년 동월 대비 카드소비는 5분위에서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가계의 카드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5월에는 저소득가구(1·2분위)에서, 6월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전년 동월 대비 카드 소비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 부족으로 생활 곤란을 겪은 가구의 소비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2~4월 중 카드 및 대출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체 경험 가구의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었음에도 소비는 여전히 제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석 외(2020)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를 경영안정효과, 현금수급가구의 소비진작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이다. 그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현금수급가구의 소비효과에 대한 분석의 경우 현금수급가구 대상 설문자료(2020년 9월 14일~18일 실시)를 활용하였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나,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이러한 카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저자들은 기존 자료들의 경우 비교적 일반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에 가구 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가구의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현금수급가구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현황, ② 가구 의견 조사, ③ 가구 및 가구원 사항 등이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지출, 빚 상황, 저축 중 주로 어디에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용도에 얼마씩 사용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 저축의 경우 근접한 미래에 소비지출로 다시 사용한다면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는

현재의 소비에 가까울 수 있기에 향후 1년 동안 저축을 유지할 계획인지 아니면 1년 내 지출할 계획인지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해당 가구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실직, 휴직, 구직의 어려움, 소득 감소) 여부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세 번째 파트에서는 가구원 수, 취업 중인 가구원 수, 만 65세 이상인 가구원 수, 만 18세 미만 가구원 수, 주거 점유형태, 가구소득 등 가구 정보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타 정부지원금 수급 여부 및 수급형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소비지출로 사용되었고, 특히 식료품 등 필수재 소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21.7%를 추가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를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소득 등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증진효과가 더 컸고, 긴급재난지원금 중 21.7%가 본래의 가구 소비지출을 대체하지 않은 소비지출로 이어졌다고 해석하였다. 추가적으로, 65세 미만은 65세 이상 고령층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용환(2021)은 이전지출 분배방식에 따라 창출된 소득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활동과 가계 부문의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한 사회계정행렬의 명목 소득승수를 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 한계 소비성향을 추정하였으며, 시나리오 접근법을 통해 이전지출 분배방식에 따라 창출된 소득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부문에 대한 현금지원의 평균적 소비효과는 정부지출액의 19.2%로 추정되었으며, 현금지원의 소비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크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대체효과가 커 현금지원의 소비효과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더 크게 추정되었으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이전지출 방식이 생산 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재원조달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득과 소비 증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계층별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합리적

인 정책 선택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금융자산은 소비에 있어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작용하며, 가계부채가 당기 소비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자금조달을 통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홍민기(2020)는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2019~2020년 신용카드 일별 사용액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시기를 크게 다섯으로 나누어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16.3% 감소하였으며, 거리두기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은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소비지출이 10.4% 증가하였는데 약 17.6조원의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30%는 지원금이 없었더라도 이루어졌을 소비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었고, 지원금의 약 70%만큼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남재현·이래혁(2021) 역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자료는 2019~2020년 가계동향조사 월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는 지출유형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2020년 2월부터 감소했다가 2020년 5월에는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비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으나, 저소득계층은 그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중차이분석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반적으로 가구 소비를 진작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가계지출과 소비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이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저소득 가구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승호·홍민기(2021)는 코로나19와 정부 보조금이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0년 1~6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전국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을 대상으로 가구 단위 소득과 지출의 상세한 내역과 함께, 가구 구성원의 인구사회적 변수 등을 제공하며,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매월 조사가 이뤄져서 단기적인 경제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1차 긴급재난지원

금의 지급은 소득 감소 보전과 소비 활성화 모두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구 소득과 지출이 각각 4.4%,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구소득이 11.1%, 지출이 12.4% 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감염병 확산 시기의 소득 감소는 노동시장 취약 집단이 많이 속한 2분위 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지출 감소는 고소득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에는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았고, 모든 소득분위에서 지출이 고르게 증가하였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늘어난 소득의 70~80%가 소비지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비소비지출에 사용되었으며 저축이나 부채상환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aek et al.(2021)은 경기도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universal stimulus payments)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기도는 2020년 5월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시행되기 전인 4월에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1인당 10만~35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35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다는 특징이 있다. 분석자료는 경기 및 인천 지역의 2019년 1월~2020년 6월의 KCB 월별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가구별로 합산하였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을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 2020년 4월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처음 20일 동안 1인당 월 소비액이 인천보다 약 3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더 컸으며, 재난지원금 규모가 10만~15만원에서 30만~35만원으로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은 0.58에서 0.36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 중 저축의 비중이 높아져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소비 진작 측면에서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현금지원 정책의 소비효과를 살펴본 해외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Johnson et al.(2006)은 2001년 미국의 세금환급에 따른 소비지출에 대한 변화 영향을 추정하였다. 미국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01년 7월 말부

터 9월말까지 10주 동안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300달러 또는 600달러의 세금 환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의 소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저자들은 2000~2001년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세금환급 후 3개월 동안 환급금의 20~40%를 비내구재에 지출했으며, 이후 3개월 동안 환급금의 2/3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 증대 효과는 유동성 및 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Parker et al.(2013)은 미국의 2008년 세금환급에 따른 가계지출 변화를 추정하였다. 미국은 경제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ESP(economic stimulus payments)라는 세금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이의 소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7~2008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론은 Johnson et al.(2006)을 참고하였다. 분석 결과, 지불 수령 3개월 동안 지불액의 12~30%를 비내구재에 지출하고 내구재 중 주로 차량에 50~90%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자, 저소득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수록 환급금액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aker et al.(2020)은 미국의 2020 CARES Act에 따른 코로나19 경기부양 지원금(economic stimulus payments)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6년 8월~2020년 8월 SaverLife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해당 자료는 신용카드 거래 정보, 인구학적 정보(연령, 학력, 가족원 수, 자녀 수), 주요 카테고리별 지출정보(음식, 내구재, 비내구재, 대출 등)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SaverLife는 2020년 5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경기부양지원금 사용처, 가구 재정현황 등을 별도로 설문조사하였다. 경기부양지원금 지급 전후의 지출 변화를 살펴본 결과, 경기부양지원금의 약 25~40% 정도가 소비로 이어지고, 이 지출의 대부분은 지급 후 첫 주 이내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고, 소득 하락폭이 크며, 유동성이 낮은 가구의 경우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akahiro et al.(2021)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의 현금성 이전 지출(cash transfers)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의 특별현금 지급(SCP: special cash payments)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일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2020년 4월)’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의 SCP를 지급한 바 있다. 분석자료는 2015~2020년 가구 소득 및 지출 조사(FIES: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를 활용하였으며 2020년 평균 지출과 2015~2019년 평균 지출의 차이를 통해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소비액은 증가하였으나, 한계소비성향은 10%로 코로나19 이전의 한계소비성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출은 대면 서비스 부문보다는 재화나 서비스를 집과 매장에서 구매하는 지출 유형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소비성향 관련 연구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과 관련 없이 가계의 소비성향 자체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손연정 외(2019)는 소비 기준의 불평등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전반적인 소비 규모를 통한 불평등 측정에서 더 나아가 세부 소비항목을 분류하여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 및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1990~2016년 가계동향조사, 2001~2017년 한국노동패널조사, 2006~2017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구조 변화와 평균소비성향 변화, 소비 불평등 변화, 가구 소비지출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여 1990년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으며,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000년대 이후 소득과 소비불평등도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 소비 격차의 추세가 어떠한지 측정하였다. 분석방법론은 요인분해, 측정오차를 수정한 소비불평등 추정방법, CRE 토빗 모형(correlated random effects Tobit model)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평균 소비성향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을 기점으로 감소 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16년 평균소비성향은 66.0%까지 감소해 1990년 수준에 근접하였다. 또한 소비불평등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분석기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그 감소율은 둔

화되고 있으며 여전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격차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분석 결과, 수도권 표본 가구는 비수도권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액이 34.2%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대용·서정원(2020)은 최근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성향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성향과 가계소득, 순자산, 가구주 연령, 가구별 소득분위 등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12년, 2016년,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체 소비성향 변동을 가구주 연령대별 및 소득분위별 '소비성향 변동'과 '상대소득 비중(전체 소득에서 각 연령대 및 소득분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변동'으로 분해하였다. 분석을 위해 항상소득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는 Paiella(2007) 및 Arrondel et al.(2015)에 제시된 모형을 참고하였으며, 가구주 연령대, 가구원 수, 부채비율 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소비성향의 유의미한 변동성은 주로 50대와 60대 이상 가구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그 원인으로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가 견실하지 못한 가운데 여타 소득원도 안정적이지 않아 5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강화로 고령층의 생활여건과 소득만족도가 다소 개선되면서 빠르게 하락하던 소비성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순자산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주 연령대별 및 소득분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구주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순자산의 자산효과는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가계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는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근로빈곤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주요 논의

근로빈곤층의 소비행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러한 소비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 및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앞서 검토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근로빈곤층의

소비행태에 대한 기존 문헌의 내용을 보다 유기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근로빈곤층은 일시적 차원에서 그러한 지원금이 주어지더라도 소비반응이 예상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유동성 제약 등의 요인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동성 제약은 여러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미래 소비를 위한 예비적 저축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일자리 안정성도 낮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소득충격이 존재할 때, 개인 차원의 저축액이나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생활급여가 없거나 부족해서 양적, 질적 소비수준이 저하된다. 안정적인 소득활동이나 저축활동을 하지 못하는 근로취약층은 대출금액이나 카드금액의 연체 확률도 높을 수 있다. 낮은 소득수준과 더불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근로취약층의 금융신용도에 영향을 미쳐서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유동성 제약으로 인하여 저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은 목돈이 필요한 내구재 소비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당한 수준의 지원금이 일시에 지불되는 경우, 근로빈곤층은 그동안 계획해왔던 내구재 품목에 소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oodman-Bacon and McGranahan(2008)<sup>7)</sup>은 EITC 수급자의 경우, 근로장려금이 차량구매 혹은 대중교통 지출 분야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유동성 제약으로 인하여 현재 소비가 유동성 제약이 없었을 때 선택할 소비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은 일시적인 정부의 지원금을 수급한 후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소비활동이 지원금 수급 이후 단기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 제약은 소비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제약으로도 이어진다. Yang(2018)은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시점을 이용한 결과, 1,000달러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시점(월)에 기존에 일하고 있던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1.3%가량 낮추며, 그러한 반응은 부수입자(second-earner)

---

7) Goodman-Bacon, Andrew and McGranahan, Leslie, "How Do EITC Recipients Spend Their Refunds?," *Economic Perspectives*, 32(2), 2008, pp. 17~32.

이거나 유동성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시간제약과 예산제약을 동시에 완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sup>8)</sup>

이러한 효과는 유사녀 근로빈곤층의 경우 특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책의 근로빈곤층 소비효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큰 것은, 유동성 제약하의 근로빈곤층 가구의 불충분한 소비수준이 가족의 건강 상태, 특히 자녀의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Braga et al.(2020)에서는 EITC의 장기효과로서 근로장려세제가 자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저자들은 유년기에 EITC에 더 노출될수록(즉, 자녀의 유년기에 자녀가 속한 가구가 근로장려세제 수급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자녀가 22~27세 시기에 비만이 될 확률을 낮추고 스스로 보고한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주장한다. McGranahan and Schanzenbach(2013)에서는 다른 현금성 지원과 달리 EITC가 특정 시점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잠재적 수급가구의 식료품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결과, EITC 지급 시점(월)에,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육류, 유제품 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구매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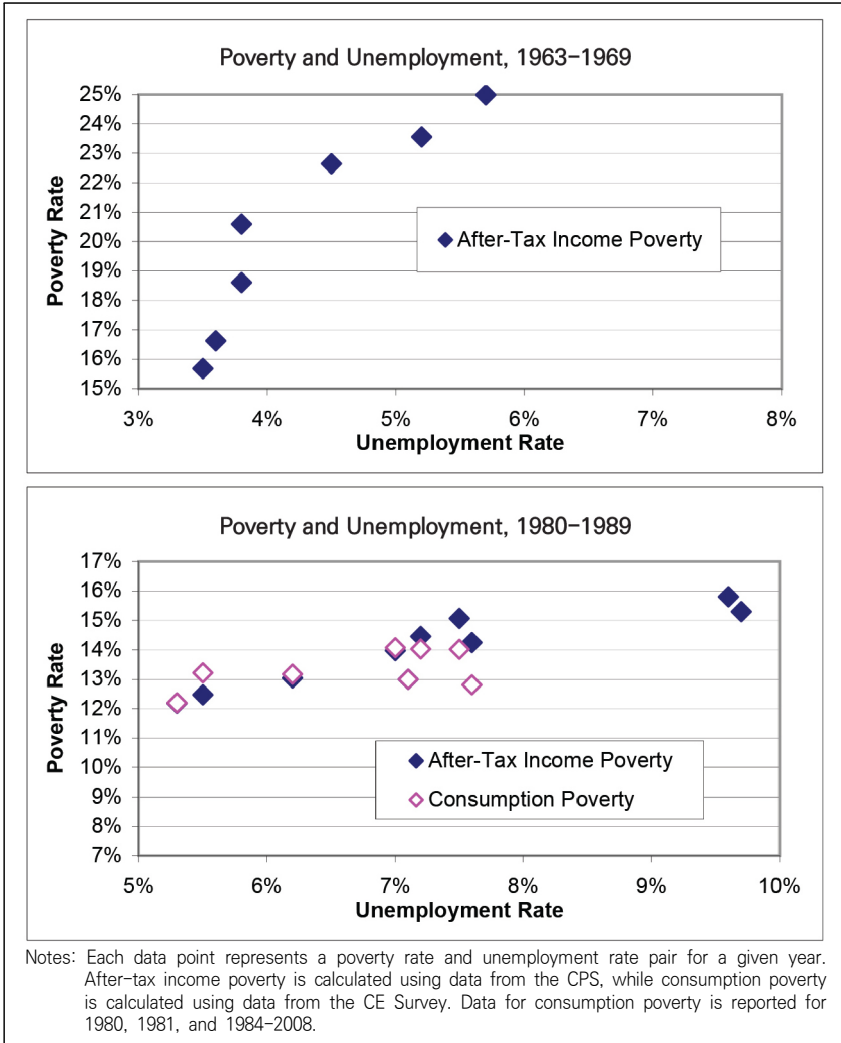
경기변동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과 소비가 어떻게 변동하는가는 오래된 연구주제 중의 하나였다. Meyer and Sullivan(2011)은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경기변동(실업률)에 대한 소비, 소득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소득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 달리 Meyer and Sullivan(2011)은 해당 연구에서 소비의 빈곤 지표를 제안하고, 그 빈곤지표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렇듯 저자들이 소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실질적인 후생수준을 보여주는 데 가구의 소비수준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검토 결과 거시적

---

8) 단,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현금지원이 주어지는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시간제약을 새로이 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명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학계에서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하여 미혼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이 줄어들어, 자녀의 성취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최근의 연구 Basitan and Lochner(2022)에서는 American Time Use Survey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들이 근로장려세제로 인하여 집안일을 하는 시간은 줄었으나,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인 경기변동이 소득 및 소비의 빈곤수준과 상호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인다. 실업률이 1%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소득빈곤확률이 0.9%에서 1.1%로 높아지고, 소비빈곤확률은 0.3%에서 1.2%로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그림 III-1] 실업률과 소득 및 소비 빈곤율



자료: Meyer and Sullivan(2011), p. 24, Figure 2

분위별로 저소득 분위에서 민감도가 높고, 소득민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sup>9)</sup>

다음으로 지급 주기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이 지급받은 현금을 소비와 저축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하는지, 그리고 소비하는 경우 이를 언제 소비하고(소비 평탄화 여부 등) 어떤 재화를 구입하는지 등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저축과 소비에 대한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hypothesis of savings and consumption)은 가구소득, 소비와 저축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현재의 소비수준은 전망되는 생애 소득의 현재가치(present value of projected life-time earnings)의 함수이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가정하에서 생애주기 가설은 EITC 등 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의 지급 주기 변화는 가구 소비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신용계약 등의 요소가 이론에 추가되는 경우 예측은 달라진다. 현금성 지원정책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의 경우 유동성 제약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가구 소비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1원의 가치가 미래 1원의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더 빈번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가구는 선호하게 된다. 미리 지급받은 금액의 이자수익률을 적용하면 조기 지급을 통한 상대적 이득 수준에 대한 계산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분할지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단순히 분할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생애주기 가설이 가구의 행태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심리적 요인까지 반영한 생애주기 가설을 제시하기도 한다

---

9) 여기에서는 소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보험, 의료비용, 교육비, 주택구매비용, 차량구매비용 등은 제외하되 차량사용 서비스 이용 렌트 비용 등은 계산하여 소비액에 포함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유사한 방법으로 소비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분야별 소비액이 없는 카드 사용액의 경우 이러한 세부 분류는 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학원비 등의 교육비 일부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의료비용도 마찬가지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Thaler and Shefrin, 1981). 이러한 모형(e.g. behavioral life cycle model)에서는 합리적 가구를 상정한 경우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일부 가구에서는 동일한 노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정규 급여와 ‘거의 확실하게’ 지급되는 성과급여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경우 소득의 실질은 차이가 없음에도 각 소득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주기와 관련해서는 가구가 큰 금액의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 지급보다 정기 지급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빈번한 주기로 소액이 지급되는 경우에 비해 한 번에 큰 금액이 지급되면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저축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실제로 관측되는지는 실증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문제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한다.

---

## IV.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 분석

---

### 1. 분석자료 소개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수급 혹은 수급 자격 여부를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소비행태에 대한 정보, 기타 인구통계학 및 사회경제적 변수 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분석에 활용 가능한 자료들 중 이러한 모든 요소를 이상적으로 갖춘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종류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이 사용하려는 데이터는 KCB 신용카드 자료, 농촌진흥청 소비자패널 자료,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이다. 이하에서는 각 자료별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소개한다.

#### 가. KCB 신용카드 자료

Korea Credit Bureau(이하, KCB)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개인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국내 18개 대형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자한 개인신용평가회사이다. KCB에서는 데이터스토어, K-Atlas, AllCredit, 크레딧파트너, Okname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서 데이터스토어란 KCB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가공하여 맞춤형 데이터세트 혹은 분석 결과물 등을 외부에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신용정보에 대한 법정동 단위의 집계자료와 가명처리 가구단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KCB 법정동 단위의 가구 집계자료(이하 KCB 가구 집계자료)에 대한 간략한 개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정동에 대한 월 단위자료이다. KCB 가구 집계자료에서는 특정 월의 법정동별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월소득, 카드 사용금액, 총대출잔액, 카드 이용금액(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별도),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대출금액, 대출연체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세제 수급자가 집중되어 있는 법정동에서 카드소비금액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늘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출과 연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용제약이 존재하는 가구의 경우 그러한 소비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때 KCB 가구의 개념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논의할 필요하다. KCB의 가구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대상자를 가구로 묶은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세대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의 경우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카드발급, 대출발생 등의 금융서비스를 활용할 때 제한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금융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가구의 개념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카드 및 대출 관련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만 KCB 데이터에 포함된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게 용돈 및 생활비로 현금을 제공할 때 이러한 현금형태의 소비수준은 KCB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은 독립적으로 소비를 하는 주체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제공받는 용돈의 수준이 부모가 직접 소비하는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민간 가구 소비의 대부분이 카드사용금액으로 포착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KCB와 같은 신용정보에 기반한 소비효과 분석이 전체적인 소비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KCB에서 제공되는 가구의 소득 정보는 추정소득이지 실질소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KCB에서는 KCB에서 입수한 신용정보 외 별도의 추가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가구소득을 추정한다.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해당 시점 기준 1년 전까지의 해당 가구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을 추정한다. 일단 소득이 추정되면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입수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보를 소급적용하여 기존의 추정소득값

을 변경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KCB에서 제공하는 소득정보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이 소득충격이 급격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값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러한 특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적어도 해당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을 파악하기에는 해당 정보가 활용될 여지는 있을 것이다.<sup>10)</sup>

〈표 IV-1〉 법정동 단위 KCB 신용카드 자료: 기초통계량

(단위: 가구, 명, 만원, %, 개)

분석단위: 법정동		2015~2018년		2019~2020년	
		단순평균	통계량	단순평균	통계량
가구 기본 정보		mean	s.d.	mean	s.d.
1	가구수	899.40	3507.27	908.04	3593.35
2	평균가구원수	1.71	0.28	1.70	.25
3	평균가구 월소득	387.3	82.32	444.19	86.28
4	200만원 미만 가구수	284.12	1122.98	241.94	967.31
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가구수	192.30	713.40	189.83	723.50
6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가구수	190.71	733.99	195.41	768.16
7	500만원 이상 가구수	232.28	1000.88	280.86	1185.81
카드 사용(신용+체크) 정보		mean	s.d.	mean	s.d.
8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	132.01	68.12	152.98	70.00
유동성 규모 및 제약 관련 정보		mean	s.d.	mean	s.d.
9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13.54	11.25	12.44	10.32
10	총대출잔액	4400.07	2,670.28	4,771.56	2,691.77
11	총대출잔액내 제2금융대출 비율	22.92	17.99	22.90	17.30
12	총대출잔액내 주택담보대출 비율	28.65	16.36	27.51	14.80
13	총대출연체잔액(30일 이상)	37.85	142.74	44.34	154.48
14	총카드연체잔액(30일 이상)	2.32	5.84	2.91	6.62
관측치		848,449		399,149	

주: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자료를 활용함. 각 시점에서 가구가 3인 이하인 경우 해당 법정동의 관측치가 제거되었으므로 비균형패널 자료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구매한 맞춤형 KCB 가구 신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10) 해당 소득정보의 소득값과 집계별 가구의 소득을 직접 비교하여 KCB에서 제공하는 소득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해볼 수도 있겠지만, 카드를 소지하거나 대출서비스를 받은 가구에 국한하면서, 모든 지역에 대한 가구의 소득 통계를 입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비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표 IV-2〉에서는 가명처리 자료에 대한 연도별 월별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초기에 입수한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데이터는 균형 패널이 아니었으나, 이중차이법을 적용하기 위해 균형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총가구수는 10,287가구이며, 이 중 처리집단에 속하는 가구는 3,506가구로 전체의 27.14%에 해당한다.

〈표 IV-2〉 가구단위 KCB 신용카드 자료: 기초통계량

(단위: 천원,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원수 <sup>1)</sup>	1.04	0.20	1.04	0.20	1.04	0.20
가구주 20~30대 비중 <sup>1), 2)</sup>	0.43	0.49	0.43	0.49	0.43	0.49
가구주 40~50대 비중 <sup>1), 2)</sup>	0.08	0.27	0.08	0.27	0.08	0.27
가구주 60대 이상 비중 <sup>1), 2)</sup>	0.49	0.50	0.49	0.50	0.49	0.50
가구소득	1,414.98	298.07	1,398.87	211.39	1,696.58	379.10
카드사용액 <sup>3)</sup>	338.68	567.01	390.14	612.23	455.03	676.36
신용카드사용액	146.24	446.27	166.33	474.21	205.29	523.88
체크카드사용액	192.43	369.19	223.81	410.61	249.74	445.22
카드사용 비중 <sup>4)</sup>	25.26	44.61	29.43	48.29	26.57	41.43
신규대출금액 <sup>5)</sup>	223.94	4951.46	151.21	3786.34	176.34	4485.08
신용대출	43.15	786.59	35.80	834.22	47.59	1231.64
주택담보	108.57	3,894.63	67.05	3,264.96	50.52	2,675.14
기타담보	62.25	2,725.82	39.64	1,638.32	71.38	3,361.43
대출상환금액 <sup>6)</sup>	50.48	179.41	55.45	189.68	56.52	193.28
신용대출	20.20	110.49	22.83	115.09	22.25	111.72
주택담보	20.52	111.40	21.74	116.82	22.02	117.99
기타담보	9.17	69.98	10.25	74.64	11.68	82.57
관측치수 (가구수)	123,444건 (10,287가구)		123,444건 (10,287가구)		123,444건 (10,287가구)	

주: 1) 2017년 1월 기준 표본이 추출된 시점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므로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 없음

2) ETC 분석을 위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기준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연령분포가 통상적인 인구 전체를 대표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

3) '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사용액과 체크카드사용액의 합계액으로 정의

4) 카드사용 비중은 '카드사용액'을 '가구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정의

5) 신규대출금액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관련 신규대출 합계액으로 정의

6) 대출상환금액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관련 대출상환 합계액으로 정의

- 본 통계량은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에 대하여 연도별로 평균금액과 관련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으로 이때 표준편차는 연도별, 연도 내 월별, 주어진 시점 내 가구 간 이질성 등에 기인

- 모든 통계량은 각 연도의 1~12월 기간 월별 평균금액

자료: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가구원수는 1.04명으로 시점별 차이가 없는데 이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가구원수 정보를 추출하고 이후의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분석기간 내에 가구 구성이 변화한다면,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가구 구성 변경이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사한 경우 이중차이법을 적용할 때 그러한 오차가 일정 부분 사라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연령 정보도 가구원수와 함께 2017년 1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해당 시점 기준, 20~30대 비중은 43%, 40~50대는 8%, 60대 이상은 49%로 나타난다. 40~50대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표 IV-2>에서 제시된 기초 통계량이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분석을 위한 표본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근로장려세제 소득 및 자산 요건 금액 근처의 가구로 한정하는 과정에서 가구주가 40~50대인 가구 다수가 분석 표본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은 평균적으로 142만~170만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가구 소득은 전년도 자료에 기반하여 KCB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소득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사용액과 체크카드사용액을 합산한 값으로 정의된다. 2017년 기준 신용카드사용액은 15만원, 체크카드사용액은 19만원이며, 시간에 따라 그 액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 대비 카드사용액의 비중은 25~29%로 나타나, 평균적으로는 소득의 30% 미만인 카드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에는 신규대출금액과 대출상환금액이 제시되어 있는데 각각의 경우 유형별(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기타대출) 세부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대출총액은 2017년 22만원에서 2019년 17만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대출상환금액은 2017년 5만원에서 2019년 5만 6천원으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나.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

육류 및 과일 등 농축산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재화이고 가구 간 상품 선호도의 이질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지급을 통해 가구가 소비하는 재화의 질적 측면이 향상되었는지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농촌진흥청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이하 농식품패널) 자료는 가구 단위에서의 농식품에 대한 상세한 소비 정보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농식품패널은 2009년 최초 1,000가구로 구축된 이후 2015년 1,500가구, 2017년 2,050가구로 표본이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노후화된 패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17~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소득충격이 특정 농식품군 소비의 질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농식품패널은 각 가구가 구입한 농식품군에 대해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일 단위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 수혜금액이 지급된 날 이전과 이후에 가구소비 패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에 적절하다.

농식품패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소득, 가구 구성원수, 자녀 여부, 가구 주거형태(아파트, 단독주택, 원룸 등), 가구 보유 차량수, 거주 지역, 가구원별 직업, 나이, 소득 등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변수가 제공된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을 식별하고 이들의 소비행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식품패널에는 구입한 재화가 속하는 상품군(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품명, 구입액, 수량, 중량, 원산지, 브랜드, 재배방법(인증종류), 결제방법, 구입처(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 등 총 8개로 구분), 구입 날짜, 상품 구입을 위해 사용한 이동수단 등 농식품 소비와 관련된 매우 상세한 정보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근로장려세제 수혜 가구에서 특정 상품군을 소비할 때 더 질 높은 재화를 소비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3〉 농식품패널 자료 주요 변수 단순평균 통계량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가구 기본 정보					
가구원수(명)		2,990	2,990	2,993	2,909
자녀유무 더미(자녀 존재 = 1)		0.643	0.645	0.646	0.619
가구 월소득(만원)		425.84	458.83	460.34	469.49
주거 건물	단독주택	0.160	0.142	0.140	0.119
	연립/다세대주택	0.178	0.164	0.165	0.196
	아파트	0.619	0.643	0.647	0.635
보유차량 수		1.170	1.283	1.197	1.324
소비행태 관련 정보					
구입액(원)		5067.57	5261.50	5848.54	6095.46
구입 품목 (대분류)	가공식품	0.579	0.593	0.596	0.603
	과일 및 과채류	0.107	0.104	0.103	0.094
	축산물	0.055	0.051	0.051	0.051
	수산물	0.038	0.036	0.035	0.033
구입처	대형마트	0.202	0.194	0.198	0.185
	전통시장	0.106	0.093	0.090	0.080
	슈퍼마켓	0.503	0.503	0.502	0.516
	편의점	0.022	0.023	0.023	0.022
	백화점	0.008	0.009	0.009	0.008
	전문점	0.111	0.114	0.114	0.133
	기타(무점포, 온라인 등)	0.048	0.065	0.064	0.056
구입 요일	월	0.138	0.139	0.137	0.132
	화	0.135	0.131	0.134	0.134
	수	0.134	0.138	0.133	0.136
	목	0.139	0.136	0.138	0.138
	금	0.147	0.146	0.146	0.149
	토	0.169	0.174	0.175	0.179
	일	0.137	0.138	0.137	0.133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는 통계청이 작성한 자료로 여러 가지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그 정확성을 높여 소득분배지표를 생성하거나 가구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먼저, 통계청의 MDIS(MicroData Integration System)에 접속하여 공공용 가금복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것이다. 또한, RDC(Research Data Center) 데이터 분석센터에서 분석을 하거나, 원격으로 접속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다. 공공용 가금복 자료의 경우 연구자가 직접 다운로드하여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원격 접속 혹은 RDC를 통해 가금복 자료를 활용할 때에 비해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변수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다. 반면, 원격 접속 혹은 RDC를 통해 가금복 자료를 활용하면 연구자가 접근 가능한 변수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넓지만, 개인 및 가구의 식별 가능성 등 보안상의 우려 때문에 분석 결과를 반출할 때마다 일정한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공용 자료는 보통 가구단위의 종합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가구원 개개인의 세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가구 유형이나 수급조건을 판단하거나 총급여액 및 가구총소득을 계산할 때, 가구원 개별의 소득 및 자산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간단한 기초통계량을 제공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RDC 혹은 원격 접속에 의한 가금복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가금복 자료는 전체 가구 대표성을 지닌 연간조사로서 가구 및 가구원 특질, 가구의 소득·자산에 대한 수준 및 유형, 근로장려세제 수급 여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금복 자료에는 소비총량에 대한 정보와 함께 소비구조(필수재/비필수재, 내구재/비내구재)도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정보는 조사(응답자가 직접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금복 자료는 행정자료와 연계되어 있어 근로장려세제의 실제 수급가구를 데이터에서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실제의

근로장려세제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이중차분법과 같은 표준적인 실증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금복 분석자료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IV-4>에 제시되었다. 기초통계량은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표에서 각 열은 왼쪽부터 잠재적 EITC 수급가구, 실제 EITC 수급가구, 잠재적 수급가구 내 실제 EITC 수급가구에 해당한다.

잠재적 수급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원수는 1.54명이고 연간 소비는 1,037.88만원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소비규모를 살펴보면, 식료품(352만원), 주거비(199만원), 의료비(123만원), 교통비(82만원), 통신비(63만원), 교육비(2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집단 1과 처리집단 2는 각각 실제 수급가구, 잠재적 수급가구 내 실제 수급가구로 정의되었는데, 잠재적 수급가구에 비하여 가구주 나이가 어리고, 배우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종합소득과 소비금액도 처리집단이 잠재적 수급가구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처리집단 1은 처리집단 2나 잠재적 수급가구에 비하여 소득수준 및 소비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은 약 2,893만원이며, 전체 소비는 1,902만원, 식료품비는 586만원, 주거비 276만원, 교육비 144만원, 교통비 197만원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교육비가 144.39만원으로 다른 두 집단(29만~55만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가금복 자료에 기초하여 EITC 대상을 선별할 때의 측정오차가 상당히 존재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후, 이중차이법 분석을 수행할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처리집단 1, 2별로 통제집단을 따로 상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sup>11)</sup>

---

11) 이에 대해서는 제IV장 제4절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표 IV-4〉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자료 기초통계량

(단위: 세, 비율, 명, 만원)

구분	잠재적 수급가구	처리집단 1	처리집단 2
		실제 수급가구	잠재적 수급가구 집단 내 실제 수급가구
가구주 만 나이	65.88	55.63	59.78
배우자 존재 여부	0.34	0.56	0.41
가구원수	1.54	2.52	1.80
종합소득	896.41	2,893.41	1,297.69
전체 소비	1,037.88	1,902.72	1,264.07
식료품	352.31	586.63	414.80
주거비	199.77	276.34	222.88
교육비	29.79	144.39	55.88
의료비	123.76	135.35	128.48
교통비	82.80	197.59	112.74
통신비	63.29	144.49	88.00
기타 가사서비스	24.01	49.59	28.95

주: 표본 수 - 잠재적 수급가구(2,307가구), 처리집단 1(2,169가구), 처리집단 2(849가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라. 요약

앞에서 소개한 자료의 주요 특징은 〈표 IV-5〉에 정리하였다. KCB 자료는 소비 총량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월별 단위 자료이기 때문에 소비 양적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농식품패널 자료는 소비에 대해 가장 상세한 정보(구입처, 구입품목, 구입가격 등)를 일 단위로 포함하고 있어 소비의 질적 측면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 다만, 농식품 품목에 한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가구의 총소비 패턴은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가금복 자료는 근로장려세제 수급 여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총소비액 및 업종별 소비액 등 소비의 구성에 대한 정보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연간 단위 자료이기 때문에 소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분석할 수 있지만, 소비금액 자료가 회상에 의해 응답한 값이라는 단점이 있다.

〈표 IV-5〉 분석자료 요약 및 비교

구분	KCB 가구 집계자료	KCB 가구 미시자료	농식품패널	가금복 자료
주기	월별	월별	일별	연간
사용 기간	2015~2020년	2015~2020년	2017~2020년	2017~2020년
자료 단위	법정동	가구별	가구별	개별가구
EITC 수급 판별	제한적		제한적	판별가능
지역단위	법정동	우편번호	광역시자체	없음
가구 개념	동일 주소지 거주 기준		패널에서 직접 조사	1인 가구와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
모집단	카드를 소지한 전 국민		전국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소득총액	YES(단, 추정값)		YES	YES
총소비액	YES(카드사용액)		NO (농식품 한정)	YES(카드+현금)
업종별 소비	NO		NO (농식품은 품목단위에서 정보 제공)	YES
신용계약정보	YES(부채, 신용등급)		NO	YES(부채)
종사유형 구분	YES (임금근로자 vs 개인사업자)		YES (자영업 구분)	YES (상용/임시/일용/자영업자)
분석 가능영역				
소비 양적 측면	YES		NO (농식품 한정)	YES
소비 질적 측면	NO		YES	YES

자료: 저자 작성

## 2. 근로빈곤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기초 분석

본 절에서는 KCB와 농식품패널 자료에서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 패턴을 소개한다. 특히, 앞서 소개한 근로빈곤가구 소비행태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에서도 관찰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 가. KCB 신용카드 자료

본 소절에서는 KCB의 법정동 집계자료를 활용해 데이터에서 관측되는 패턴을 살펴본다.

먼저 소득과 소비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소득분위를 계산하였다. 소득분위 계산 시 사용한 소득값은 KCB가 추정한 소득금액으로 여기에는 주부나 학생의 소득은 0원이라는 가정이 적용되었다. 소득분위 계산 시, 2015~2018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2019년은 본고에서 분석하게 될 근로장려세제 정책이 적용된 시점이고,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개시된 시점이라서 법정동의 '초기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2019년 이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5~2018년 기간의 각 법정동별 평균 소득값을 계산할 때는 법정동별 가구의 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간 평균 소득값을 기반으로 해당 값의 크기에 따라 나열하여 10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법정동의 소득분위값을 계산하였다. 한편, 법정동별 평균 소비수준(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합)을 파악할 때도 2015~2018년 기간의 자료를 사용했다.

[그림 IV-1]에서 (A)는 소득분위에 따른 법정동별 소비(카드사용액)에 대한 평균값과, 10분위값, 90분위값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비액도 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는 소비 자체가 정상재로서, (정태적)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소득과 함께 늘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비수준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거나, 동일한 품목 중에서 가격이 높은, 양질의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치재 사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고소득 가구의 소비품목이 저소득 가구의 소비품목과 다를 가능성도 있다. 신용카드라는 자료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면, [그림 IV-1]의 (A)가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동태적 효용극대화 과정을 고려하는 경우, 이러한 패턴은 가구의 저축행태나 신용 여력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 가구는

취업소득을 저축하는 것 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의 투자활동을 통하여 미래 위험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저소득 가구 관점에서는 취업소득(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저축하는 것이 예비적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주된 방법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소득에 따라 소비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더욱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소득 가구의 자산수준 역시 높을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소득이나 자산을 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신용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신용을 기반으로 소비수준을 더 자유롭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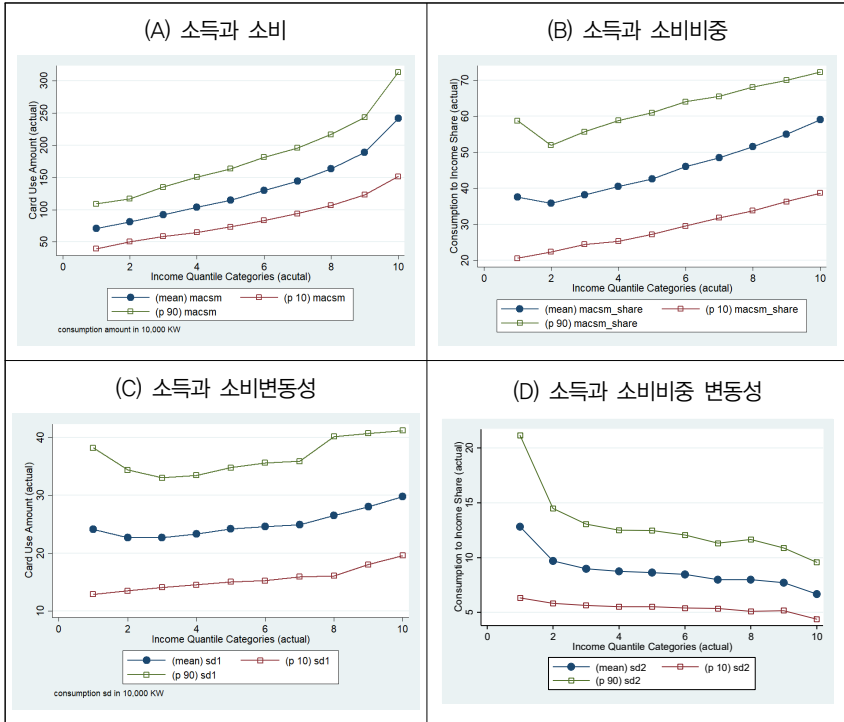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가 동반 증대되는 경향 외에도,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IV-1]의 (B)에서는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을 소득분위별로 그려보았다. 1분위에서 2분위로 가는 경우,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낮아지지만, 2분위에서 10분위까지는 소비 대비 소비 비율이 높아지는 단조성을 보이고, 그 패턴이 선형(linear)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앞서 전술한 맥락과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득 대비 소비가 일정한 비율을 따른다면, 고소득 가구일수록 KCB에서 추정하는 취업소득 외 추가적으로 자산소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닌 경우는, 고소득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저소득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보다 큰 것은, 고소득 가구가 유자녀 비율이 높고, 나아가 사교육비 등 자녀와 관련된 소비수준이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림 IV-1]의 (C)에서는 소득분위별 소비의 변동성(표준편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제시한 소득분위별 '소비의 변동성'은, 먼저 2015~2018년 기간 동안 각 법정동의 소비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앞서 설명한 소득분위별로 각 구간에 속한 법정동의 표준편차를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의 평탄화를 통한 기간 간 효용을 극대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소비의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IV-1]의 (C)에서는 이러한 예상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먼저, 소득 1분위에 속한 법정동이 소득 2분위 법정동에 비하여, 소비의 변동성이 상대적

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소득 3분위부터 소득 7분위까지는 소비의 변동성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소득 7분위부터 소득 10분위까지는 소비의 변동성이 분명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1] 소득과 소비 수준의 관계

(단위: 만원,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구매한 맞춤형 KCB 가구 실태자료 기반하여 저자 작성

소비와 소득변동성 간의 관계를 추가로 알아보기 위하여, 소비의 변동성이 아닌 소비비중의 변동성을 검토하였다. 변동성 지표로 분산을 사용할 경우 소비의 값 단위가 커질수록 분산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앞서서 살펴본 두 그림으로는 소득분위별 소비 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의 함의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소비수준을 소득으로 나눈 ‘소비비중’의 변동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IV-1]의 (D)에서는 소비비중의 변동성이 소

득분위가 높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득분위가 높은 경우는 소비수준 자체의 변동성은 크지만, 소득 대비 변동성은 고분위에 속하는 법정동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비록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의 분산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지만, 소비의 분산이 분위가 높을수록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및 통계량에 오류가 없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를 필수재와 비필수재로 구분할 때, 필수품목이 아닌 재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비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체 소비 중에서 비필수재에 대한 상대적 비중이 고소득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높다면, 결과적으로 고소득 가구에서 보이는 소비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sup>12)</sup>

다음으로 [그림 IV-2]에서는 유동성 제약별로 소득-소비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고에서 소득수준이 높고 소득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sup>13)</sup> 이 지표가 실제로 유동성을 잘 나타낸다면, 대출금액이나 신용카드 연체 금액과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실제 확인 결과 유동성 지표가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유동성에 대한 추정 지표이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프를 확인하기 전에 소득과 소비와의 관계가 유동성 수준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동성이 높은 가구는 소비 평탄화를 통한 효용극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모든 소득분위 내에 나타날 수 있

---

12) 시점별 소득과 소비의 고정효과를 제거한 나머지 잔차로 소득분위와 소비를 재계산한 그래프를 부록에 첨부하였다. 이 경우, 소득과 소비 수준 간의 관계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소비 변동성의 경우, 최저소득 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단순히 모든 법정동에 동일한 고정효과를 제거한다고 해서 분위별 소비의 변동성 순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는 법정동별 비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법정동의 경우 특정 시점의 관측치를 누락하게 됨에 따라, 해당 특정 시점의 고정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법정동별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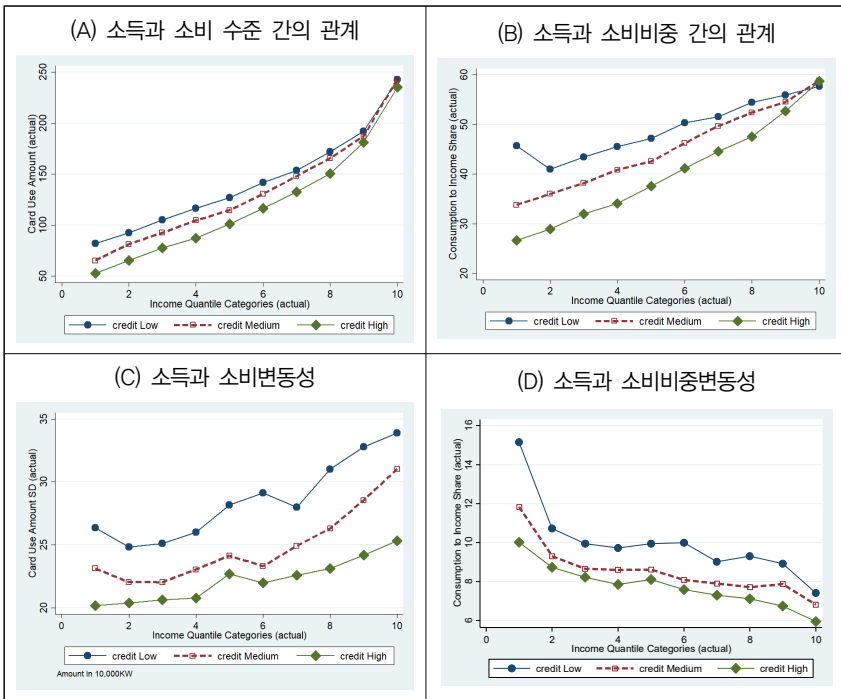
13) 소득금액의 제공함에 대출금액을 나눈 값을 유동성 지표로 정의하였다.

으나, 고소득층은 유동성 여력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여 유동성 지표와 소비 수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IV-2]의 (A)에서는 동일한 소득분위 구간에서 유동성이 낮은 집단의 소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V-2]의 (B)에서는 소득과 소비비중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동성 수준에 상관없이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유동성 수준이 클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단, 유

[그림 IV-2] 소득, 소비, 유동성 제약 간의 관계

(단위: 만원,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구매한 맞춤형 KCB 가구 신용자료 기반하여 저자 작성

동성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의 경우 1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이 2분위의 평균 소비성향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IV-2의 (C)에서는 소득과 소비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의 변동성이 동일한 소득구간 내 유동성이 낮은 집단에서 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유동성이 낮은 집단과 유동성이 중간 및 상위 집단 간의 간극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소비-유동성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함의한다. 마지막으로 [그림 IV-2의 (D)에서는 소득과 소비비중의 변동성을 유동성 수준 및 소득분위별로 보여주고 있다. 앞서서 살펴본 소비변동성과 달리, 유동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간극이 분위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그림 IV-1의 (D)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소비비중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 농식품패널 자료

다음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협조받은 농식품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우리나라 가구의 농식품 소비 패턴을 확인하였다. 본 자료의 특성상 농식품으로 분류된 품목의 소비지출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의 모든 소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농식품 카테고리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구입액, 구입처, 구입품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가 가구별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sup>14)</sup>

이에 본 소절에서는 가구 특성별로 구분하여 농식품 관련 소비 패턴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2017~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출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통해 실질화하였다. 또한 가구의 패널 진입 및 이탈로 인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분석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한 가구만으로 한정하여 소비 패턴을 제시하였다.

---

14) 자료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설명은 제III장에 제시하였다.

### 1) 소득분위별 소비 패턴(2017~2020년)

먼저 소득 5분위별 소비 패턴을 살펴본 결과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의 비례 관계가 농식품 품목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패널에는 가구가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재화뿐 아니라 각종 건강식품 및 기호식품 등이 포함<sup>15)</sup>되어 있으며, 필수재화로 분류되는 항목 사이에서도 질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과 소비 수준의 대체적인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충격이 농식품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가구(5분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간의 소비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소득 가구(1분위 및 2분위)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소비가 대체로 감소하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총소비액 지표뿐 아니라 품목 대분류(가공식품, 과일채소, 수산물, 축산물 등), 주요 상품 품목(필수재,<sup>16)</sup> 국산 및 수입산 소고기 등)에서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시된 그래프를 통해 농식품 소비에 있어 명절(설날 및 추석)이 매우 중요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의 설날이 2월 16일로 상대적으로 늦었던 반면, 다른 연도의 설날 연휴가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설날이 2월 중순이었던 2018년의 경우 1월 농식품 소비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2월의 농식품 소비액이 큰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5) 부록에는 농식품패널에서 조사하고 있는 품목을 중분류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16) 필수재는 품목 중분류 수준에서 쌀, 생수, 우유, 난류, 김치로 정의하였다.

[그림 IV-3]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지출액(2017~2020년): 모든 농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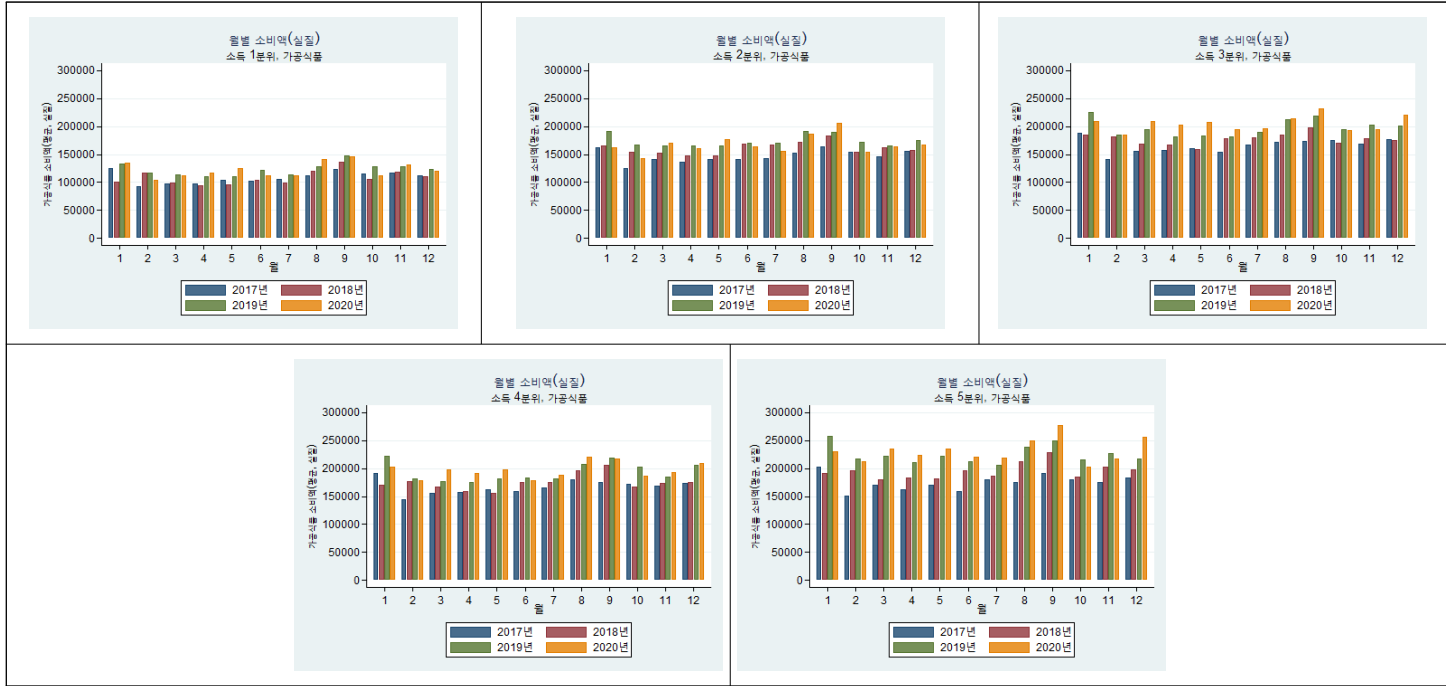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4]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자출액(2017~2020년): 가공식품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5]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지출액(2017~2020년): 과일 및 채소류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6]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지출액(2017~2020년): 축산물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7]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지출액(2017~2020년): 수산물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8] 소득분위별 평균 소비지출액(2017~2020년): 필수재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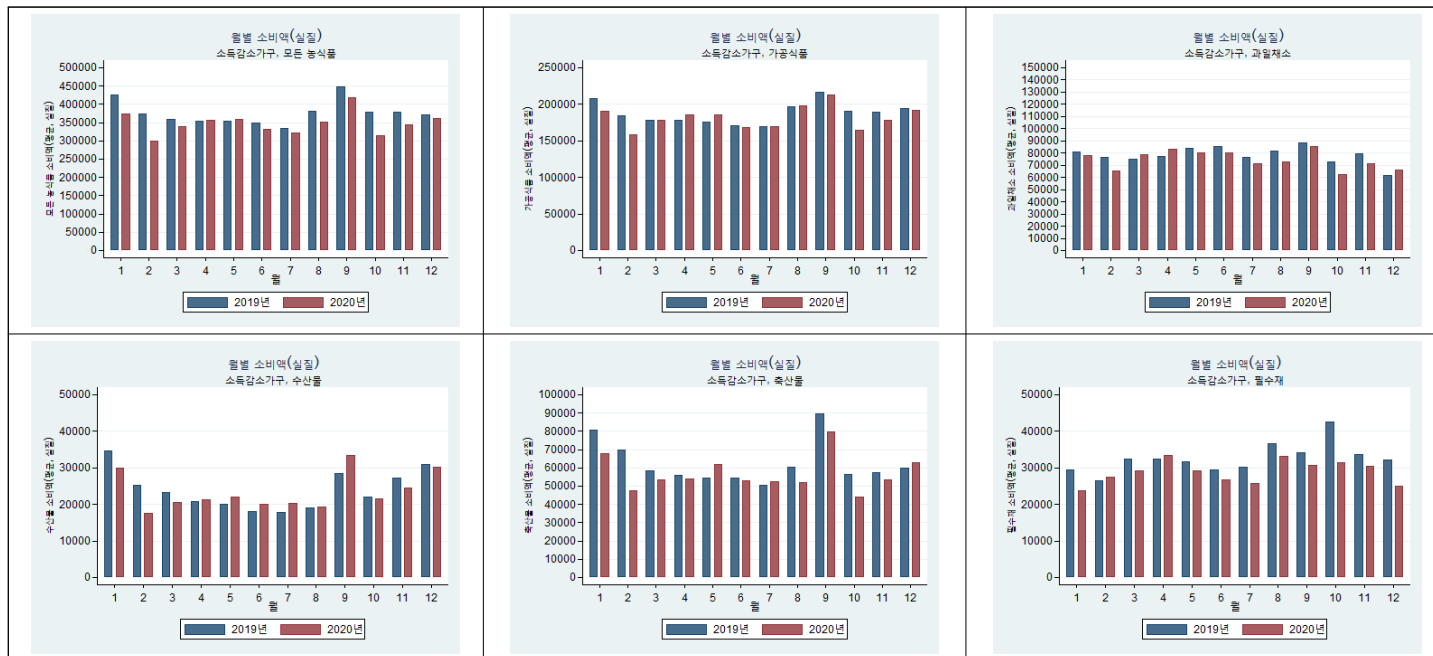
## 2) 부정적 소득충격 경험가구의 소비 패턴(2019~2020년)

다음으로, 농촌패널 조사 대상자 중 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구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본에 포함된 가구 중 부정적 소득충격을 경험한 가구 대부분은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임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2019년 대비 2020년 소비 패턴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월평균 소득 대비 2020년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 패턴을 비교하였다. 이때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부정적 소득충격에 의한 소비 패턴 변화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에 부정적 소득충격을 경험한 모든 가구에 대한 소비 패턴에 이어서 2020년에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 1분위 또는 2분위에 속하는 가구만으로 표본을 한정된 경우의 소비 패턴을 제시하였다.

부정적 소득충격을 경험한 가구는 농식품 소비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패턴은 소득 1분위 및 2분위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소비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패턴도 관측되는 반면,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소비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필수재 소비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감소한 가구들이 국산 소고기 소비를 줄이는 패턴이 관측되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정적 소득충격을 경험한 가구들의 총소고기 소비액 중 국산 소고기 소비액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는 소득충격에 직면한 가구들이 소비하는 재화의 수량이 아닌 질적 측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총소고기 소비액 중 국산 소고기 소비액 비중은 감소하였지만, 총축산물소비액 중 소고기(국산 및 수입 소고기를 모두 포함) 비중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소고기와 기타 축산물에 속하는 재화 사이의 상대 가격 변화,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IV-9] 부정적 소득충격 경험 가구 소비지출액(201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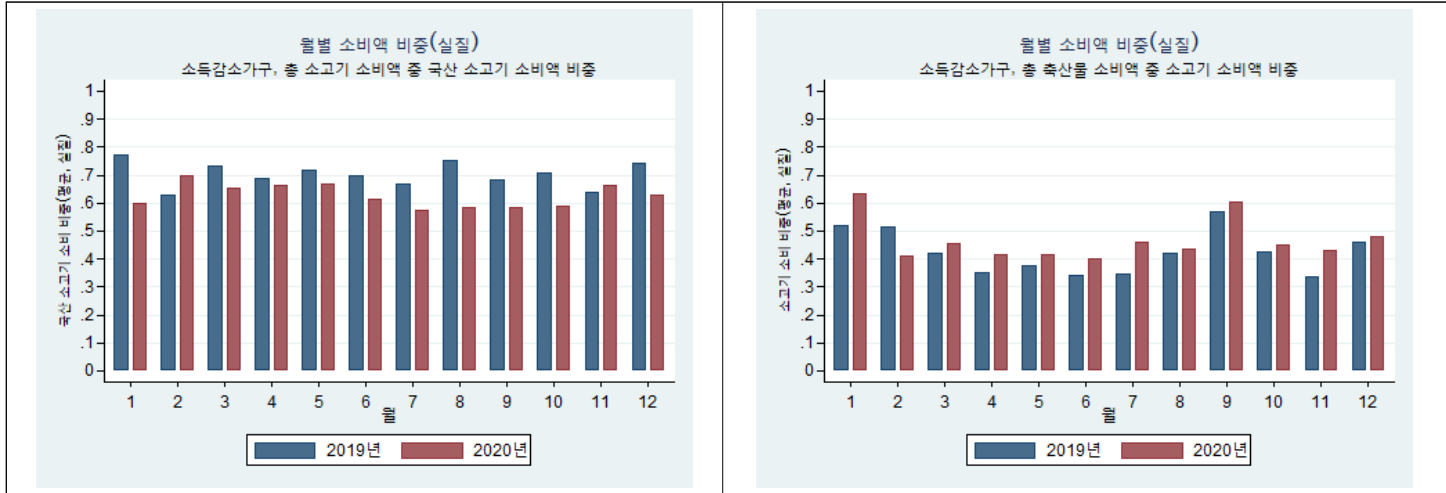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0] 부정적 소득충격 경험 가구 소고기 품목 소비 패턴(2019~2020년)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1] 부정적 소득충격 경험 가구 중 소득 1분위 및 2분위 소비지출액(2019~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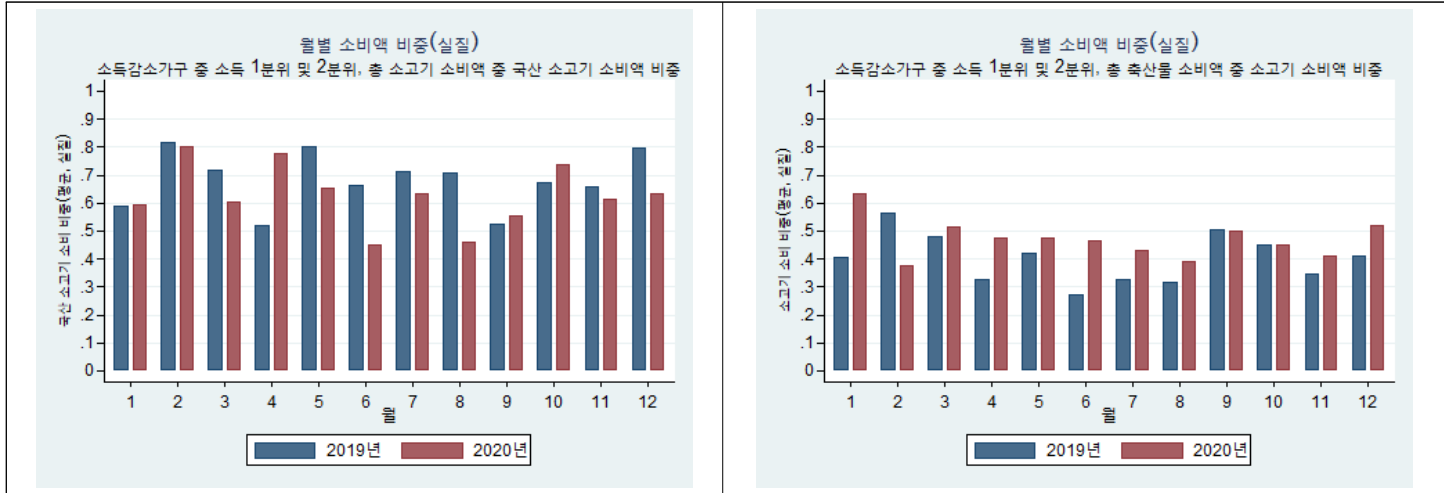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2] 부정적 소득충격 경험 가구 중 소득 1분위 및 2분위 소고기 품목 소비 패턴(2019~2020년)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3) 잠재적 근로장려세제 수급 여부에 따른 소비 패턴(2018~2019년)

다음으로 농식품패널에 존재하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여 잠재적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를 구분한 후 소비 패턴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가구의 맞벌이 여부 및 소득 정보를 2018년과 2019년 근로장려세제 소득 요건에 적용하여 이를 충족하면 잠재적 수급가구, 그렇지 않으면 잠재적 비수급가구로 분류하였다. 다만, 보유주택가액 등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는 부재하기 때문에 소득요건만으로 근로장려세제 수급 여부를 판단하였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Ⅲ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2019년부터 확대개편되었기 때문에 제도변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해 2018~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잠재적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농식품 소비수준이 근로장려세제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들이므로 이러한 패턴은 예측된 결과이다. 이러한 패턴은 주요 품목에 걸쳐 관측되었으며, 특히 가공식품, 축산물, 필수재 항목에서 그 차이가 컸다. 반면, 수산물 소비수준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고기 소비액 중 국내산 소고기 소비액 비중은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소 직관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수급가구의 소고기 소비액 금액수준 자체는 비수급가구에 비해 낮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확대된 2019년에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소비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Ⅲ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19년부터 반기지급이 시작되었으나, 납세자들이 반기지급에 익숙하지 않은 첫해이고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여전히 정기지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지급이 이루어지는 2019년 9월 이후의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소비 변화에 주목하였다.<sup>17)</sup> 정부의 현금성 지원의 소비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지급 후 단기간 내에 수혜자들의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가장

17) 2019년 근로장려세제는 추석 전인 2019년 9월 6일까지 지급되었다.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혜자들이 근로장려세제 지급일과 지급액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비 평탄화가 이루어져 이러한 패턴이 관측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지급일과 지급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2019년 총농식품소비액의 경우 수급가구와 비수급가구 모두 9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10월 이후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2018년 추석은 9월 24일인데 비해, 2019년 추석은 9월 13일이어서 추석과 관련된 농식품 소비가 2018년에는 대부분 9월에 잡히고, 2019년에는 8월에 일부가 분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2019년 9월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지는 그래프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2019년 10월과 11월의 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 정도는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농식품 소비를 품목별로 살펴보는 경우에도 모든 품목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이 관측되었다. 다만, 축산물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의 2019년 9~12월 소비가 비수급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비의 질적 측면을 소고기 소비를 통해 살펴본 결과, 수급가구의 소비가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는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장려세제 지급 직후(2019년 9~10월) 수급가구의 소고기 소비액 중 국내산 소고기 소비액 비중 및 축산물소비액 중 소고기 소비액 비중의 변화는 비수급가구의 패턴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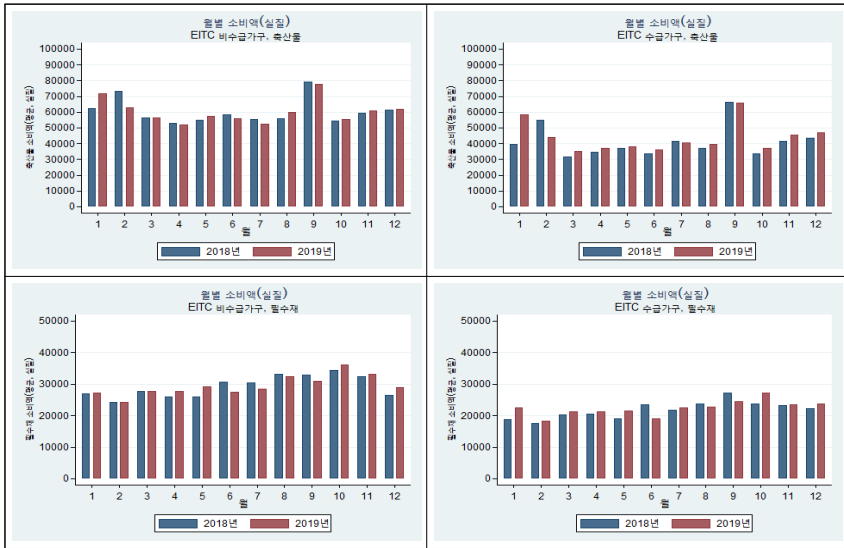
[그림 IV-13] 잠재적 EITC 수급 여부에 따른 소비 패턴 비교(2018~2019년)

(단위: 원)



[그림 IV-13]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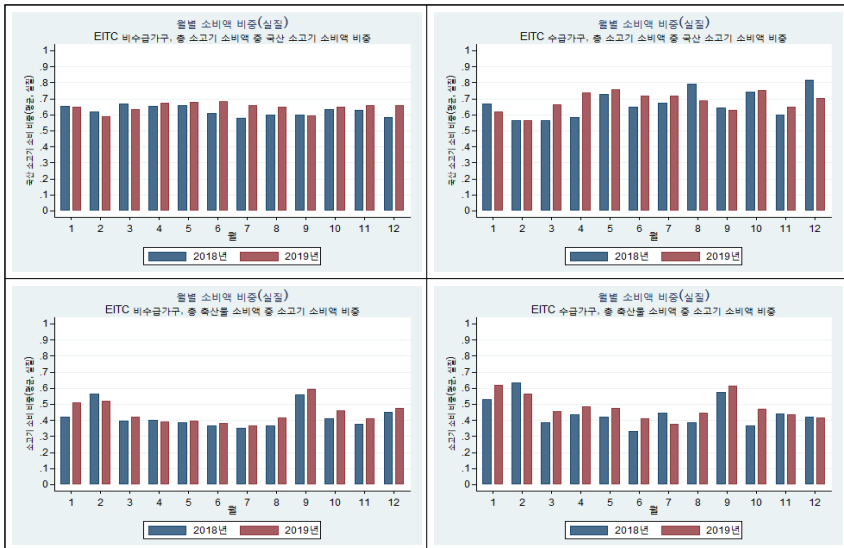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4] 잠재적 EITC 수급 여부에 따른 소고기 품목 소비 패턴 (2018~2019년)

(단위: 원)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 V.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분석

---

### 1. 분석대상으로서 근로장려세제 선정 이유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2023년 도입 예정), 근로장려세제 등 가구 또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현금 지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금 지원은 현물, 금융 지원과 달리 가구의 소득을 직접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저소득층 혹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불균등을 완화하는 영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이 주어졌을 때, 이러한 지원으로 가구가 소비 총량 및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소비의 질적 수준은 향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실증분석을 통해 현금성 지원의 소비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외생성을 활용하여야 한다. 앞서 소개한 다양한 현금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제도의 변화가 크지 않거나, 수급대상이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근로빈곤가구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경우 제도상의 변화가 크게 존재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분석대상이 되기 어렵다. 또 현금성 지원이 저소득 가구로 집중되기 때문에 근로빈곤층 가구의 소비행태는 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아동수당 역시 소득, 자산 수준과 관계없이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행태를 분석하는 본 연구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노동시장 참여를 목적으로 주어지는 중요한 조세지출 제도인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소비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제도 자체가 근로빈곤층을 주요 타깃층으로 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점증, 평탄, 점감 형태를 따르고 있는데, 취업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액은 없다. 또한, 지급액의 점증구간 때문에, 취업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 가구의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기존 일자리에서의 근로시간을 늘려 취업소득을 증진할 유인이 존재한다.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은 결국 경제활동 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국가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집단과, 경제활동 능력이 충분히 있거나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하여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자리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복지존성을 낮추고 독립적인 경제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둘째,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세제가 2019년에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해당 제도 변화가 2019년 신청분부터 바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사실상의 외생적 소득충격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반기지급을 허용하는 등 큰 폭의 제도 변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변화에 따라 2018년 신청분(2017년 귀속 소득분)에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2019년 신청분(2018년 귀속 소득분)에는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가구의 경우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150만~300만원의 현금이 일시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소득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더욱 특별한 것은, 해당 제도 변화가 2018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 신청분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제도 변화에 반응하여 행태를 변경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018년 세법개정안이 2018년

7월 30일에 발표되었으므로,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는 제도 변화에 반응한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 가능성은 0으로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기간인 2018년 7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김문정·김빛마로(2020)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에 대해 40.5%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59.0%였으며, 비수급가구는 23.3%로 그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가구 중 일부만이 실제로 행태를 변경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개정안 발표 직후인 2018년 하반기에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확대 발표에 반응하여 경제 주체들이 내생적으로 행태를 변화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즉, 정부의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따른 현금 지원을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은 외생적 소득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개연성이 있다. 반면 2019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는 소득효과와 노동공급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수혜가구가 제도변화를 인지한 후 확정된 최종적인 수급액은 노동공급의 전략적 행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현금성 지원의 효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2019년 귀속소득이 아닌 2018년 귀속소득분에 국한하는 경우에 순수한 현금성 지원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8년 세법개정안의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급가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변경되면서, 그 금액이 적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수한 정책 경험은 정부의 현금지원의 소비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소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KCB 신용카드 가구단위 자료, 농식품패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개관은 〈표 V-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V-1〉 실증분석 개관

KCB 신용카드 가구단위 자료		
분석 1	처리집단	통제집단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 ① 2018년 가구소득이 1,500만원 이하일 것 ② 2018년 6월 기준 가구주 총자산평가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것 ③ 동일 시점 가구 보유주택매매가 합계 총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것	처리집단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 ① 2018년 가구소득이 2천만원 미만일 것 ② 다음의 세부 조건 중의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 2018년 6월 기준 가구주총자산평가금액이 2억원 초과,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2018년 6월 기준 가구 보유주택매매가합계 총액이 2억원 초과, 5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기간: 2017년 1월~2019년 11월 처리기간: 2019년 9월, 10월, 11월		
표본의 구분/ 이질적 효과 분석	전체표본/ 가구원수 기준 1명, 2명 3명 이상, 가구주 연령기준으로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2017년 1월 기준 가구원 평균 신용도 하위 20%, 상위 20% 각각에 대한 하위표본	
강건성 체크	가구원수, 가구연령, 신용제약 수준 등에 따라 하위표본 분석 수행	
농식품패널 자료		
분석 2	처리집단	통제집단
	2018년 근로장려세제 비대상, 2019년 근로장려세제 대상이 되는 가구	2018년과 2019년 모두 근로장려세제 비대상인 가구
분석기간: 2018~2019년(weekly data) 처리기간: 2019년 36주 이후(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기간) 분석대상: 총농식품소비지출, 품목별 소비		
표본의 구분/ 이질적 효과 분석	전체표본/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하위표본	
강건성 체크	통제집단 설정 변경 후 일관된 추정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	

〈표 V-1〉의 계속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 3	처리집단	통제집단
	2018년 기준 근로장려세제 잠재적 수급가구 중에서 실제 수급한 가구	2018년 기준 근로장려세제 잠재적 수급가구 중에서 실제 수급하지 않은 가구
	분석기간: 2018~2019년, 처리기간: 2019년 분석대상: 전체 소비지출, 품목별 소비	
분석 4	처리집단	통제집단
	2018년에 근로장려세제를 수급한 가구	2018년 기준 소득(2천만원)과 자산(2억원)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근로장려세제를 수급하지 않은 가구
	분석기간: 2017~2019년, 처리기간: 2019년 분석대상: 전체 소비지출, 품목별 소비	
표본의 구분/ 이질적 효과 분석	분석 3: 소득과 자산기준을 추가하여 하위표본 분석 수행 분석 4: (주후 보완) 가구원수와 가구주 연령별 이질적 효과 분석	
강건성 체크	분석4: 소득기준과 자산기준과 통제집단을 달리하여 이중차이법 분석 수행	

자료: 저자 작성

## 2. KCB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분석

### 가. 분석방법 개관

본 절에서는 KCB 신용카드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가구단위의 마이크로 자료이며, 동일 시점 한 개의 관측치가 하나의 가구를 나타낸다. 2017~2020년 기간의 월별 자료를 입수하였고 입수한 자료는 가구 기준 균형패널 자료이다. 본 절에서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2019년 12월에 2019년 상반기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2019년 12월 이후의 기간은 2018년 귀속연도에 대한 EITC 수급충격의 소비효과를 살펴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석기간에서 제외하였다.

## 1) 이중차이법 분석

본고에서는 이중차이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상적인) 처리집단은 2019년 EITC 확대에 의하여 소득충격을 받은 집단이며, 통제집단은 처리집단과 유사하지만 동일한 정책충격을 받지 않은 집단이다. KCB 자료에서는 EITC 수급조건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나 총소득금액을 판별하기에는 소득이 유형별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맞벌이 및 홀벌이 가구나 소득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부양자녀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신용카드 미소지자이므로 데이터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구의 개념이 신용카드, 대출 등 신용업무를 수행할 때 가입한 주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EITC 수급조건을 판별 시 활용되는 가구와는 다르다. 동일 거주지를 주소로 하는 카드소지자들을 하나의 가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여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이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만 일시적으로 분리된 거처를 마련하는 가구원의 경우 별도의 가구로 간주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를 해석할 때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차이법 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y_{jt} = \beta^{EITC} I(j \in T) I(t \geq 201909) + \mu_t + \lambda_j + \sum_{k=1}^K \beta^k x_{jt} + \epsilon_{jt}$$

위의 식에서  $\beta^{EITC}$ 는 2018년 귀속연도에 대한 EITC 지급충격의 효과를 나타낸다.  $I(j \in T)$ 는 가구  $j$ 가 처리집단에 속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함수이며,  $I(t \geq 201909)$ 는 2019년 9월 이후의 월별자료에 해당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함수이다. 이에 따라,  $\beta^{EITC}$ 는 처리집단의 2019년 9월 전후의 변화분에서 통제집단의 2019년 9월 전후의 변화분을 제한 종속변수의 차분값을 의미할 것이다.  $\mu_t$ 는 월별 고정효과를,  $\lambda_j$ 는 가구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x_{jt}$ 는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가구  $j$ 의 특질변수를 의미하고,  $\epsilon_{jt}$ 는 가구

$j$ , 시점  $t$ 의 특정성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발현되는 임의변수를 의미한다.

한편 전술한 이중차이법 분석에서는 처리집단에 대한 더미변수와 처리기간에 대한 더미변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들 더미변수는 이중차이법 분석에 포함되는 필수요소인데, 이러한 항목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누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먼저, 본고에서의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은 분석표본을 형성할 때 이미 고정된 것이다. 즉, 분석기간 동안 특정 가구가 처리집단 혹은 통제집단에 속했다는 사실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가구의 고정효과  $\lambda_j$ 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만약  $I(j \in T)$ 이라는 더미변수를 위의 회귀식에 추가로 포함한다면,  $\lambda_j$ 와 이 더미변수  $I(j \in T)$  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sup>18)</sup> 분석기간에 대한 더미변수 역시 동일한 이유로 생략되었다. 본고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개월의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회귀식에서는 연도 및 월별 고정효과  $I(t \geq 201909)$ 와  $\mu_t$  간의 다중공선성이 발생하게 된다.<sup>19)</sup>

## 2) 처리집단의 식별

KCB 신용카드 가구단위 자료(이하 KCB 자료)에서는 가구 전체의 총자산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관련 정보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KCB에서 제공하는 자산의 정보가 「가계금융복지조사」과 비교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9년에 공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을 이용하여, 가구총자산액이 2억원 이하 여부를 부동산 자산 존재 여부에 추정하였다. <표 V-2>에 제시된 것과 같이 가구근로소득의 로그값, 신용대출금액의 로그값, 가구주가

18) 이러한 회귀식을 STATA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면,  $I(j \in T)$ 라는 더미변수 항은 자연스럽게 삭제된다.

19) 예를 들어, 2019년 8월의 경우,  $I(t \geq 201909)$ 의 더미는 0의 값을 갖는데, 이는  $\mu_{201908}$ 이 어떠한 값을 갖든지, 0의 값을 곱함으로써 이러한 시점 더미변수의 값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I(t \geq 201909)$ 의 값을 발생시키는  $\{\mu_t\}$ 의 선형조합을 언제나 발생시킬 수 있다.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더미변수, 가구주의 연령대가 30, 40, 50, 60, 70대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준거집단은 가구주가 20대인 집단임), 주택담보대출금액의 로그값 등을 활용하였다. 부동산 자산이 없다고 보고되는 가구는, 주택담보대출금액의 로그값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표 V-2〉에서 제시된 변수는 KCB 자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변수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KCB 자료를 통해서 ‘자산 2억원 미만 해당 여부’에 대한 확률을 추정할 때 그 결과가 합리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림 V-1]에서는 해당 확률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왼쪽 그래프는 부동산 자산이 존재하는 가구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부동산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가구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 자산이 존재하면 ‘자산 2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EITC 자산요건을 가구총자산과 가구원 보유 주택매매가격이 모두 1억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실제 EITC 자산요건은 2억원이지만, 부동산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2억원이 아닌 1억 5천만원으로 낮추어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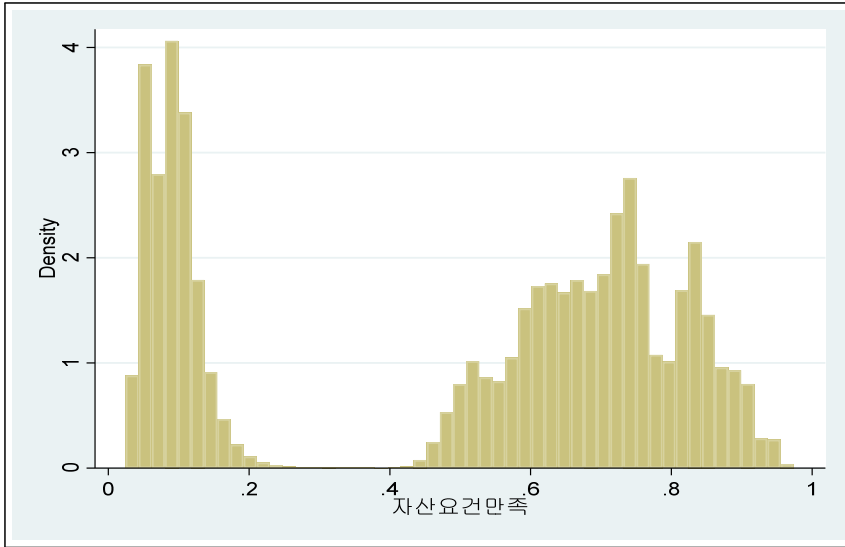
한편,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3,600만원이지만, 분석에서는 가구소득이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요건이 만족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KCB에서 추정된 소득은 근로소득(임금근로자의 경우) 혹은 사업소득(개인사업자의 경우)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고 모든 소득을 포괄하지 않고, 신용정보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의 소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의 임계치를 낮춘 것이다. 참고로 [그림 V-2]에서는 KCB 표본의 소득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간 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가구의 소득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 자산 2억원 만족 여부에 관한 회귀분석(probit)

구분	부동산자산 X	부동산 자산 O
ln근로소득	-0.1 (9.70)**	-0.05 (10.31)**
ln신용대출금액	-0.03104 (4.54)**	-0.02031 (4.42)**
가구주 임금근로자	0.381 (6.01)**	0.364 (10.20)**
가구주 연령: 30대	-0.53 (7.13)**	-0.08 (1.28)
가구주 연령: 40대	-0.32 (4.23)**	-0.21 (3.99)**
가구주 연령: 50대	0.14 (1.75)+	-0.11 (2.18)*
가구주 연령: 60대	0.36 (3.75)**	0.04 (0.86)
가구주 70대이상	0.67 (5.86)**	0.47 (9.46)**
ln주택담보대출금액		-0.04 (13.15)**
상수	1.63 (19.48)**	-0.41 (8.42)**
표본	5,696	12,710

주: \*\*\*는 p<0.01, \*\*는 p<0.05, \*는 p<0.1을 의미  
 자료: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공공형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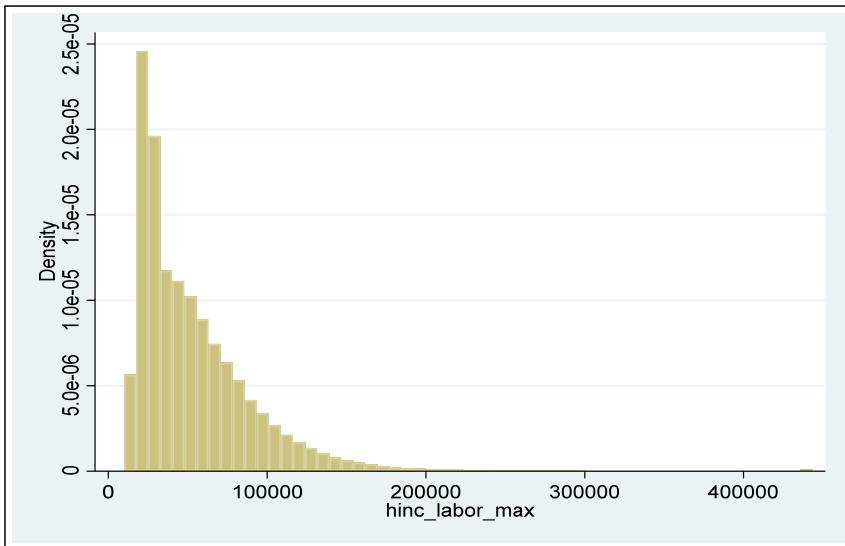
[그림 V-1] 자산 2억원 미만 확률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KCB 가구단위 가명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2] KCB 가구자산 2018년 연소득(추정) 분포

(단위: 천원)



자료: KCB 가구단위 가명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V-3〉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 기초통계량

(단위: 천원, %, 명)

구분	처리집단		통제집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월소득	1,175.21	224.76	1,487.09	217.88
총가계대출잔액	7,466.16	33,328.64	8,349.81	33,138.48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405.93	602.37	350.05	585.81
신용카드 사용액	150.96	477.16	158.13	454.66
체크카드 사용액	254.96	393.30	191.92	388.57
소득 대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비중	35.87	55.21	24.40	42.73
소득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	13.56	44.05	11.00	33.50
소득 대비 체크카드 사용액 비중	22.31	34.88	13.40	27.46
신규대출금액	178.85	2,937.03	190.59	4,812.97
신규신용대출금액	58.99	873.63	32.72	787.74
대출상환금액	61.50	196.65	50.01	180.19
신용대출상환금액	33.18	138.04	17.48	102.36
주택담보대출상환금액	10.03	75.69	24.97	124.49
가구원수(카드소지자수)	1.02	0.14	1.05	0.22

주: 2017년 1월~2018년 12월 기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

자료: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3) 통제집단의 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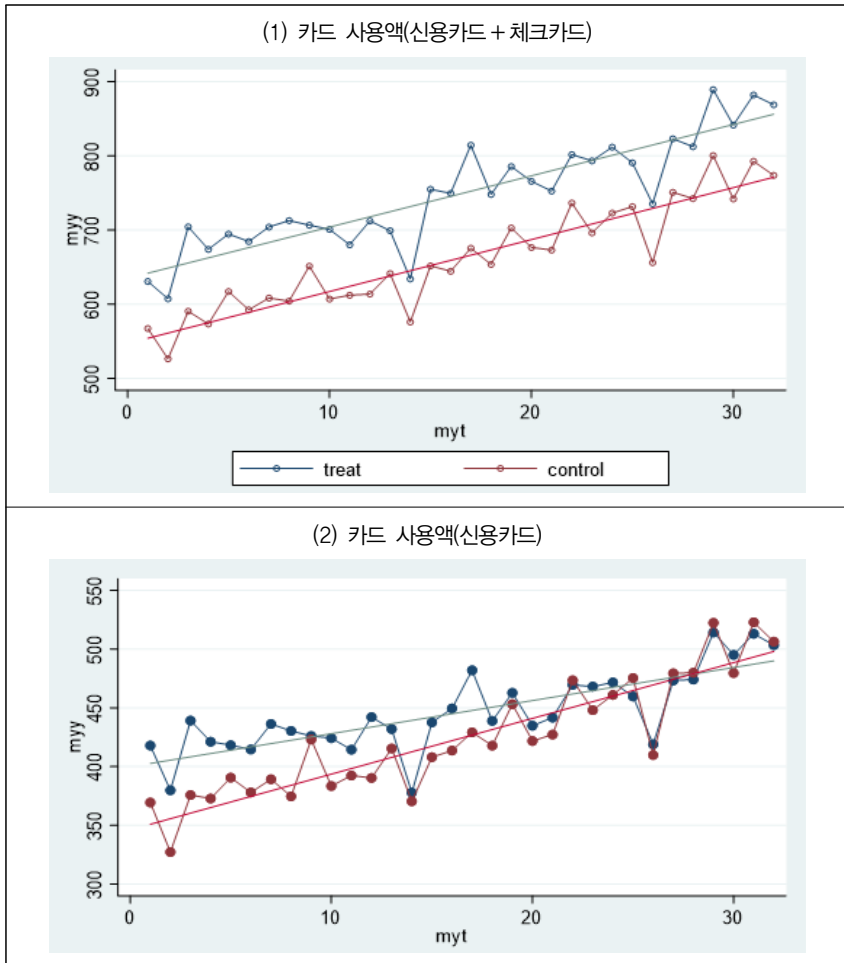
통제집단의 경우, 가구소득이 처리집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지만, 자산 수준은 명백히 위반하여 EITC를 받을 수 없는 집단으로 정의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제집단은 2018년 연간 가구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반면, 가구원 보유 주택의 총매매가 혹은 가구주 대표의 총자산금액이 2018년 6월 기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가구들로 한정하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총자산금액은 EITC의 자산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 이하로 선정하여야 이중차이법 적용 시 필수적인 평행추세(parallel trends)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그림 V-3]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33개월 기간의 월별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평행

추세가정을 검토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합한 금액의 경우  
 평행 추세 가정이 잘 성립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과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분리한 경우, 해당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과 체크카드 사용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중차이법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할 때 해석상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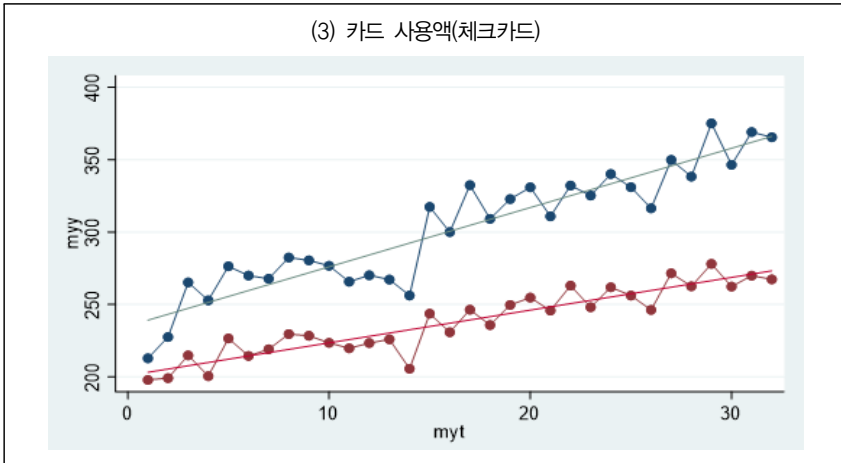
[그림 V-3] KCB 분석표본의 평행추세 가정 검토

(단위: 만원)



[그림 V-3]의 계속

(단위: 만원)



자료: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분석

## 나. 분석 결과

### 1) 주요 분석 결과

주요 정책효과로서 먼저 소비금액을 살펴보자. 소비금액은 KCB 기반 가구 가구원들의 카드 사용액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합산액, 신용카드 개별 금액, 체크카드 개별 금액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먼저, <표 V-4>에서 모형 1~3은 모두 가구의 고정효과와 월별 고정효과를 통제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EITC는 2019년 9월 이후를 나타내는 시점 더미변수와 처리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교차항을 나타내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2018년 귀속연도 대상 근로장려금의 지급충격 효과로 해석한다. <표 V-4>의 상단 패널에는 카드 사용금액(단위 천원)을 종속변수로 하고, 하단 패널에는 카드 사용액에 로그값을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상정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도와 계수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은 상단 패널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모형 1에는 EITC 변수, 처치 시점 더미, 가구 고정효과가 고려되었고, 모

형 2에는 모형 1의 통제변수에 더하여 전월 기준 가구월소득 변수가 추가되었다. 모형 3에는 모형 2의 통제변수에 더하여 전월 기준 대출잔액 변수가 추가되었다. 가구월소득과 대출잔액 변수는 모두 로그값을 취한 값을 통제 변수로 활용하였다. 소비효과는 대체로 모형 1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가구월소득과 대출잔액 변수가 포함되는 모형 2~모형 3에서 계수의 값이 낮아지거나, 양(+)에서 음(-)으로 계수의 부호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난다.

모형 3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근로장려금의 지급충격을 받은 처리집단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1.6만원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3.2만원 줄어 들고 체크카드 사용액이 4.8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의 경우, 이미 정책시점이 2019년 9월 이전에 통제 집단 대비 처리집단에서 체크카드로 구매한 금액이 점차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그림 V-3의 (3)). 그러므로 체크카드 사용액을 종속변수로 상정 시, EITC 효과가 높은 수준의 양(+)의 값으로 제시된 것 안에는 이러한 내재된 추세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전자를 줄이고 후자는 늘린다는 결과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근로장려금이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주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과 카드 결제 방식이 일반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에 인하여 기존보다 높은 액수의 근로장려금을 갑자기 지급받은 체크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고, 사후적으로 정산할 때에 지급받은 장려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로취약계층이 저신용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적시에 하지 않으면 신용도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상대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을 수 있다.

〈표 V-5〉에는 소득 대비 카드사용액의 비중에 대한 정책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충격으로 인하여 소득 대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합산금액 및 개별금액의 소득 대비 비중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소비의 비중은 4%가량 증가하였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의 비중은 각각 2% 정도로 유사한 수준으로 늘었다. 이러한 결과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KCB 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추정 모형을 활용하고 사후적으로 확인된 임금 변화분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대비 소비 비중'을 계산할 때 이 소득은 근로장려세제를 반영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비의 소득 대비 비중'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값은 근로장려세제 지급 전과 거의 유사하고, 소비금액은 <표 V-4>에 의하여 증가하였으므로 소비의 소득 대비 비중이 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충격으로 인하여 신용 및 체크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것으로 앞서 검토하였다. 그런데 소비에도 일반적인 소비가 있고 비소비 지출이 있는 만큼 가구는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 갚아야 할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필요한 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규대출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표 V-6>에서는 신규 신용대출금액이 3.2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용대출은 일반적인 소비를 위한 대출일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한 소득효과로 이러한 신용대출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체크카드 사용액 대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표 V-7>에서는 대출상환금액이 많아졌으며,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금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은 약 0.33만원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 증가액 1.63만원 대비 20% 수준이다. 이러한 낮은 수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처리집단 내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아서일 수도 있다. 혹은, 대출상환보다 현재 소비지출에 더 비중을 두고 지원금을 지출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표 V-4〉 카드사용액 효과

구분	신용+체크 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		
	1	2	3	1	2	3	1	2	3
EITC 효과	69.4725***	15.5552***	16.3439***	13.3239***	-33.2882***	-32.4877***	56.1487***	48.8434***	48.8316***
ln(이전 기의 가구소득)		262.6247***	264.3652***		234.4326***	236.1991***		28.1921***	28.1661***
ln(이전 기의 가구대출)			18.7489***			19.0287***			-0.2798
$R^2$	0.0446	0.0511	0.0573	0.0303	0.0395	0.0494	0.014	0.0133	0.0133
관측치수	617,220	606,933	606,933	617,220	606,933	606,933	617,220	606,933	606,933
구분	log(신용+체크 카드 사용액)			log(신용카드 사용액)			log(체크카드 사용액)		
	1	2	3	1	2	3	1	2	3
EITC 효과	0.1503***	0.0376***	0.0388***	0.1045***	-0.1541***	-0.1498***	0.1840***	0.1595***	0.1588***
ln(이전 기의 가구소득)		0.5154***	0.5180***		1.3031***	1.3126***		0.0691***	0.0677***
ln(이전 기의 가구대출)			0.0286***			0.1023***			-0.0159***
$R^2$	0.0562	0.058	0.0595	0.0625	0.0799	0.0974	0.0206	0.0198	0.0203
관측치수	617,220	606,933	606,933	617,220	606,933	606,933	617,220	606,933	606,933

주: \*\*\*는 p<0.01, \*\*는 p<0.05, \*는 p<0.1을 의미

자료: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V-5〉 소득 대비 카드사용액의 비중 효과

구분	신용 + 체크 카드 사용액 비중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			체크카드 사용액 비중		
	1	2	3	1	2	3	1	2	3
EITC 효과	-3,3296***	4,1035***	4,1431***	-2,4134***	2,0703***	2,1160***	-0,9162***	2,0332***	2,0271***
ln(이전 기의 가구소득)		-38,3711***	-38,2838***		-22,7554***	-22,6546***		-15,6156***	-15,6292***
ln(이전 기의 가구대출)			0,9399***			1,0863***			-0,1464***
$R^2$	0,0084	0,0485	0,0524	0,0051	0,0278	0,0362	0,0065	0,0212	0,0215
관측치수	617,220	606,933	606,933	617,220	606,933	606,933	617,220	606,933	606,933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V-6〉 신규대출 효과

구분	신규대출금액			신규신용대출금액		
	1	2	3	1	2	3
EITC 효과	69.4725***	15.5552***	16.3439***	13.3239***	-33.2882***	-32.4877***
ln(이전 기의 가구소득)		262.6247***	264.3652***		234.4326***	236.1991***
ln(이전 기의 가구대출)			18.7489***			19.0287***
$R^2$	0.0446	0.0511	0.0573	0.0303	0.0395	0.0494
관측치수	617220	606933	606933	617220	606933	606933
구분	log(신규대출금액)			log(신규신용대출금액)		
	1	2	3	1	2	3
EITC 효과	0.1503***	0.0376***	0.0388***	0.1045***	-0.1541***	-0.1498***
ln(이전 기의 가구소득)		0.5154***	0.5180***		1.3031***	1.3126***
ln(이전 기의 가구대출)			0.0286***			0.1023***
$R^2$	0.0562	0.058	0.0595	0.0625	0.0799	0.0974
관측치수	617,220	606,933	606,933	617,220	606,933	606,933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V-7〉 대출상환금액 효과

구분	대출 상환금액			신용대출 상환금액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액		
	1	2	3	1	2	3	1	2	3
EITC 효과	2.3651***	1.5098**	2.6275***	0.7417	-1.1333**	-0.646	1.2078***	2.9951***	3.3185***
ln(이전 기의 가구소득)		3.6244***	6.0913***		9.2290***	10.3045***	10.3045***	-9.1270***	-8.4133***
ln(이전 기의 가구대출)			26.5729***			11.5853***	11.5853***	11.5853***	7.6878***
$R^2$	0.0022	0.0022	0.1922	0.0024	0.0027	0.0775	0.0009	0.0015	0.0654
관측치수	617,220	606,933	606,933	617,220	606,933	606,933	617,220	606,933	606,933
구분	log(대출 상환금액)			log(신용대출 상환금액)			log(주택담보대출 상환금액)		
	1	2	3	1	2	3	1	2	3
EITC 효과	-0.0077	0.0081	0.0254***	-0.0059	-0.0053	0.0028	0.0301***	0.0450***	0.0498***
ln(이전 기의 가구소득)		-0.0993***	-0.0612***		-0.0154**	0.0025		-0.0812***	-0.0704***
ln(이전 기의 가구대출)			0.4100***			0.1926***			0.1157***
$R^2$									
관측치수	0.0017	0.0018	0.5414	0.0016	0.0015	0.1963	0.0011	0.0016	0.1425

주: \*\*\*는 p<0.01, \*\*는 p<0.05, \*는 p<0.1을 의미

자료: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2) 강진성 분석(소비효과 분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서 가구원수는 카드 소지자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에 해당하는 가구원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단, 가구원이 부양하는 고령자에 해당될 수는 있다. 가구원수가 커질수록 카드 사용금액 및 소득 대비 카드 사용금액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1인의 경우(단독가구나 홑벌이 가능성이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충격으로 인하여 카드사용액을 1.4만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구원 2인의 경우 17.3만원, 가구원 3인 이상이면 99.8만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부양가족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 동일한 소득 금액하에서 가구원수 많은 가구가 유동성 제약으로 소비수준이 저해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질 때 상대적으로 가구의 평균 소비증가금액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CB 자료에서는 부양부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부양자녀의 수를 직접 알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이면 카드 합계 금액은 6.77천원 감소하지만, 소득 대비 카드사용 금액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유사한 패턴인데, 이는 KCB에서 가구월소득 추정방식 등을 포함하여 관련 메커니즘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7년 1월 기준으로 측정된 가구의 평균신용도 분위기를 고려하여 하위 20%와 상위 20%를 고려하였을 때 소비효과가 두드러지는 부분을 찾기는 어려웠다. 신용제약 수준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여 재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V-8〉 하위표본 분석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액									
Variable	전체	가구원수 = 1	가구원수 = 2	가구원수 > 2	가구주 20~30대	가구주 40~50대	가구주 60대 이상	2017년 1월 가구원 평균 신용도 하위20%	2017년 1월 가구원 평균 신용도 상위 20%
EITC 효과	16.34***	14.81***	173.39***	998.78***	-5.64	11.3	-6.77**	-0.89	-6.72
ln(이전 기의 가구소득)	264.37***	269.32***	152.14***	156.39	287.04***	14.67	123.02***	387.84***	133.35***
ln(이전 기의 가구대출)	18.75***	19.07***	13.96***	18.45	22.53***	10.16***	4.55***	23.29***	11.45***
$R^2$	0.06	0.06	0.07	0.18	0.1	0.02	0.01	0.07	0.03
관측치수	606,933	583,392	22,774	767	260,544	49,560	296,829	255,352	228,625
소득 대비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액 비중									
Variable	전체	가구원수 = 1	가구원수 = 2	가구원수 > 2	가구주 20~30대	가구주 40~50대	가구주 60대 이상	2017년 1월 가구원 평균 신용도 하위20%	2017년 1월 가구원 평균 신용도 상위 20%
EITC 효과	4.14***	3.90***	4.47***	59.50***	3.83***	-5.70***	2.31***	-0.89	-6.72
ln(이전 기의 가구소득)	-38.28***	-36.10***	-71.08***	-135.17***	-47.59***	-57.58***	-23.58***	387.84***	133.35***
ln(이전 기의 가구대출)	0.94***	0.94***	0.68***	-0.47	1.13***	0.52***	0.25***	23.29***	11.45***
$R^2$	0.05	0.05	0.13	0.35	0.05	0.19	0.02	0.07	0.03
관측치수	606,933	583,392	22,774	767	260,544	49,560	296,829	255,352	228,625

주: 1. 본 표에서 고려되는 모형은 전월 시점의 가구소득과 대출잔여금액이 포함된 모형 3

2.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KCB 가구단위 가명처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3.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 가. 분석방법 개관

##### 1) 기본 분석

농식품패널을 이용한 분석은 농식품 소비액에 대한 양적 분석과 농식품 소비의 질적 수준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병행한다. 농식품패널 자료는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식품 등 농식품 관련 품목 전반에 대한 가구 단위의 상세한 소비 정보를 일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농식품은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근로빈곤가구의 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소비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분석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사대상 가구의 농식품 관련 소비를 재화 소분류 단위까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근로장려세제가 지급되는 경우 가구가 소비의 질적 수준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파악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분석을 위해 2018~2019년 농식품패널 자료를 주 단위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일 단위 자료를 주 단위로 변환한 이유는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확대된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2018년 귀속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19년 9월 6일 금요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정확한 지급 시기는 가구별로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 9월 6일이 속하는 주에 근로장려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상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론은 표준적인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 모두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에 속하지 않은 가구를 통제집단, 2018년에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9년에 새롭게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이 된 가구를 처리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즉, 기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8년 7월 30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2018년 귀속소득분(2019년 지급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된 가구와 2018년과 2019년 모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를 비교하여 소비행태를 유의미하게 변경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때 2018년과

2019년 모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구까지 함께 처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해당 가구의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에 근로장려금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제외하였다. 데이터에서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및 수혜금액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금액 증가 여부 및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로장려세제 요건 충족 여부를 엄밀하게 파악할 수 없는 농식품패널 자료의 특성상 이들 가구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sup>20)</sup>

자료에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기 위해 각 연도 및 가구별 가구 구성 및 맞벌이 여부, 소득금액 정보를 활용하였다. 하지만 농식품패널 자료에는 가구의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의 자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앞서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과 자산 사이에는 비교적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가구유형 및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근로장려세제 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에도 실제 제도 대상 가구들을 근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y_{it} = \alpha + \beta_1 NEWEITC_i + \beta_2 POST_t + \beta_3 (NEWEITC_i \times POST_t) + \gamma X_{it} + \omega Z_t + \lambda_i + \mu_t + \epsilon_{it}$$

*NEWEITC*는 2018년(2017 귀속연도)에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9년(2018 귀속연도)에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인 가구의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2018년과 2019년 모두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이 아닌

20) 예를 들어,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소득 또는 자산이 증가한 경우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2018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면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추정하여 근로장려금이 증가한 가구를 처리집단으로 설정할 수 있겠으나, 자료의 한계로 이러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이에 금액의 차이는 있겠으나, 정부 지원을 통해 소득이 증가한 것이 확실시되는 '2019년에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만을 처리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경우)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POST*는 2019년 근로장려세제가 지급된 2019년 36번째 주 이후 기간인 경우 1, 그 이전 기간에는 0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이다.  $NEWFITC \times POST$ 는 두 더미변수의 교차항으로서 본 회귀식의 주요 관심변수이다. 해당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beta_3$ 는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나타낸다.  $X$ 는 가구단위 통제변수이며 분석에서는 가구 소비행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소득, 가구원수, 자녀 존재 여부 또는 자녀수, 수도권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  $Z$ 는 시간에 따른 통제변수로서 설연휴 더미, 추석연휴 더미를 고려하였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농식품 소비는 계절성이 강하고, 특히 명절 기간에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추가적으로 통제한 것이다.  $\lambda$ 는 가구 고정효과,  $\mu$ 는 연도 고정효과이다.

종속변수  $y$ 는 근로장려세제의 양적 및 질적 소비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구의 농식품 소비 총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총농식품소비액을 고려하였다. 또한 육류 소비액 및 소비량, 소고기 소비액 및 소비량, 한우 소비액 및 소비량, 과일 소비액, 라면류 소비액, 노점 및 무점포 소비액, 필수재 소비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육류 소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한 것은 소비의 질적 변화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다. 소비의 질적 수준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들이 소비량을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가격의 재화를 소비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소비자 선호가 비교적 동질적인 육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육류 소비에 대해서는 농식품패널 자료에서 매 거래별 동일한 단위(g)로 수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육류 소비액과 소비량, 소고기 소비액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소비행태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등하거나 열등한 재화로 인식되고 있는 제품군의 소비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는 것이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기타 육류는 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소고기가 다른 육류에 비해 더 우등한 재화로, 소고기 중에서는 한우가 더 질 높은 재화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뒤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육류, 소고기 및 한우의 소비액과 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과일류 및 라면류에 미치는 효과도 별도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질 높은 재화<sup>21)</sup>로, 라면류는 질 낮은 재화로 인식되고 있어 이들 재화에 대한 소비 변화가 상이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제품군이 아닌 제품 구입처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의 질적 수준 변화를 살펴보았다. 농식품패널 자료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노점, 무점포 등으로 구분하여 제품 구입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22)</sup> 구입 장소 중 노점과 무점포의 경우 대부분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 제품 품질 등과 관련된 정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농식품을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수혜가구들의 노점 및 무점포 소비액이 감소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소비의 질적 수준 개선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수혜가구의 필수재 소비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지급 대상 가구들이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필수재 품목에 대한 소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필수재 소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군 중 필수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완전히 일치된 견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정의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필수재 1’은 앞서 기초분석에서 활용한 필수재의 정의로서 쌀, 생수, 우유, 난류, 김치 제품이 포함된다. ‘필수재 2’는 필수재 1에 빵류 및 채소류<sup>23)</sup>를 추가하여 정의하였다.

21) 권정현 외(2009)는 과일 및 채소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에너지 밀도가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 생리활성물질(Phytochemical)이 풍부하기 때문에 과일 및 채소 섭취가 심혈관계 질환 및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춘다고 논의하고 있다.

22) 기업형 슈퍼마켓, 노점, 농가직거래,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 로컬푸드매장, 무점포, 백화점, 소형슈퍼마켓, 슈퍼마켓, 아파트 임시장, 유기농 매장, 인터넷 구매, 전문점, 전통시장, 전통시장 슈퍼, 전통시장 정육점, 정육점, 편의점, 흡소점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 2) 추가 분석

기본분석에서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이를 처리집단(2019년에 새롭게 근로장려세제 대상이 된 가구)과 비교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시도한다. 이렇듯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집단 표본 중 일부는 처리집단 표본과 그 특성이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수준 등 가구 특성변수, 가구 고정효과 등 다양한 통제변수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관측 불가능한 가구 특성,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가구 특성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가 분석에서는 가구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를 통제집단 표본에서 제외한 후 동일한 회귀식을 추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처리집단과 비교적 유사한 성격의 가구끼리 비교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슷한 이유로 근로장려세제 수급 요건에 인접한 가구들로만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농식품패널의 표본 크기가 크지 않은 점, 데이터의 측정 오류 등이 존재할 수 있고 자산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분석은 오히려 정확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 균등화 소득 기준 상위 10%, 20%, 30%의 표본을 차례로 제외한 분석을 수행하여 제도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가 자녀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부양자녀 수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비효과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그중에서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서 그 효과가 더 큰지를 부분표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

23) 상품 중분류의 근채류, 나물류, 엽경채류, 조미채류 및 기타 채소류를 의미한다.

### 3) 평행추세 가정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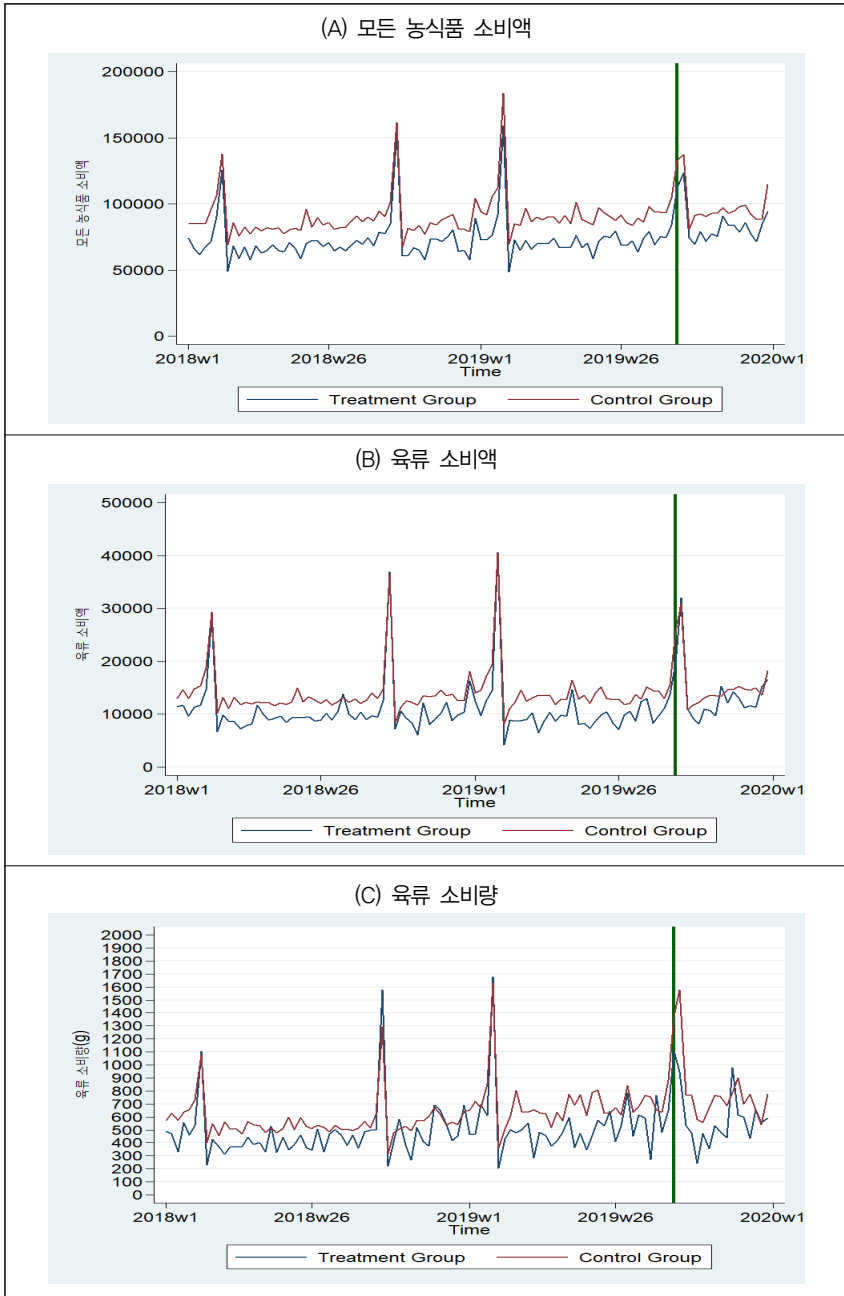
이중차분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의 소비 효과를 추정하려면 처리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평행추세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소절에서는 실증분석에서 활용하는 주요 종속변수에 대해 두 그룹 사이에 공통적인 추세가 확인되는지 [그림 V-4]를 통해 살펴본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처리집단은 2018년에는 근로장려세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9년에 새롭게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충족한 가구이며, 통제집단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이다. 각 그래프의 초록색 수직선(vertical line)은 2019년(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2019년 36번째 주를 나타낸다. 그래프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주별 자료를 활용하여 모든 농식품 소비액, 육류 소비액 및 소비량, 소고기 소비액 및 소비량, 한우 소비액 및 소비량, 과일 소비액, 라면류 소비액, 노점 및 무점포 소비액, 필수재(필수재 정의 1 및 2) 소비액에 대해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V-4]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통제집단의 소비액 및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두 그룹 사이에 일정한 차이를 두고 대체로 공통적인 추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그룹 모두 설 및 추석 등 주요 명절 기간에 농식품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명절 이외 기간도 소비 추이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한우 소비량의 경우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평행추세 가정이 다소 위배되는 패턴도 일부 관측되고 있으므로 뒤에서 소개할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제품군과 달리 필수재 2는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소비액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필수재 2'가 '필수재 1'에 비해 필수재의 정의를 더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점 및 무점포 소비액의 경우 처리집단의 소비액이 통제집단에 비해 대체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점 및 무점포에서의 소비가 질적으로 낮은 소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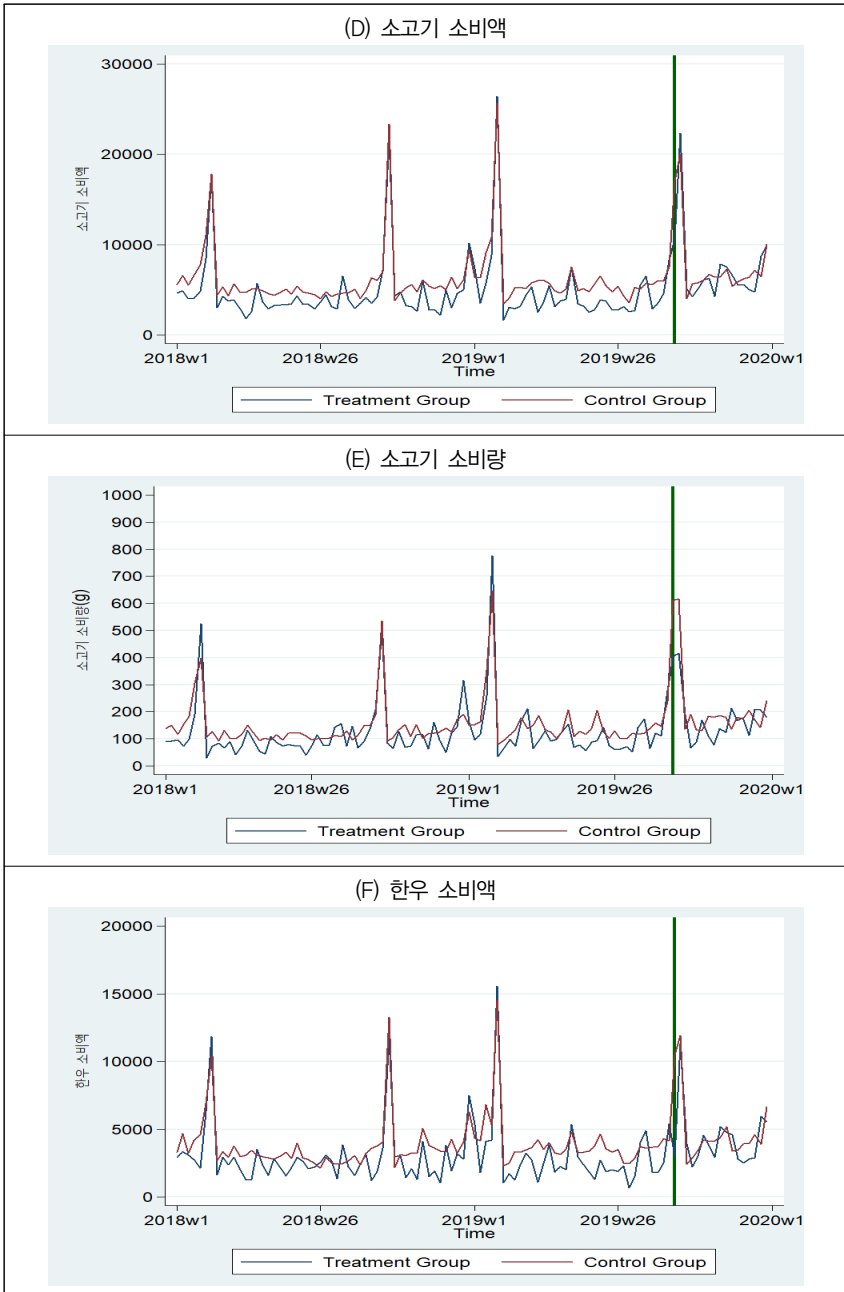
[그림 V-4] 평행추세 가정 확인

(단위: 원, g)



[그림 V-4]의 계속

(단위: 원,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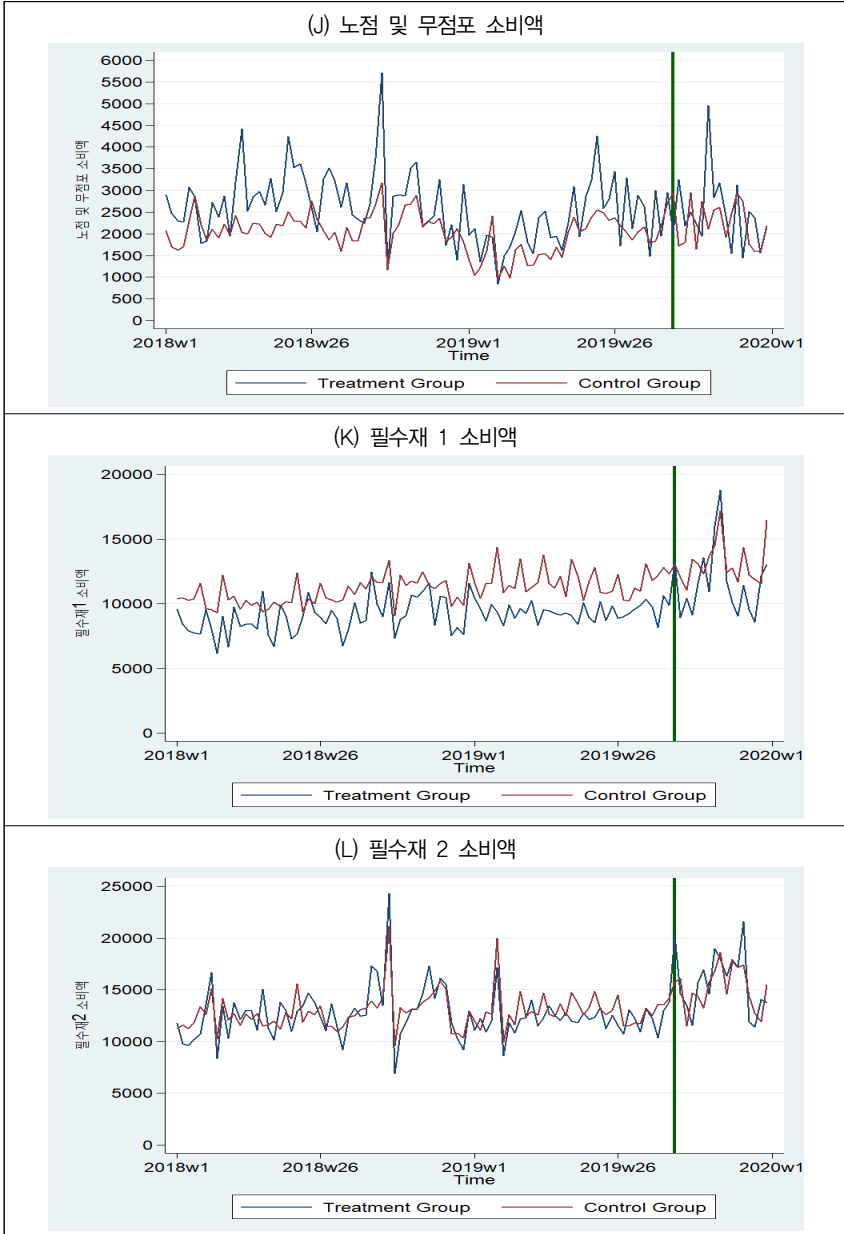
[그림 V-4]의 계속

(단위: 원, g)



[그림 V-4]의 계속

(단위: 원)



주: 필수재 1은 쌀, 생수, 우유, 난류, 김치 제품으로, 필수재 2는 필수재 1에 빵류 및 채소류를 추가하여 정의  
 자료: 「농식품 소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나. 분석 결과

이하에서는 앞서 소개한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에 대한 기본분석 및 추가분석 결과를 차례로 소개한다.

### 1) 기본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의 양적 및 질적 소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종속변수에 대해 동일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종속변수별로 모형 (1)~(2)는 가구 고정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3)~(5)는 가구고정효과를 포함한 경우의 추정 결과이다. 관심 설명변수는 <표 V-9>의 “NEWETC×POST” 변수이다.

근로장려세제가 총농식품소비액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가구 고정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보다 포함한 경우 효과의 크기가 커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의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2018년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9년에 근로장려금을 새롭게 지급받은 가구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당 3,915원 정도를 더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이 근로빈곤가구의 농식품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세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 자체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국세청(2019)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생활비(70%), 추석 명절비용(7.8%), 병원비(6.9%) 등 용도로 ‘소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90%로 나타났다.<sup>24)</sup>

이 밖에 연간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대체로 농식품 소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앞서 기초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설연휴 및 추석연휴가 있는 기간에는 농식품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

24)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근로장려금을 저축(5.1%) 또는 부채상환(3.3%)에 활용하는 비중은 약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9〉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총농식품소비액

구분	(1)	(2)	(3)	(4)	(5)
POST	4029.93***	4020.87***	3531.84***	3548.64***	3552.52***
NEWETC	-1796.54**	-1692.02**	-	-	-
NEWETC×POST	3127.76*	3139.16*	3920.28***	3911.63***	3915.68***
연간 소득	1.14***	1.18***	-1.42	-1.46	-1.47
가구 구성원 수	12791.20***	12352.20***	1192.72**	1172.77**	1242.25**
영유아자녀 더미	-6492.55***	-	-9229.49***	-	-
수도권 더미	2225.12***	2604.39***	8684.32	7150.11	-
설연휴 더미	72547.05***	72556.27***	72694.76***	72692.34***	72694.76***
추석연휴 더미	60171.88***	60175.27***	60374.69***	60366.61***	60374.69***
상수항	36227.71***	36491.75***	84495.46***	84600.6***	87634.6***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가 근로빈곤가구 농식품 소비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육류 소비 관련 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근로장려세제가 육류 소비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일관되게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평균적으로 주당 1,303원 정도(모형 (5) 기준) 육류 소비액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회귀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종속변수를 육류 소비량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 수급 이후 수혜가구들의 육류 소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그 크기는 주당 평균 82g(모형 (5) 기준) 수준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장려금 수급 이후 수혜가구들은 육류 소비량을 소폭 줄이되 질 높은 재화를 소비하여 소비액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10〉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육류 소비액

구분	(1)	(2)	(3)	(4)	(5)
POST	840.15***	835.32***	753.60***	760.15***	760.65***
NEWETC	-49.46	6.30	-	-	-
NEWETC×POST	1214.70**	1220.78**	1305.94**	1302.57**	1303.09**
연간 소득	0.22***	0.24***	1.05	1.03	1.03
가구 구성원 수	2647.13***	2413.34***	-674.07	-681.84	-672.87
영유아자녀 더미	-3463.52***	-	-3599.27***	-	-
수도권 더미	1022.72***	1225.04***	1521.48	923.17	-
설연휴 더미	21937.54***	21942.46***	21933.85***	21932.90***	21932.90***
추석연휴 더미	20494.02***	20495.83***	20520.65***	20517.50***	20517.21***
상수항	2886.74***	3027.60***	8104.21*	8145.21*	8536.94**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표 V-11〉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육류 소비량

구분	(1)	(2)	(3)	(4)	(5)
POST	85.59***	85.25***	13.90***	81.51***	81.47***
NEWETC	23.39	27.30*	-	-	-
NEWETC×POST	-86.45**	-86.02**	-82.30**	-82.39**	-82.43**
연간 소득	0.00	0.00*	0.13***	0.13***	0.13***
가구 구성원 수	167.13***	150.71***	17.21	17.03	16.25
영유아자녀 더미	-243.27***	-	-86.38	-	-
수도권 더미	81.77***	95.98***	-65.63	-79.99	-
설연휴 더미	771.29***	771.63***	771.68***	771.66***	771.66***
추석연휴 더미	786.14***	786.27***	788.89***	788.81***	788.84***
상수항	-14.78	-4.88	-250.09	-249.10	-283.04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앞의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수혜가구들의 소고기 소비액 및 소고기 소비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로장려세제가 소고기 소비액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육류 소비액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는 평균적으로 주당 935원 정도(모형 (5) 기준) 소고기 소비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소고기 소비량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추정된 회귀계수의 크기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군을 ‘육류’로 크게 설정한 경우에 비해서는 뚜렷하지 않지만, 소고기 제품군에서도 소비의 질적 개선이 일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소고기 소비액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소고기 소비량은 변화가 없었으므로 소고기 제품군 중 가격이 높은, 따라서 질적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큰 재화의 소비가 일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V-12〉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소고기 소비액

구분	(1)	(2)	(3)	(4)	(5)
POST	1161.17***	1160.26***	1113.30***	1117.38***	1118.68***
NEWETC	20.27	30.74	-	-	-
NEWETC×POST	892.78*	893.92*	935.74*	933.63*	935.00*
연간 소득	0.19***	0.19***	0.54	0.53	0.53
가구 구성원 수	684.06***	640.17***	-444.79	-449.64	-426.31
영유아자녀 더미	-650.27***	-	-2243.67*	-	-
수도권 더미	523.72***	561.71***	2774.46	2401.49	-
실연휴 더미	16419.61***	16420.53***	16434.21***	16433.62***	16433.61***
추석연휴 더미	15763.63***	15763.97***	15764.44***	15762.48***	15761.74***
상수항	1773.32***	1799.77***	2318.95	2344.51	3363.53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표 V-13〉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소고기 소비량

구분	(1)	(2)	(3)	(4)	(5)
POST	54.23***	54.19***	53.62***	53.69***	53.72***
NEWETC	6.21	6.66	-	-	-
NEWETC×POST	-17.84	-17.79	-18.21	-18.24	-18.22
연간 소득	0.00***	0.00***	0.05***	0.05***	0.05***
가구 구성원 수	25.46***	23.53***	19.09	19.01	19.49
영유아자녀 더미	-28.54***	-	-37.56	-	-
수도권 더미	27.21***	28.88***	55.54	49.30	-
설연휴 더미	405.86***	405.90***	406.06***	406.05***	406.05***
추석연휴 더미	403.09***	403.11***	403.10***	403.06***	403.05***
상수항	20.77***	21.93***	-282.21**	-281.78**	-260.86**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한우 소비액 및 소비량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뚜렷한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1)~(5) 모형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수혜가구들이 한우 소비액을 늘리고 한우 소비량은 줄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추정된 회귀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추정된 효과의 크기도 크지 않았다.

〈표 V-14〉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한우 소비액

구분	(1)	(2)	(3)	(4)	(5)
POST	679.11***	678.98***	635.88***	638.28***	639.16***
NEWETC	-81.07	-79.63	-	-	-
NEWETC×POST	176.98	177.13	210.58	209.35	210.27
연간 소득	0.16***	0.16***	0.48	0.48	0.48
가구 구성원 수	292.04***	285.99***	-882.77**	-885.62**	-869.87**
영유아자녀 더미	-89.53	-	-1318.68	-	-
수도권 더미	-607.79***	-602.56***	1840.21	1621.01	-
설연휴 더미	9212.70***	9212.83***	9226.91***	9226.57***	9226.56***
추석연휴 더미	8686.64***	8686.68***	8693.96***	8692.81***	8692.31***
상수항	1732.42***	1736.06***	2446.93	2461.96	3149.80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표 V-15〉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한우 소비량

구분	(1)	(2)	(3)	(4)	(5)
POST	32.79***	32.77***	31.91***	31.93***	31.95***
NEWETC	-0.06	0.11***	-	-	-
NEWETC×POST	-14.85	-14.84***	-14.78	-14.79	-14.77
연간 소득	0.00***	0.00***	0.03***	0.03***	0.03***
가구 구성원 수	9.42***	8.70***	-15.56	-15.58	-15.20
영유아자녀 더미	-10.62**	-	-9.19	-	-
수도권 더미	-10.10***	-9.48***	40.86	39.33	-
설연휴 더미	178.82***	178.84***	178.97***	178.97***	178.97***
추석연휴 더미	172.28***	172.28***	172.60***	172.59***	172.58***
상수항	26.45***	26.89***	-98.40	-98.29	-81.60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가 과일 소비액과 라면류 소비액에 미치는 효과를 차례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과일류는 건강에 좋은 식품, 라면은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수혜가구들이 과일 소비를 증가시키고, 라면류 소비를 줄이는 패턴이 관측된다면 이를 소비 수준의 질적 개선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현금지원을 받은 가구들이 건강식에 대한 소비액을 늘리고, 라면 소비액은 줄이는지 확인한 결과 과일 소비액에는 양(+)의 영향을 주었으나 라면 소비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5) 기준, 근로장려세제는 수급가구들의 과일 소비액을 주 평균 812원 증대시켰으나, 라면 소비액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V-16〉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과일 소비액

구분	(1)	(2)	(3)	(4)	(5)
POST	-2966.75***	-2968.74***	-3011.28***	-3013.26***	-3014.71***
NEWEITC	-826.37***	-803.32***	-	-	-
NEWEITC×POST	736.84*	739.35*	812.30**	813.32**	811.80**
연간 소득	0.29***	0.30***	0.01	0.02	0.02
가구 구성원 수	647.59***	550.96***	233.33	235.69	209.65
영유아자녀 더미	-1431.43***	-	1089.41	-	-
수도권 더미	450.81***	534.43***	-2860.47	-2679.38	-
설연휴 더미	12310.91***	12312.94***	12353.55***	12353.83***	12353.85***
추석연휴 더미	10081.59***	10082.34***	10107.15***	10108.10***	10108.92***
상수항	7544.65***	7602.87***	11645.73	11633.32***	10496.38***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표 V-17〉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라면류 소비액

구분	(1)	(2)	(3)	(4)	(5)
POST	-68.65**	-69.14**	-76.56***	-76.74***	-76.76***
NEWETC	-229.24***	-223.58***	-	-	-
NEWETC×POST	42.29	42.91	54.99	55.08	55.06
연간 소득	-0.03***	-0.03***	0.10	0.10	0.10
가구 구성원 수	466.57***	442.85***	81.89	82.10	81.77
영유아자녀 더미	-351.42***	-	98.69	-	-
수도권 더미	-12.42	8.11	-50.37	-33.96	-
설연휴 더미	30.54	31.04	33.44	33.46	33.46
추석연휴 더미	-150.83**	-150.65**	-150.72**	-150.63**	-150.62**
상수항	155.41***	169.70***	518.83	517.71	503.30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노점 및 무점포 소비액 변화를 추정한 결과, 근로장려금 수혜가 구들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이후 노점 및 무점포에서의 소비액을 유의미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금 수혜가구들의 소비수준이 질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18〉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노점 및 무점포 소비액

구분	(1)	(2)	(3)	(4)	(5)
POST	418.05***	416.13***	421.37***	422.11***	421.87***
NEWETC	394.56***	416.73***	-	-	-
NEWETC×POST	-346.73*	-344.31*	-351.10**	-351.48**	-351.74**
연간 소득	0.00	0.01	-0.14	-0.14	-0.14
가구 구성원 수	-15.66	-108.60***	229.07	228.19	223.83
영유아자녀 더미	-1376.83***	-	-408.99	-	-
수도권 더미	-727.47***	-647.04***	-380.14	-448.13	-
설연휴 더미	188.71	190.66	201.04	200.93	200.93
추석연휴 더미	469.98***	470.70***	463.16***	462.80***	462.94***
상수항	2724.02***	2780.01***	2566.25*	2570.91*	2380.76**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가 필수재 소비에 미치는 영향 결과이다. 쌀, 생수, 우유, 난류, 김치 제품으로 정의한 ‘필수재 1’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수재 1’에 빵류 및 채소류를 추가하여 정의한 ‘필수재 2’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소비액 증대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형 (5)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가구는 평균적으로 주당 966원을 필수재 구입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장려금 수급가구가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평시에 충분한 필수재 소비수준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V-19〉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필수재 1 소비액

구분	(1)	(2)	(3)	(4)	(5)
POST	1514.53***	1514.02***	1463.37***	1467.19***	1466.72***
NEWETC	138.71	144.66	-	-	-
NEWETC×POST	471.43	472.08	572.80	570.84	570.35
연간 소득	0.15***	0.15***	-0.69*	-0.70*	-0.70*
가구 구성원 수	1710.55***	1685.62***	1020.16**	1015.63**	1007.29**
영유아자녀 더미	-369.41**	-	-2095.63**	-	-
수도권 더미	527.17***	548.74***	-509.62	-857.97	-
설연휴 더미	592.19*	592.71*	622.17*	621.62*	621.63*
추석연휴 더미	672.78*	672.97*	695.16**	693.33**	693.59**
상수항	4103.78***	4118.81***	11866.87	11890.74	11526.68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표 V-20〉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추정 결과: 필수재 2 소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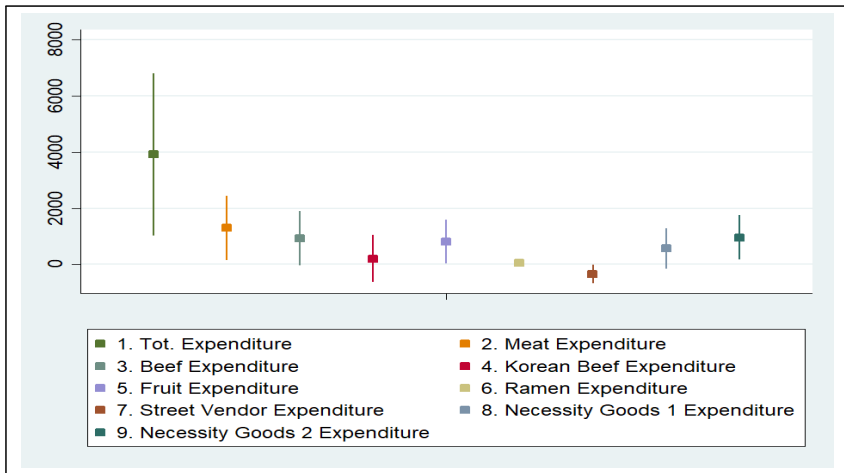
구분	(1)	(2)	(3)	(4)	(5)
POST	2066.55***	2062.72***	2042.56***	2045.34***	2044.14***
NEWETC	1771.57***	1815.78***	-	-	-
NEWETC×POST	900.30**	905.12**	969.30**	967.87**	966.62**
연간 소득	0.18***	0.20***	-1.68***	-1.69***	-1.69***
가구 구성원 수	1535.03***	1349.67***	1760.70***	1757.40***	1735.87***
영유아자녀 더미	-2746.07***	-	-1527.73*	-	-
수도권 더미	918.23***	1078.64***	-1961.85	-2215.81	-
설연휴 더미	4776.25***	4780.15***	4792.13***	4791.73***	4791.74***
추석연휴 더미	4970.15***	4971.59***	4955.96***	4954.62***	4955.29***
상수항	6358.46***	6470.13***	18115.24***	18132.64***	17192.41***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개인 고정효과	N	N	Y	Y	Y
표본수	130,261	130,261	130,261	130,261	130,261
가구수	-	-	1,316	1,316	1,31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종합하면, 근로장려세제는 총농식품소비액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대시켰으며, 소비의 질적 개선을 일부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 수혜가구들은 육류 및 소고기 소비량을 줄이거나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육류 소비량 및 소고기 소비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일 소비액을 늘리고 노점 및 무점포에서의 소비를 줄이는 등 질 낮은 소비 비중을 줄이면서 질 높은 소비 비중을 늘리는 효과도 나타났다. 다만, 라면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는 필수재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유동성 제약에 처한 일부 가구들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림 V-5]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추정 결과: 소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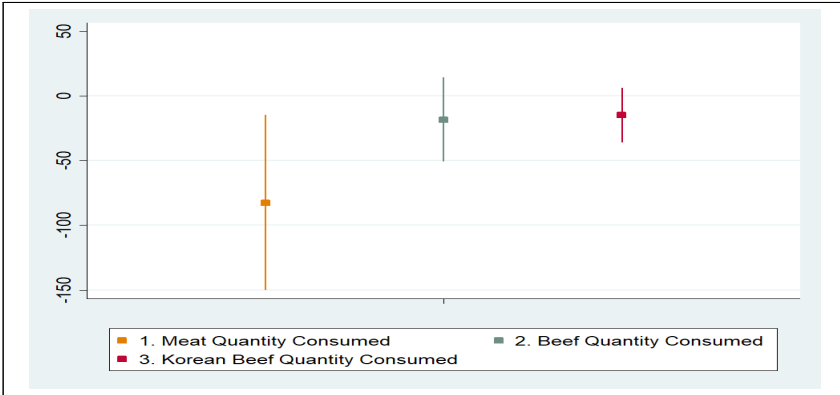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V-6] 근로장려세제의 육류 소비효과 추정 결과: 소비량

(단위: g)



자료: 저자 작성

## 2) 추가 분석 결과<sup>25)</sup>

### 가) 소득 상위 표본을 제외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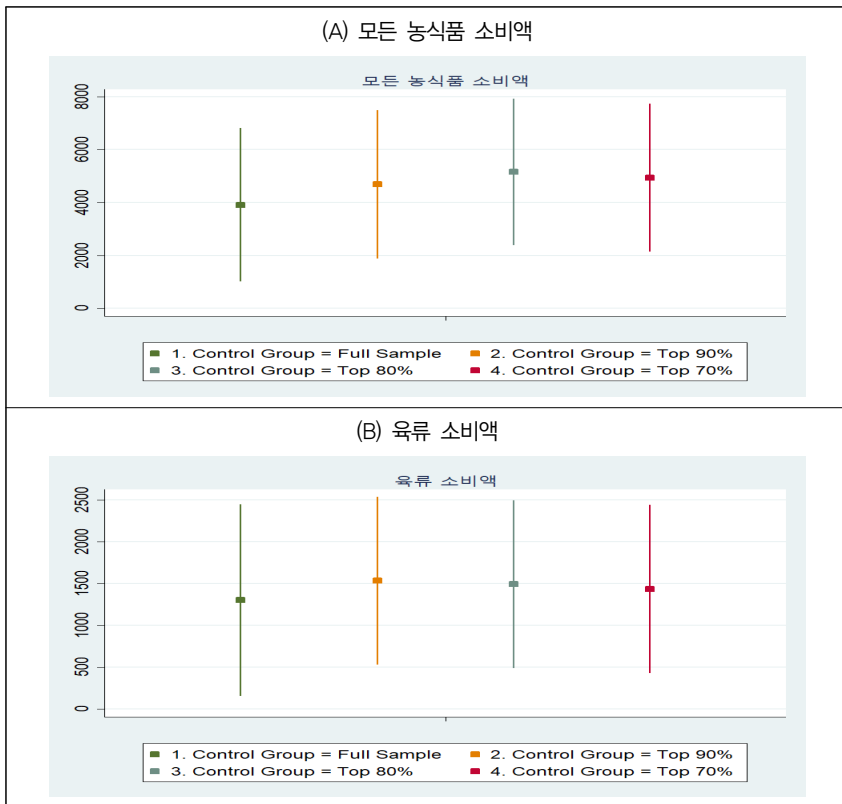
앞 절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모든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활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여기에서는 통제집단 중 소득수준이 높은 일부 표본을 통제집단에서 제외한 후 회귀분석을 재수행한 결과를 소개한다. 각 그래프에서는 주요 관심 설명 변수인 “NEWETC×POST”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를 ① 모든 표본을 활용한 분석(기본 분석), ② 소득 상위 10% 제외한 분석, ③ 소득 상위 20% 제외한 분석, ④ 소득 상위 30% 제외한 분석에 대해 각각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A) 모든 농식품 소비액 그래프의 첫 번째 네모는 기본 분석에서 추정한 “NEWETC×POST” 회귀계수 값, 수직선은 해당 회귀계수에 대한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네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분석에 대한 회귀계수 값 및 신뢰구간을, 세 번째와 네 번째 네모는 각각 소득 상위 20%와 30%를 제외한 경우의 결과를 나타낸다.

25) 추가분석은 앞 절에서 소개한 모든 회귀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나, 지면 관계상 가구 고정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모형(모형 (5))에 대한 결과만 소개한다.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일부 표본을 통제집단에서 제외하여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가구들끼리 비교하는 경우에도 앞서 추정된 결과가 대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농식품 소비액, 육류 소비액 및 소비량, 소고기 소비액, 과일 소비액, 필수재 2 소비액에 대한 효과는 소득 상위 표본을 일부 제외한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추정되었다. 모든 농식품 소비액, 필수재 2 소비액 등에서는 부분표본 분석에서 그 효과가 더욱 커지고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점 및 무점포 소비액이 줄어드는 효과는 소득 상위 20%와 30%를 제외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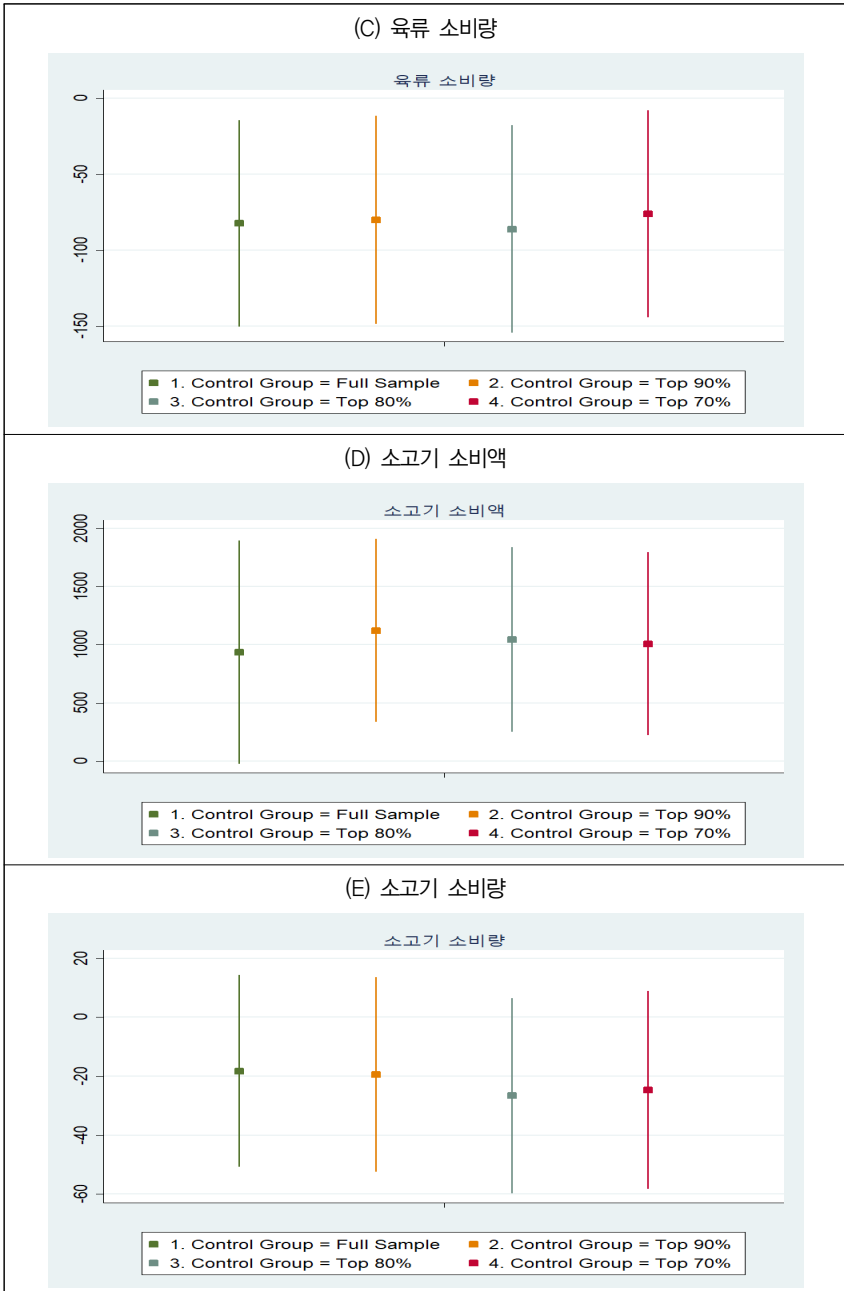
[그림 V-7]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통제집단 재설정

(단위: 원,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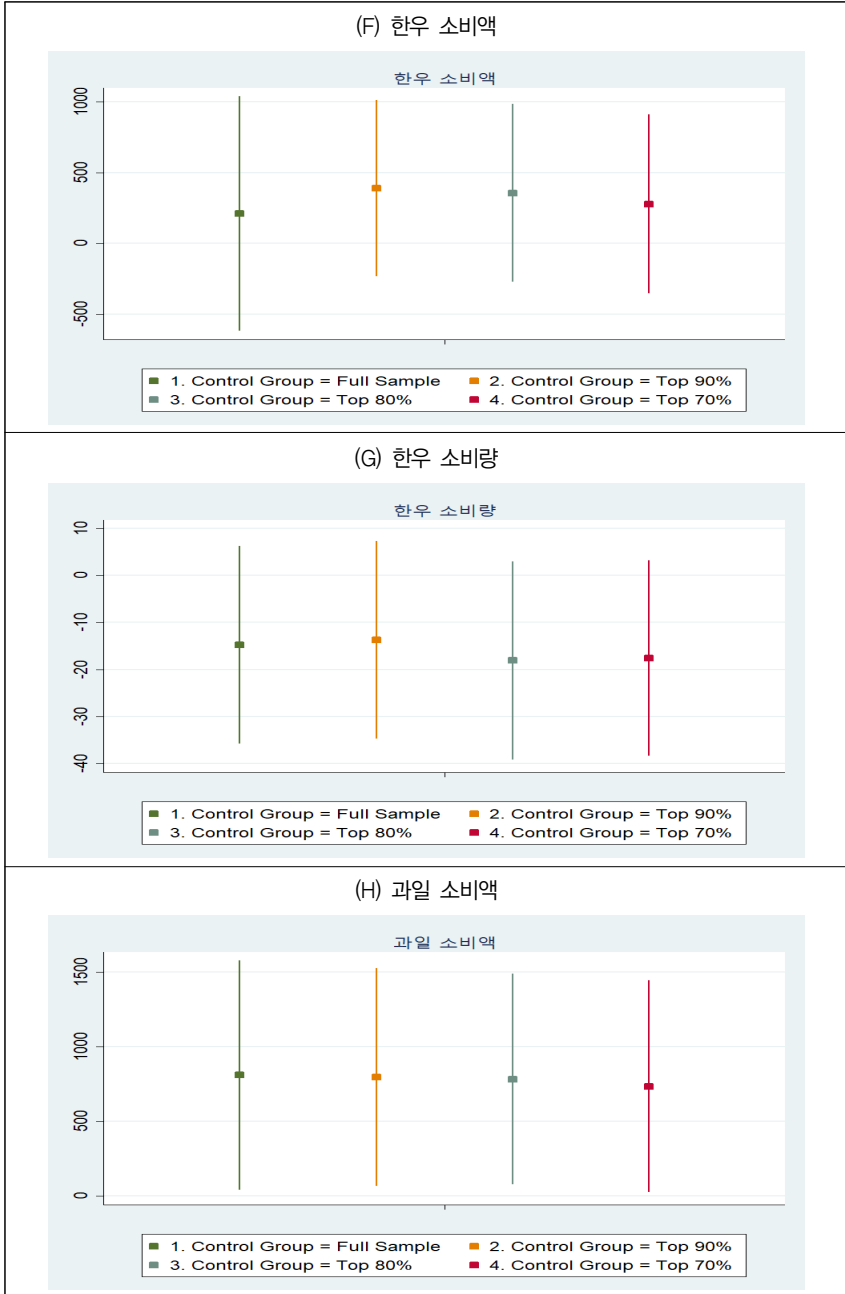
[그림 V-7]의 계속

(단위: 원,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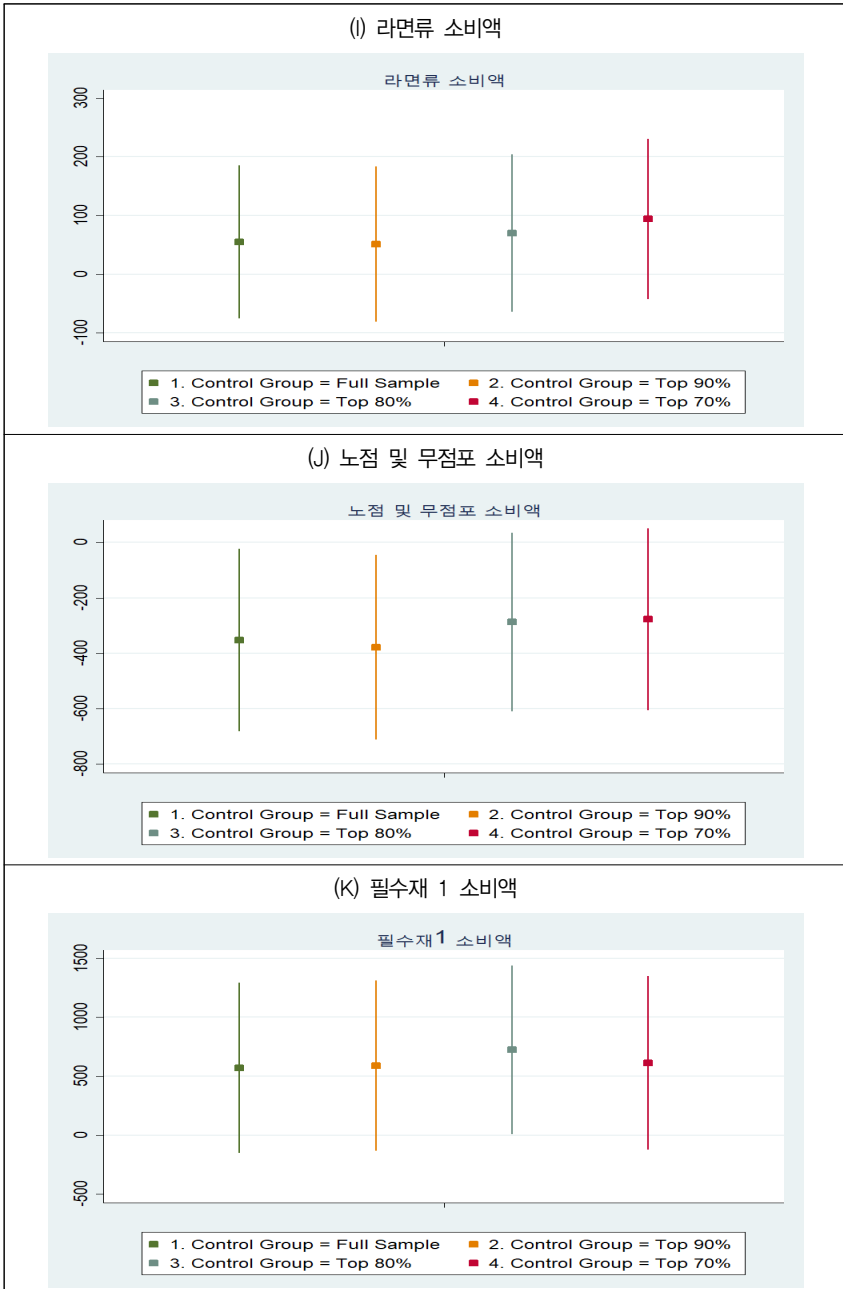
[그림 V-7]의 계속

(단위: 원,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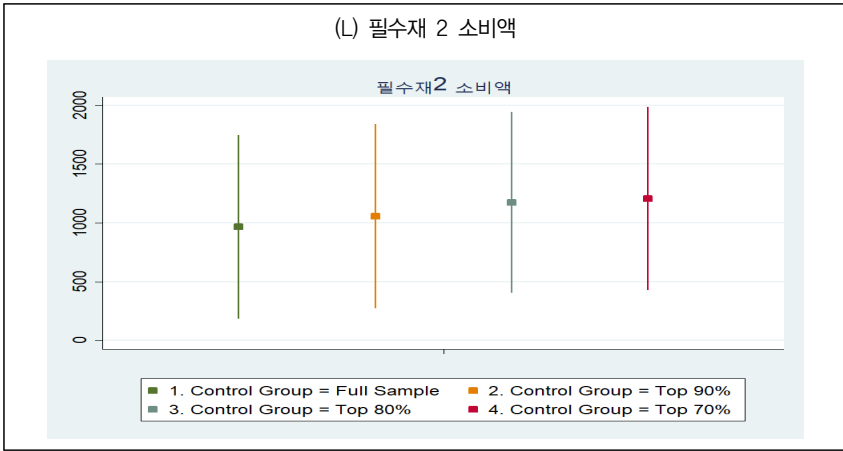
[그림 V-7]의 계속

(단위: 원, g)



[그림 V-7]의 계속

(단위: 원, g)



자료: 저자 작성

나) 영유아 자녀 부양가구에 대한 효과

다음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자녀가 있는 가구로 표본을 한정하였으며, 앞서 고려한 기본 회귀식의 주요 관심 설명변수 “NEWETC × POST”와 영유아 자녀 더미변수의 교차항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효과가 전체 가구의 소비효과와 다른지와 함께, 영유아 자녀 부양 가구의 소비효과가 상이한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 상위 표본을 일부 제외한 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결과를 함께 [그림 V-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 사이에 근로장려세제 소비효과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결과에서는 소비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작아지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모든 농식품 소비액 증대 효과, 육류 소비액 증대 효과의 크기는 커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과일 소비액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소비 증대 효과가 더욱 커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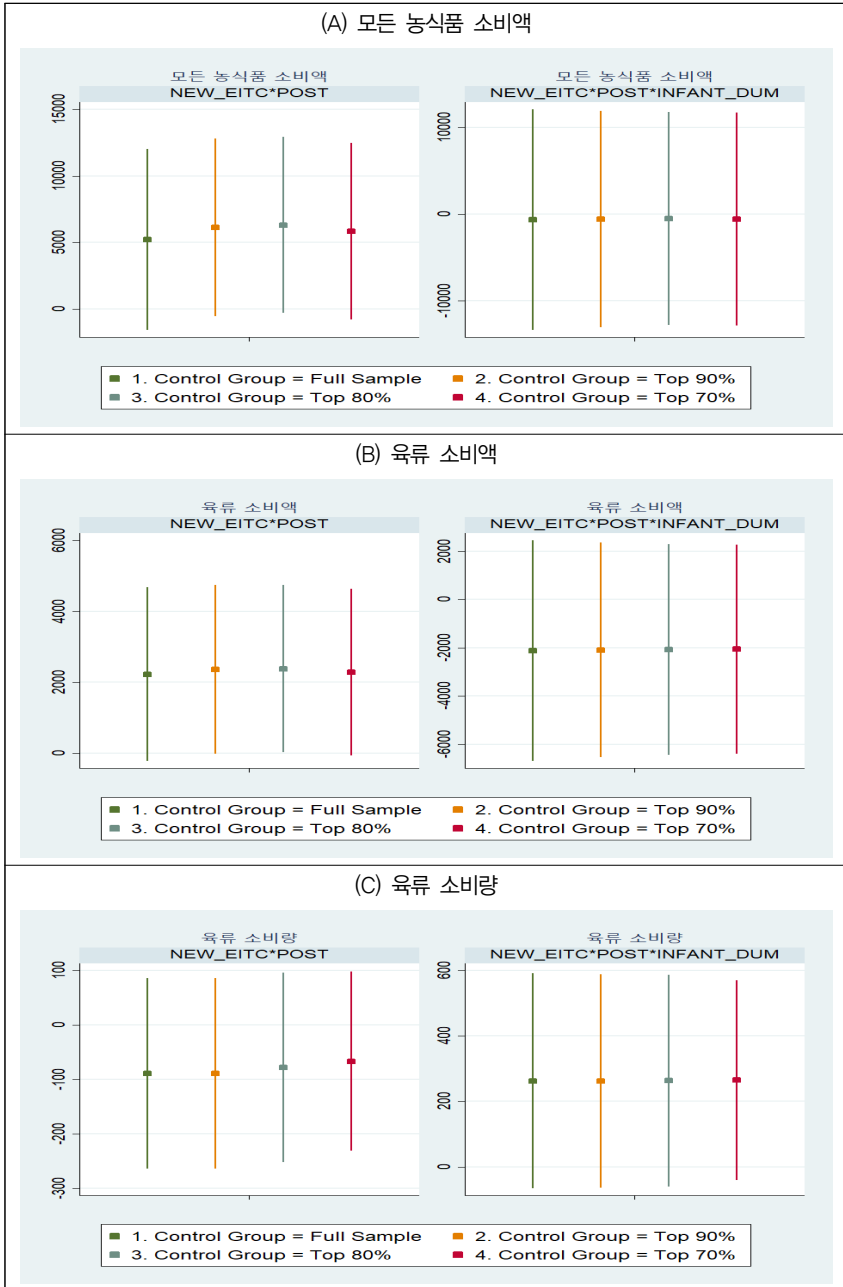
다. 반면 육류 소비액 및 소비량, 소고기 소비액, 노점 및 무점포 소비액 등은 기본분석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정할 경우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영유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효과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대상 모든 제품군에 대한 추정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또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본 분석은 농식품 소비와 관련된 효과만 추정한 것이므로 현금성 지원의 종합적인 소비효과는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뒤 절에서 소개할 가금복 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유배우자 가구의 교육비가 일부 증대되는 효과가 관측되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가 자녀가 있는 가구(또는 유배우자 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 농식품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충분하지 않은 표본 숫자에 부분적으로 기인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본분석에 포함된 전체 1,316가구 중 자녀 있는 가구는 534가구였으며, 이 중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138가구로 표본 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추후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한 후 유사한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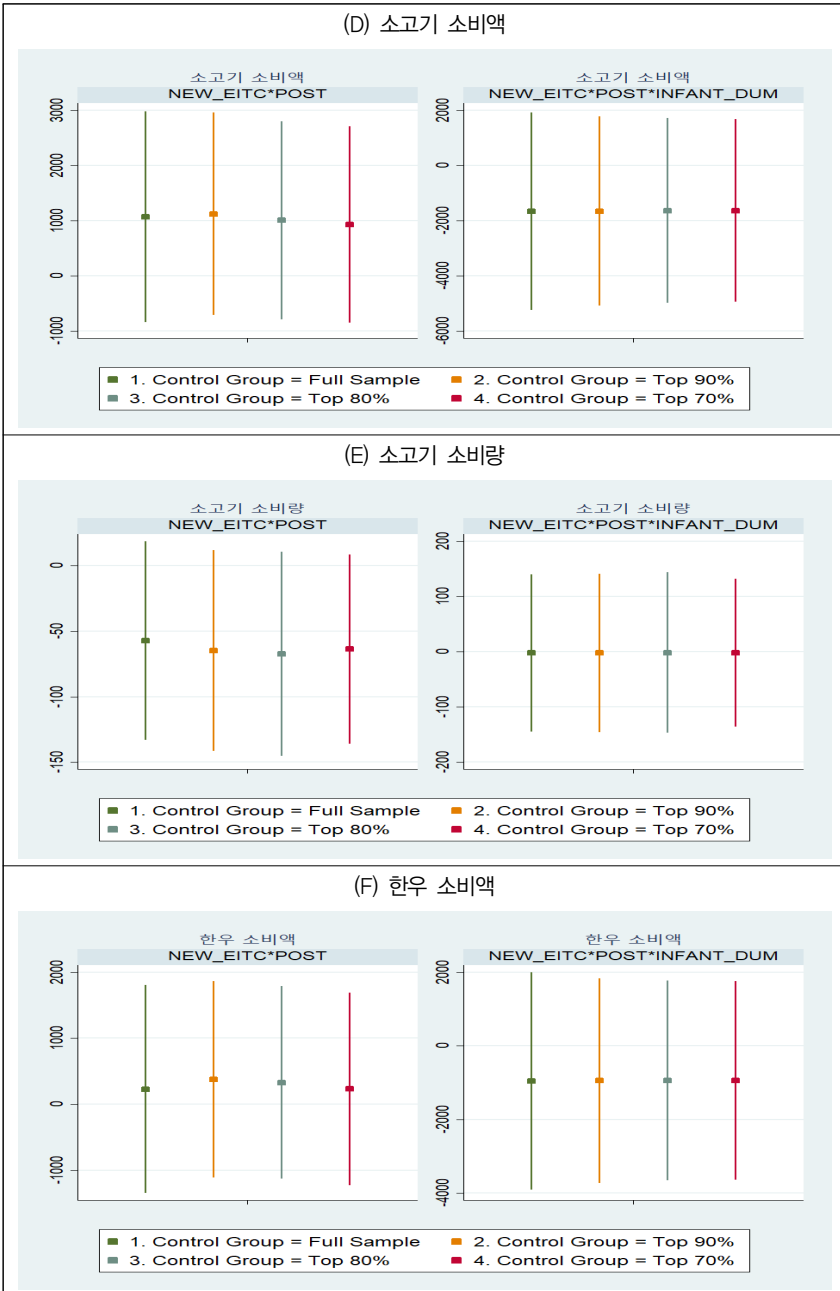
[그림 V-8]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에 대한 추가분석 결과: 자녀 부양 효과

(단위: 원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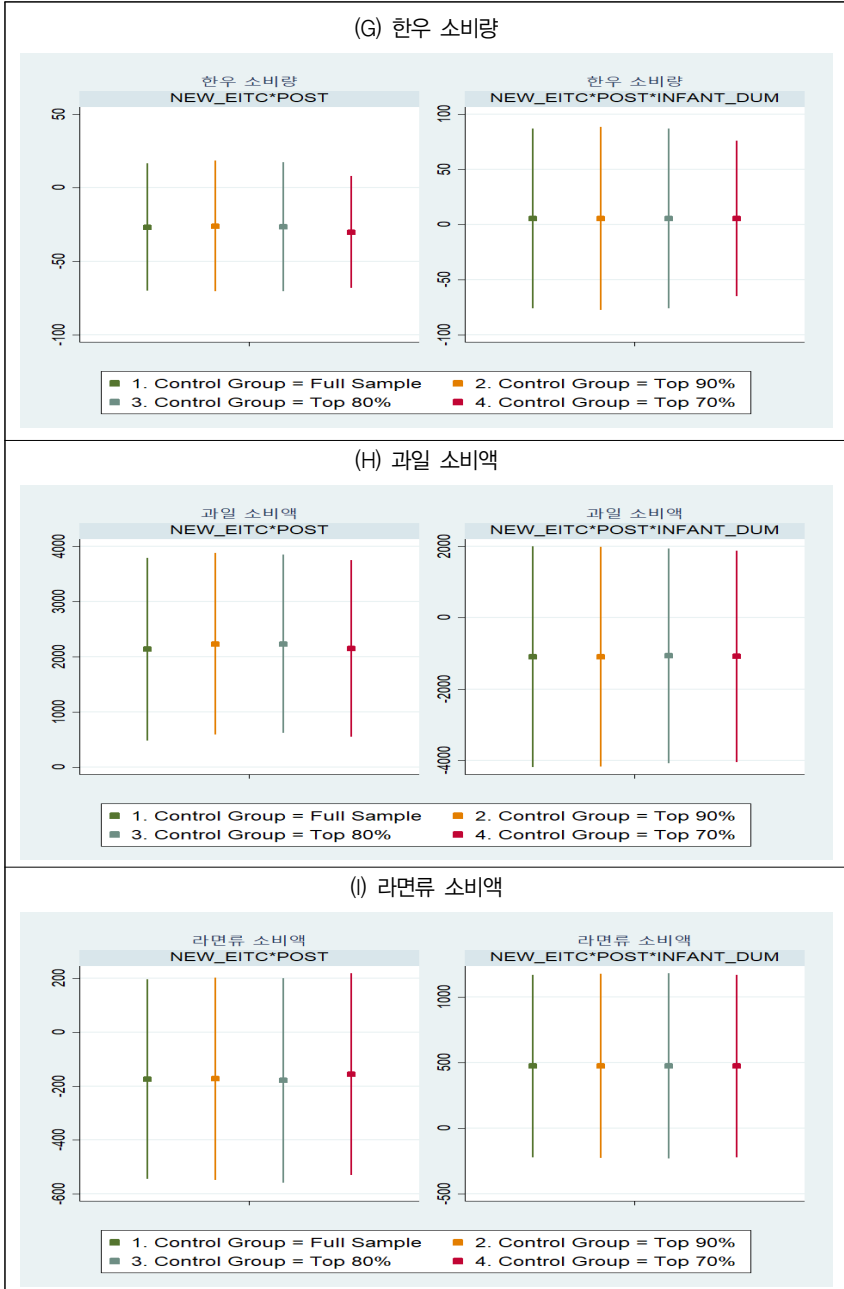
[그림 V-8]의 계속

(단위: 원,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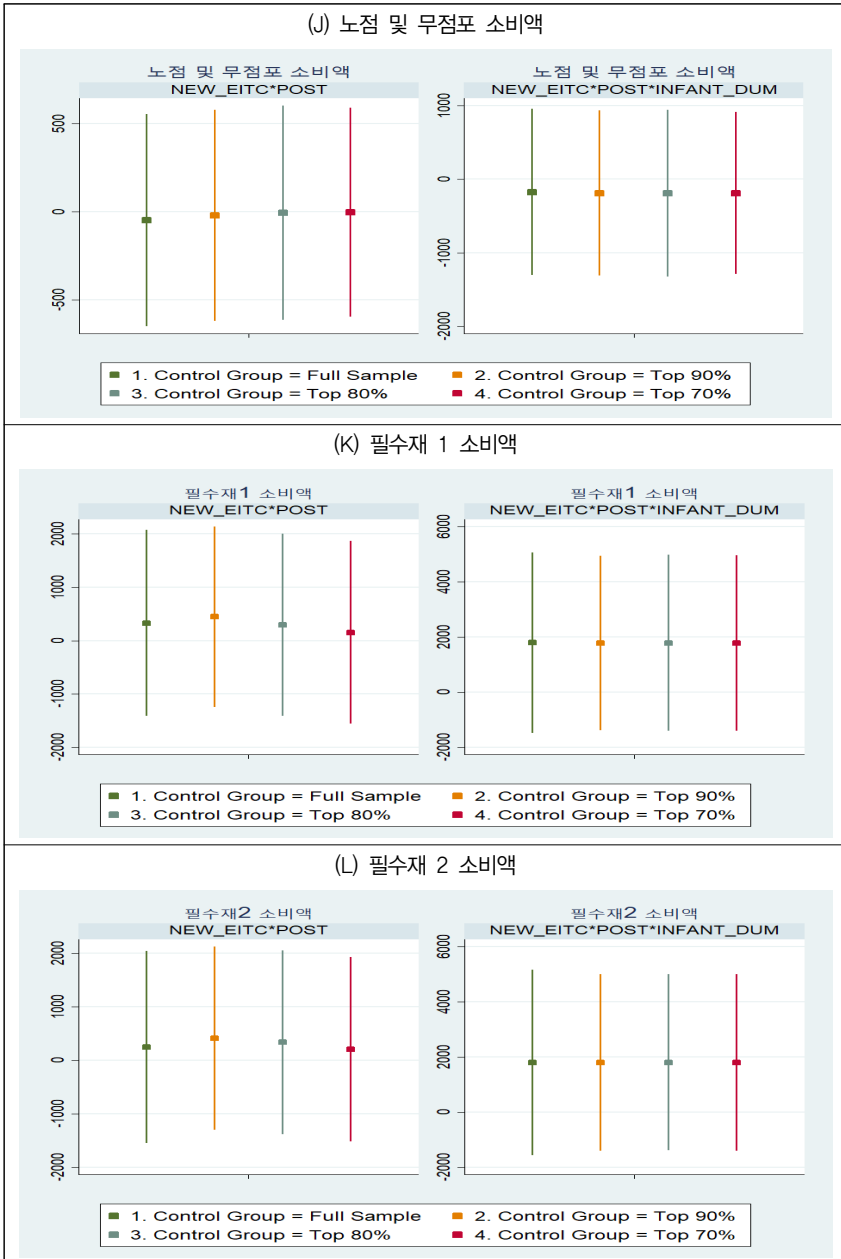
[그림 V-8]의 계속

(단위: 원, g)



[그림 V-8]의 계속

(단위: 원, g)



자료: 저자 작성

## 4.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 가. 분석방법 개관

#### 1) 분석 자료 소개

본 절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조사)를 활용한다. 가금복 조사는 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구의 자산과 소득의 현황을 파악할 때 활용되는 대표적인 조사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가구규모별 가구의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바로 가금복 조사이다.

가금복 조사와 상당히 유사한 자료로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있다. 이 두 조사는 크게는 조사주기, 패널자료 여부, 행정자료의 활용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조사되는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도별로 조사된다. 또한 가계동향조사는 횡단면 자료이지만, 가금복 조사는 패널자료이다. 마지막으로 가계동향조사는 조사자료이지만 가금복 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 분석 시 가금복 조사가 가계동향조사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가금복 조사는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요건을 결정하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 정보는 행정자료로 보완된다는 점에서 처리집단과 통계집단의 식별 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금복 조사에서 근로장려세제 수급 여부와 같은 공적소득 정보 역시 행정자료에서 추출한다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하는 사항이다.

통계청의 가금복 조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공공형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인가형 데이터를 통계청 서버에 접근하여 활용하거나(RAS), 통계청 데이터 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방법(RDC)이 바로 그것이다.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외한 두 가지 방식의 경우 공유되는 데이터는 정보의 공개범위가 동일하다(2017년 기준). 본 연구에 활용된 통계청 가금복 조사는 인가형 데이터(RAS)이다.

가금복 조사에서 행정자료가 보완된 시점은 2017년부터이며 바로 이 점 때문에 2017년 이후의 가금복 조사는 2016년까지의 기존 가금복 조사와 구분하여 별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2016년까지 가금복 조사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응답한 조사자료만 제공되어 있다. 하지만, 2017년 이후의 가금복 조사에는 국세청 과세자료로부터 추출한 소득정보가 제공된다. 2017년의 경우 근로소득의 조사자료와 보완자료(행정자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지만 2018년 이후 가금복 조사에서는 보완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가금복 조사는 이와 유사하게 다른 종류의 소득이나 자산도 행정자료로 보완하고 있다.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 문항보다 응답자의 과소보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16년 조사소득과 2017년 이후의 보완된 소득 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뛰어넘는 간극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2017년 이후의 가금복 조사를 활용한다. 현재는 2021년 12월에 공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까지 제공되는데, 2017~2021년 가금복 조사에 본고의 분석대상이 되는 2018년과 2019년의 소비 및 가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2017년 이후의 가금복 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분석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 2) 이중차이법 모형

앞서 살펴본 KCB 자료나 농식품패널 조사 자료에 기반한 분석과 동일하게 가금복 조사에 기반한 분석도 이중차이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식 그 이전의 모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자 한다.

$$y_{jt} = \beta^{EITC} I(j \in T) I(t = 2019) + \mu_t + \lambda_j + \sum_{k=1}^K \beta^k x_{jt} + \epsilon_{jt}$$

26) 여기에는 2020년 소득 및 소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2017~2021년 가금복 조사에서는 2016~2020년 소득 및 소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위의 식에서  $\beta^{EITC}$ 는 2018년 귀속연도에 대한 EITC 지급충격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 모형에서  $t$ 는 KCB 자료에서는 월별 주기였는데, 가금복 조사에서는 연간 주기를 갖는 시점 변수를 나타낸다.  $I(j \in T)$ 는 가구  $j$ 가 처리집단에 속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함수이며,  $I(t = 2019)$ 는 2019년 이후의 연간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함수이다. 2020년 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연도 특수효과가 존재할 수 있어 본 분석에서 배제한다.<sup>27)</sup> 이에 따라,  $\beta^{EITC}$ 는 처리집단의 2019년 전후의 변화분에서 통제집단의 2019년 전후의 변화분을 제한 종속 변수의 차분값을 의미할 것이다.  $\mu_t$ 는 월별 고정효과를,  $\lambda_j$ 는 가구별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x_{jt}$ 는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가구  $j$ 의 특질변수를 의미하고,  $\epsilon_{jt}$ 는 가구  $j$ , 시점  $t$ 의 특정성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발현되는 임의변수를 의미한다.

### 3) 처리집단의 식별

처리집단은 2019년에 근로장려세제를 실제로 수급한 가구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만약,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를 분석하는 경우, 이러한 정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요건 중의 하나인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소득요건은 결국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의 발생, 즉 노동공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근로장려세제의 ‘수급 여부’를 정책변수로 상정하고 ‘노동공급’변수를 종속변수로 상정하는 처리효과 분석에서는 정책효과가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분석 대상이 가구의 노동공급 변수가 아닌 (수급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소비 변수인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8년 귀속연도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충격을 받은 대상을 정확하게 한정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처리집단

27)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가구 소비가 그 이전 시점과 그 이후 시점 간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면, 2020년 귀속연도의 소비자료를 제공하는 2021년 가금복 자료를 추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도 남겨두고, 본고에서는 처치 후 분석기간(after-treatment period)을 2019년 단일 연도로 한정한다.

을 이상적으로 식별하는 셈이다. 또한, 가금복 조사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수급 여부에 대한 행정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의 실제 제도를 이용하여 각 가구의 수급 여부를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당 정보를 직접 활용하였다.

#### 4) 통제집단의 식별

통제집단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수급 요건을 만족하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가구로 상정한다.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산요건과 더불어, 먼저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유형을 상정한 후 각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EITC 수급요건을 가금복 조사상에서는 만족하지만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은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정의하였다.

가금복 조사상에서는 EITC 수급요건을 만족하지만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은 가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금복 조사에서 제시된 변수 값이 유효한 시점과 국세청에서 근로장려세제 수급자격을 판별하기 위하여 검증한 관련 변수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의 자산 가격은 조사 시점 당시 3월 기준으로 정보가 수집되지만, 근로장려세제 수급요건을 판별할 때의 자산은 귀속연도의 6월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의 구성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세제 수급조건 만족 여부를 검토할 때는 가구의 구성 정보는 귀속연도 12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가금복 조사의 경우 3월 기준의 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설문조사에 따른 가구의 개념과 실제 근로장려세제 수급 자격 확인 차원에서 파악한 가구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측정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금복 조사 자료상 근로장려세제 수급 조건을 만족했다면 이들 가구는 유사한 가구라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오차로 인하여 실제 수급 결과가 다르다면, 이는 외생적인 정책 충격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산 이외의 다른 요건은 실제 수급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두 가구에 대해서 다음의 상황을 가

정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가구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의 자산요건을 만족하고, 2018년 6월 기준으로 3억원 미만의 자산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다른 가구는 두 개의 시점 모두에서 자산요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두 번째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게 되어 소득충격을 받게 되는 반면 첫 번째 가구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통제집단은 처리집단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충격을 받지 않은 집단이며, 이는 이중차이법의 통제집단 요건을 개념적으로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 나. 분석 결과<sup>29)</sup>

〈표 V-21〉에서는 전체 가구 유형을 모두 포함했을 때의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해당 표의 첫 번째 패널 모형에서는 소비금액의 절댓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두 번째 패널 모형에서는 소비금액의 절댓값에 1을 더한 값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모든 회귀식은 연도 고정효과, 가구의 고정효과, 가구주 나이, 가구원수, EITC 제도상의 가구유형 관련 터미변수 등이 통제되었다.

소비금액의 절댓값을 고려하면, 전체 소비금액, 식료품비, 교육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세제의 지급충격을 받은 가구는 전체 소비금액이 통제집단에 비해 34.8만원가량 늘었고, 식료품비는 12.6만원, 교육비는 9.5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로그값을 취하는 경우(〈표 V-21〉의 두 번째 패널)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강건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배우자 여부에 따라 표본을 구분했을 때 무배우자 표본에서는 식료품비와 통신비 지출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로그값을 취하는 경우는 사라져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배우자가 존재하

28) 단, 이렇게 개념적으로 통제집단의 요건을 만족하지만, 그 안에서도 공통추세 가정이 들어맞는 가구들 중심으로 통제집단을 다시 필터링을 하여 이중차이법을 검토하는 등, 강건성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29)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IV-4〉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자료 기초통계량에 제시되어 있다.

는 경우로 표본을 한정할 때, 교육비 지출이 16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로그값을 취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효과: 전체 표본

(단위: 만원, 비율, 명)

구분	전체 소비	식료	주거	교육	의료	교통	통신	가사
EITC	34.889*	12.630*	8.536	9.502**	-8.642	3.169	-0.133	3.097
$R^2$	0.027	0.024	0.005	0.011	0.006	0.008	0.009	0.021
표본	4,570	4,570	4,570	4,570	4,570	4,570	4,570	4,570
구분	전체 소비 로그값	식료 로그값	주거 로그값	교육 로그값	의료 로그값	교통 로그값	통신 로그값	가사 로그값
EITC	-0.01	0.005	-0.011	0.034	0.005	0.025	0.001	0.116
$R^2$	0.032	0.029	0.005	0.005	0.014	0.011	0.003	0.011
표본	4,570	4,570	4,570	4,570	4,570	4,570	4,570	4,570

주: 1) 임계 소득=2천만원, 자산=2억원, 전체 표본

2)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V-22〉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효과: 무배우자 표본

(단위: 만원, 비율, 명)

구분	전체 소비	식료	주거	교육	의료	교통	통신	가사
EITC	25.775	16.097*	0.304	3.469	-10.527	4.838	3.644*	2.805
$R^2$	0.027	0.032	0.007	0.009	0.006	0.016	0.015	0.016
표본	3,023	3,023	3,023	3,023	3,023	3,023	3,023	3,023
구분	전체 소비 로그값	식료 로그값	주거 로그값	교육 로그값	의료 로그값	교통 로그값	통신 로그값	가사 로그값
EITC	-0.015	0.026	-0.056	-0.011	-0.018	0.034	0.044	0.194*
$R^2$	0.03	0.03	0.006	0.037	0.014	0.017	0.005	0.015
표본	3,023	3,023	3,023	3,023	3,023	3,023	3,023	3,023

주: 1) 임계 소득=2천만원, 자산=2억원, 전체 표본

2)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V-23〉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비효과: 유배우자 표본

(단위: 만원, 비율, 명)

구분	전체 소비	식료	주거	교육	의료	교통	통신	가사
EITC	25,203	2,822	20,643	16,142**	-15,781	0,989	-8,426*	0,24
$R^2$	0,045	0,025	0,01	0,074	0,006	0	0,011	0,03
표본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구분	전체 소비 로그값	식료 로그값	주거 로그값	교육 로그값	의료 로그값	교통 로그값	통신 로그값	가사 로그값
EITC	-0.018	-0.036	0.055	0.123**	-0.008	-0.01	-0.097*	-0.122
$R^2$	0,048	0,029	0,01	0,045	0,006	0,004	0,007	0,019
표본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1,547

주: 1) 임계 소득=2천만원, 자산=2억원, 전체 표본

2) \*\*\*는  $p < 0.01$ , \*\*는  $p < 0.05$ , \*는  $p < 0.1$ 을 의미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상기 분석 결과는 처리집단을 ‘잠재적 수급가구 내 실제 수급가구’로, 통제집단을 ‘잠재적 수급가구 내 실제 비수급가구’로 정의한 후 제시된 것이다. 이 경우 소득이나 자산의 제한을 별도로 상정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일종의 하위표본(subsample) 분석 방법으로서 자산과 소득수준별로 상한을 두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표본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편의상, 소비의 로그값 결과는 생략하고 수준값(level) 결과만 보고하였다.

[그림 V-9]-[그림 V-11]에서는 자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전체 표본, 무배우자 표본, 유배우자 표본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그래프에서의 category 1~8은 순서대로 전체 소비금액,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가사서비스 비용을 의미한다. 개별 그래프 내의 각 표식은 EITC의 효과를 반영하는 회귀계수(coefficient)이고 각 표식과 관련된 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또한 개별 그래프에서 제시된 선은 0을 의미하며, 95% 신뢰구간이 0을 벗어나는 경우 해당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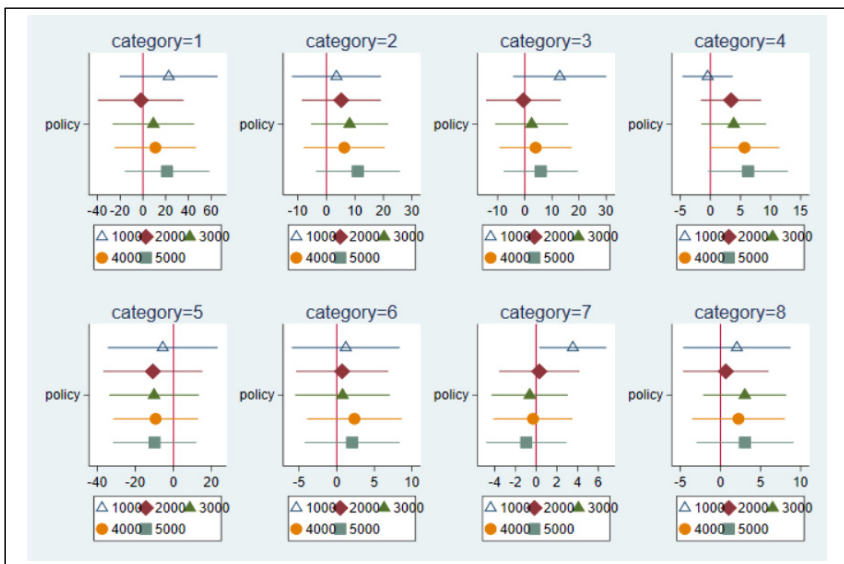
[그림 V-9]에 따르면 2억원 미만 자산을 보유한 전체 표본에 대하여, 1천

만원 미만 연간소득으로 상한을 설정한 경우에만 통신비 분야에 유의미한 양(+)의 소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수준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category)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10]은 [그림 V-9]와 동일하되 무배우자를 대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1천만~3천만원으로 소득을 한정하는 하위표본에 대하여 통신비 측면의 소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배우자 표본에 대한 결과([그림 V-11])에 따르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소득을 제한했을 때 모두 교육비에서 유의미한 양의 결과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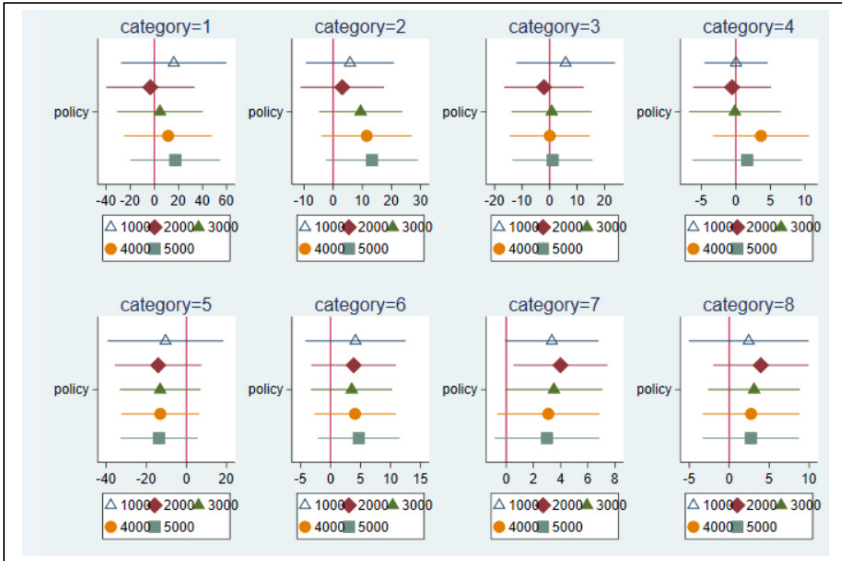
[그림 V-12]~[그림 V-14]에서는 1억 5천만원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하여 유사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예컨대, 연간 소득을 2천만원으로 제한했을 때, 무배우자 가구는 통신분야 소비를 늘리고, 유배우자 가구는 교육분야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V-9]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전체 표본(자산=2억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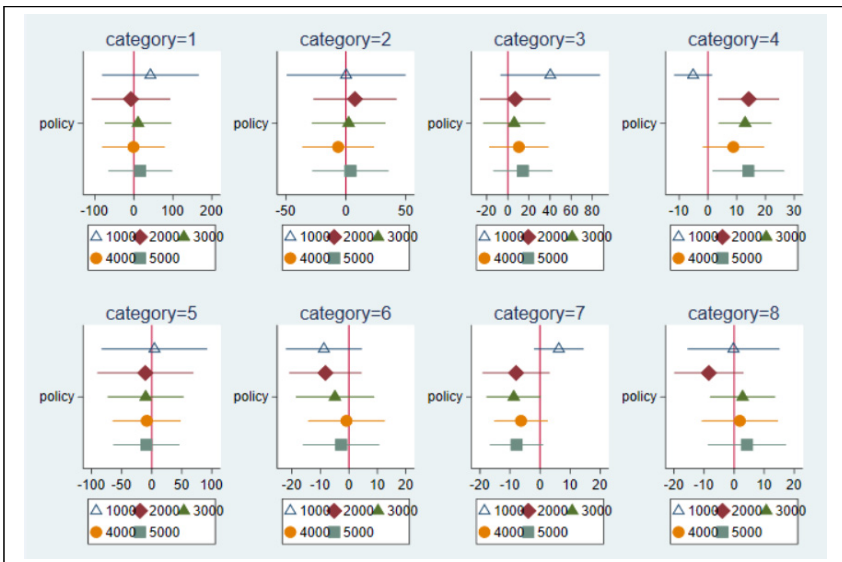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10]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무배우자 표본(자산=2억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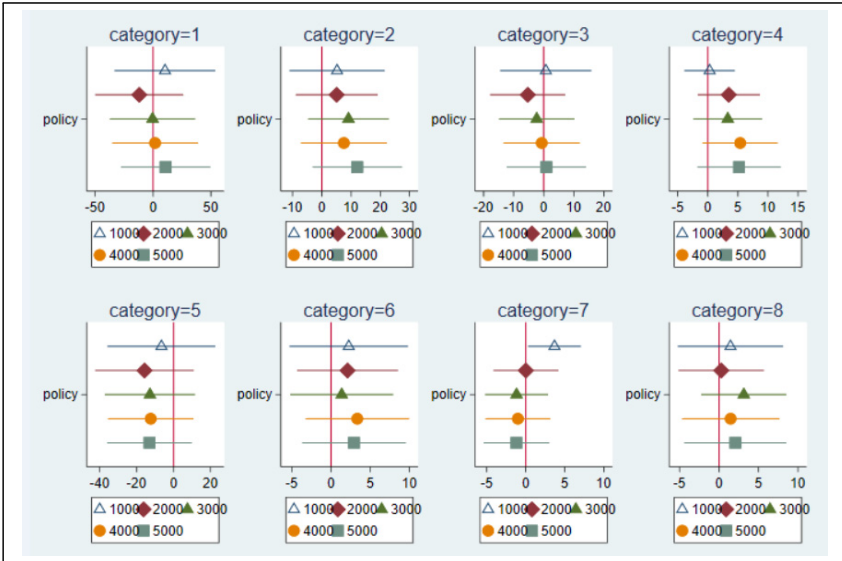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11]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유배우자 표본(자산=2억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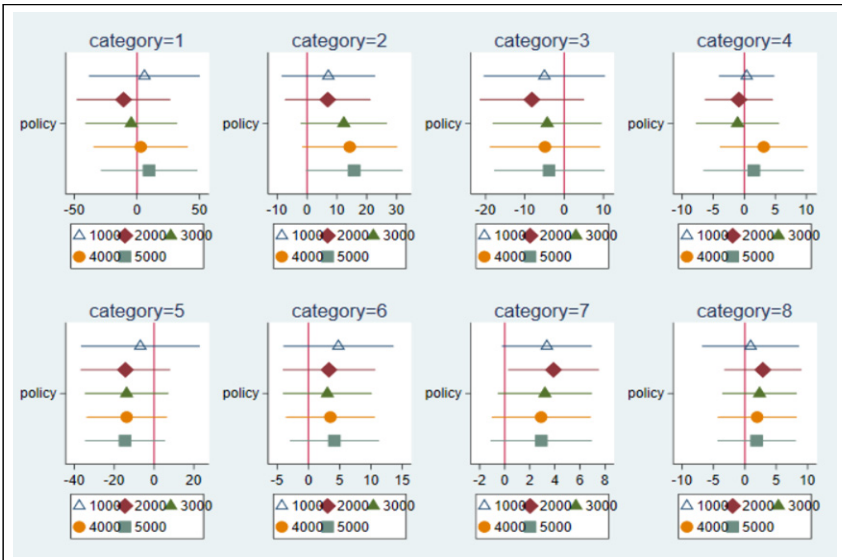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12]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전체 표본(자산=1억 5천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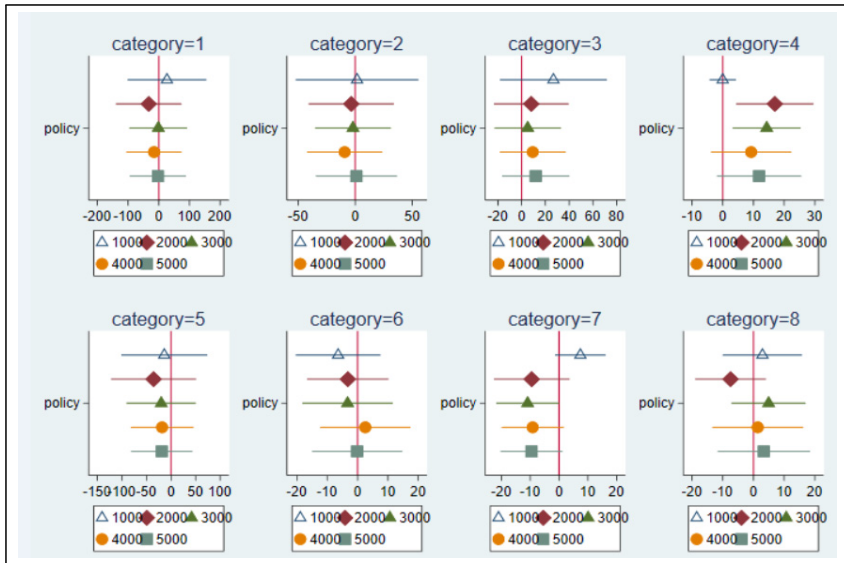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13]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무배우자 표본(자산=1억 5천만원 미만)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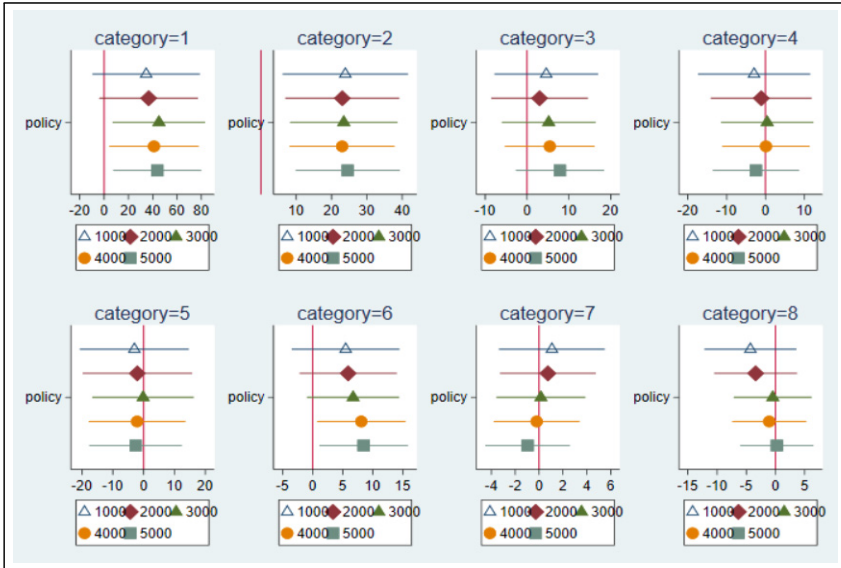
[그림 V-14]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 유배우자 표본(자산=1억 5천만원 미만)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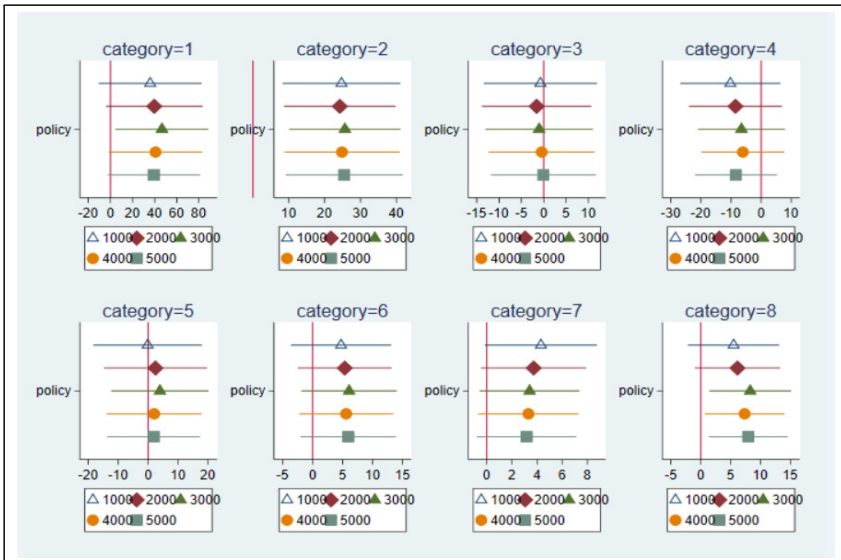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 결과는 잠재적 수급가구 내 실제수급가구를 처리집단으로 상정하고, 잠재적 수급가구 내 비수급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측정오차의 문제가 상당히 존재한다면 통제집단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리집단을 실제 수급가구로 상정하고, 통제집단의 경우 소득과 자산 상한선을 두어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중차이법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자산 상한을 2억원으로 두는 경우 무배우자 표본에서는 식료품 구매가 늘어나고, 가사서비스 소비가(3천만원~5천만원 상한 설정 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배우자의 소비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V-15]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전체 표본(자산=2억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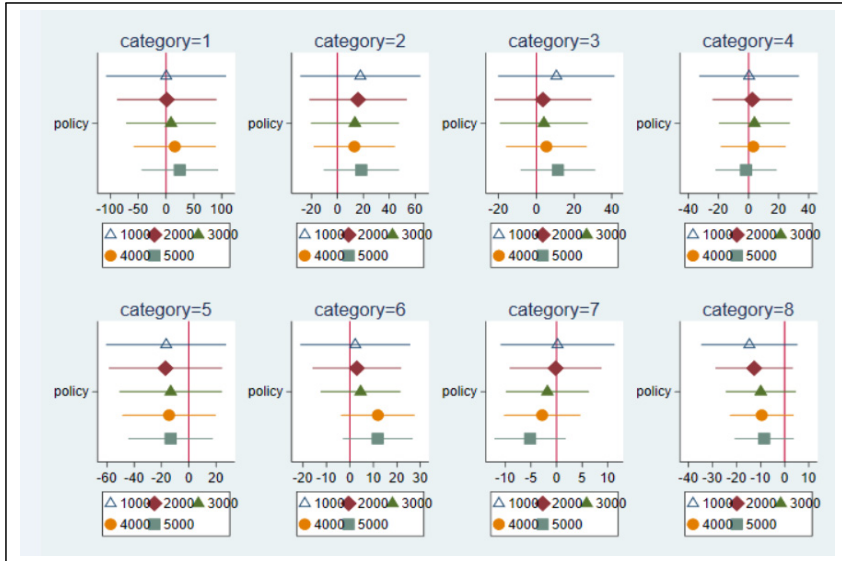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16]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무배우자 표본(자산=2억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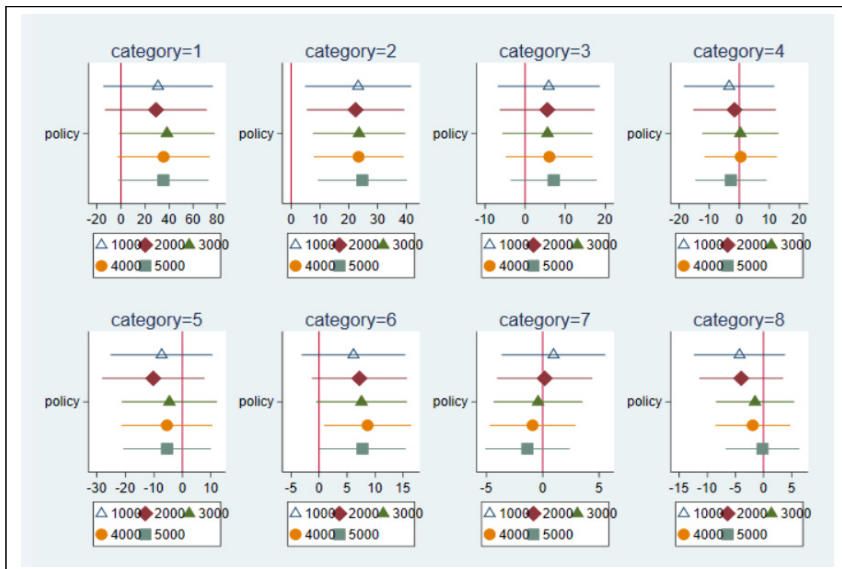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17]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유배우자 표본(자산=2억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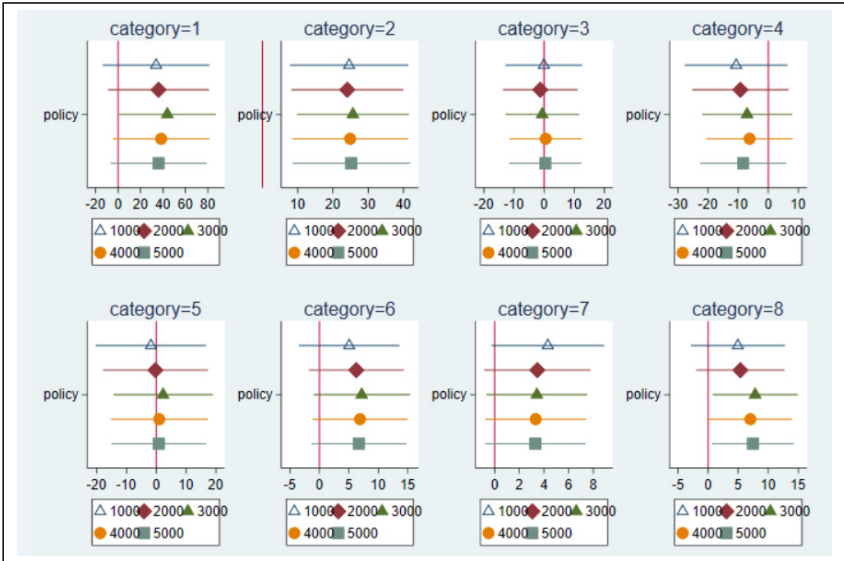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18]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전체 표본(자산=1억 5천만원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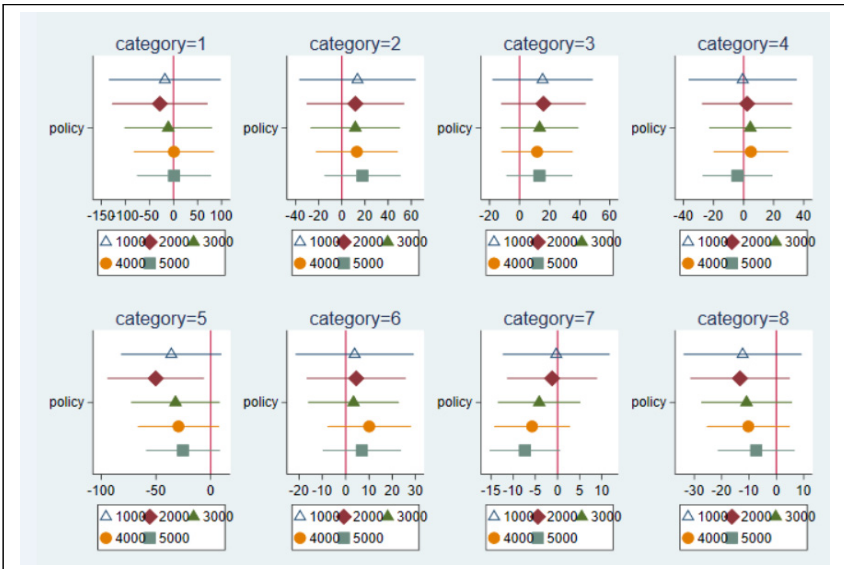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19]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무배우자 표본(자산=1억 5천만원 미만)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림 V-20] 소득 구간에 따른 소비효과(모형 2): 유배우자 표본(자산=1억 5천만원 미만)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5. 소결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CB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근로장려세제 지급이 가구의 소비금액 및 대출상환액 증가, 신규 신용대출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변수의 절댓값 혹은 로그값을 설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강건하게 나타났다. 특히 소비증대와 관련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수혜가구들은 체크카드 사용액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패턴이 추정되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인 근로빈곤가구 중 신용도가 높지 않은 가구의 비중이 높아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상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다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대출상환금액 증가 효과는 소비 증가분의 약 20%로 나타났다. 즉, 평균적으로 지원금의 대부분은 소비에 사용하고 일부는 대출상환에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이후 전체 신규 신용대출금액은 감소하지만, 전체 신규 대출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근로빈곤가구의 신용대출이 일반적인 소비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인 경우가 많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이 감소한 결과는 수혜가구들의 소비수준을 확대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체크카드 사용액 대비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보다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농식품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이 농식품 소비 총량을 증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추가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수급가구 소비의 질적 수준을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육류 소비액과 소비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소비액은 증가하면서 소비량은 감소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수급가구들이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가격이 높은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패턴이 관측된 것이다. 또한 수급가구들은 과일 소비액을 유의미하

게 증가시킨 반면 라면류 소비액은 유의미하게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품군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들이 노점 및 무점포에서의 소비액을 유의미하게 줄이는 패턴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수급가구의 소비가 질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상술한 결과들 모두 자녀(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더 강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급복 자료를 활용해서는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잠재적 근로장려세제 수급집단 중에서 실제로 수급한 경우를 처리집단으로 상정하고, 잠재적 근로장려세제 수급집단 중에서 실제로 수급하지 않은 경우를 통제집단으로 상정하였다. 둘째, 근로장려세제를 실제로 수급한 경우를 처리집단으로 상정하고, 근로장려세제를 수급하지 않으면서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임계수준 이하에 속하는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상정하였다. 잠재적 수급가구라는 테두리 내에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을 검토하는 경우 평균적인 소득이 1,500만원 이하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반면, 그러한 테두리를 추가로 제한하지 않고 실제 근로장려세제 수급가구를 처리집단으로 상정하는 경우 평균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첫 번째 방식의 경우 2018년 귀속연도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지급받은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리집단의 소비효과를 포착하고, 두 번째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처리집단의 소비효과를 포착한다고 할 수 있다.

소비의 절댓값을 종속변수로 상정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 처리집단(첫 번째 분석방법)의 경우 전체표본에서는 식료품과 교육비에서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나타났다. 배우자 여부에 따라 표본을 분리하면, 무배우자 표본에서는 식료품과 통신비에서 유의미한 양의 소비효과가 나타났으며, 유배우자 표본의 경우 교육비 지출은 늘어나지만 통신비 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집단(두 번째 분석방법)의 무배우자 표본의 경우 식료품과 가사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양의 소비효과가 나타났고, 유배우자 표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무배우자 표본의 경우 식료품, 통신, 가사서비

스 측면에서 소비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통신기기는 오늘날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재인 점을 고려할 때, 통신비가 증가한 추정 결과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무배우자 가구가 기존에는 이러한 필수재를 충분히 소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사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가사나 돌봄 등의 서비스를 의미할 수 있는데, 무배우자 가구의 가사서비스 소비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독거노인 가구 등을 다수 포함하는 무배우자 가구의 경우 그러한 서비스에의 수요가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유배우자 표본 분석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들의 교육비 지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

본고에서는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을 외생적 소득충격으로 이용하여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이 근로빈곤가구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CB 신용카드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부의 현금성 지원을 받은 근로빈곤가구가 소비의 양적, 질적 패턴을 유의미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구 소비 총량(총소비액, 총농식품소비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식료품, 통신비, 가사서비스, 교육비 등 특정 분야의 소비도 증가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또한 KCB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수급가구가 전체 카드소비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대출상환금액을 통계적으로 늘리고, 신규 신용대출금액은 줄이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세 가지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일관되게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은 향후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현금성 지원 정책 설계 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소비 진작 목적의 정책에서는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의한 효과가 강조되어 왔으나, 비교적 저소득 계층으로 볼 수 있는 근로빈곤가구에서도 현금 지원에 따른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관측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이 특정 기한을 두고 소비하지 않으면 지원 금액이 사라지는 형태가 아닌 활용처 및 기한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근로장려금에서 유의미한 소비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근로빈곤가구의 소비가 제약되었던 분야를 식별함으로써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정책 설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

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가구는 농식품(식료품), 통신비, 가사서비스,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농식품의 경우 질 높은 육류 소비에 대한 선호가 확인되었으며, 과일이나 일부 필수재에 대한 소비수준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 이후 제품의 품질 및 위생 상태 측면에서 질이 낮은 재화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점 및 무점포에서의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자녀 유무 또는 배우자 유무를 기준으로 한 이질성 분석을 통해 가구 특성별로 유동성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를 추가로 식별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상재(normal goods)와 열등재(inferior goods)<sup>30)</sup>를 경험적으로 식별함과 동시에 그 인식이 가구 특성에 따라 이질적으로 변화하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만약 정부가 본 연구에서 식별한 ‘현금지급 이후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제품군’의 소비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라면 행정비용이 적고 소비자의 후생이 가장 크게 개선될 수 있는 현금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현금지급 이후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제품군’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현금지원보다는 현물지원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다만, 현금지원 이후 해당 제품군의 소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제품군 소비가 가구 후생에 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책 목표가 적절히 설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현금지원으로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을 우려하여 현물지원을 대안적으로 고려하는 경우에도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정부가 근로빈곤가구에 바우처 형식으로 현물 지원할 때 통신비, 육류, 과일 등의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효용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30)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또 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수혜가구 소비의 질적 수준을 유의미하게 개선한다는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정책을 평가할 때 장기적 재정 부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과일 및 채소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에너지 밀도가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 생리활성물질(Phytochemical)이 풍부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적(권정현 외, 2009)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Braga et al.(2020)은 자녀의 유년기에 자녀가 속한 가구가 근로장려세제 수급 요건을 만족했을 경우 자녀가 22~27세 시기에 비만이 될 확률을 낮추고 스스로 보고한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같이 현금성 지원 수혜 가구가 유의미하게 과일류 소비를 증대시키고, 노점 및 무점포 소비를 감소시킨다면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장기적으로 정부 지출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소비 효과가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잠재적인 장기 영향이 존재한다면 근로빈곤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와 비교해볼 때 근로장려세제의 소비 효과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세제의 노동 공급 효과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노동참여 또는 노동 시간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에 의해 노동 공급 행태가 변화하려면 수급자 또는 잠재적 수급자들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근로장려세제의 설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잠재적) 수급자의 비중이 높다면 기대했던 노동 공급 행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근로장려세제에 의한 소비효과는 수급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지 않은 특징이 있다.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제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이 계좌로 지급되면 이에 대한 활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구소득 지원에 따른 행태변화는 제도 설계에 대한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이들 가구 소비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외생적 제도 변화가 있었던 2019년 지급분의 소비효과만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에 의한 노동공급 행태 및 소득 변화가 소비에 미친 영향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주 목적은 수혜가구들의 근로유인을 증대하고,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소비수준의 개선은 다소 부차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함에 있어 간과될 수 있는 가구 소비 효과가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때 제도 본연의 목적인 근로유인 증대 및 소득 재분배 개선 외에도 가구의 소비를 개선함으로써 수혜가구들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효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세법개정안」, 각 연도.
- 권정현·심재은·박민경·백희영, 「만성질환 예방 측면에서 본 30세 이상 한국 성인의 과일과 채소 섭취 평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영양학지』, 제42권 제2호, 2009, pp. 146~157.
- 권홍진·박춘성·오탈록, 『팬데믹 하에서의 재정정책 효과: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 진작 효과 추정』, 한국금융연구원, 2021.
-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안」, 2022. 8.  
\_\_\_\_\_,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2018.  
\_\_\_\_\_,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설명」, 2013.
- 김대용·서정원, 「최근 소비성향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제74권 제2호, 2020, pp. 16~39.
- 김문정·김빛마로, 『2019년 확대·개편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김미루·오윤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포럼』, 제281호, 2020, pp. 1~8.
- 김태우·우석진·안종길·빈기범, 「근로장려세제가 수혜가구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유라시아연구』, 제13권 제1호, 2016, pp. 85~109.
- 남재현·이래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8권 제1호, 2021, pp. 63~95.
- 노용환, 「한계소비성향 추정을 통한 이천지출의 소비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41권 제2호, 2021, pp. 292~308.

- 농촌진흥청,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각 연도.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22.
- \_\_\_\_\_,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2020. 3. 5.
- \_\_\_\_\_,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보도자료, 2019. 1. 11.
- \_\_\_\_\_,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2월에 사전 신청하세요」, 보도자료, 2013. 1. 25.
- \_\_\_\_\_, 「2011년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도자료, 2010. 12. 30.
- \_\_\_\_\_, 「7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0~1세)에게 양육수당 지원」, 보도자료, 2009. 5. 4.
- 손연정·강동우·정성미, 『소비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 한국노동연구원, 2019.
- 송헌재, 『근로장려세제(EITC)의 정책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2.
- 신상화·김문정,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이승호·홍민기,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정책』, 제28권 제3호, 2021, pp. 17~44.
- 이철희·이수진, 「코로나19 대응 아동돌봄쿠폰 지급이 가구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경제학연구』, 제69권 제3호, 2021, pp. 5~54.
- 이태석·김미루·오윤해·이영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II』, 한국개발연구원, 2021.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 홍민기,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노동리뷰』, 2020, pp. 21~38.
- Arrondel, Luc, Pierre Lamarche, and Frederique Savignac, “Wealth Effects on Consumption Across the Wealth Distribution: Empirical Evidence,”

-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No. 552, 2015.
- Athreya, Kartik and Devin Reilly, and Nicole Simpson, "Single Mothers and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surance Without Disincentives?," *IZA Discussion Paper*, No. 8114, 2014.
- Autor, David H. and David Dorn, "The Growth of Low Skill Service Job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103(5), 2013, pp. 1553~1597.
- Baek, S., S. Kim, T. Rhee, and W. Shin, "The consumption response to universal payment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2021.
- Baker, S. R., R. A. Farrokhnia, S. Meyer, M. Pagel, and C. Yannelis, "Income, liquidity, and the consumption response to the 2020 economic stimulus paymen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o. w27097, 2020.
- Barrow, L. and L. McGranahan, "The effects of the earned income credit on the seasonality of household expenditures," *National Tax Journal*, 53(4), 2000, pp. 1211~1243.
- Bastian, J. and L. Lochner,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Maternal Time Use: More Time Working and Less Time with Kid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0(3), 2022, pp. 573~611.
- Braga, B., F. Blavin, and A. Gangopadhyaya, "The long-term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health outcom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0, 2020.
- David H. Autor and David Dorn, "The Growth of Low-Skill Service Job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103(5), 2013, pp. 1553~1597.
- Goodman-Bacon, A. and L. McGranahan, "How do EITC recipients spend their refunds?," *Economic Perspectives*, 32(2), 2008, pp. 17~32.
- Johnson, D. S., J. A. Parker, and N. S. Souleles, "Household Expenditure

- and the Income Tax Rebates of 2001,”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6(5), 2006, pp. 1589~1610.
- McGranahan, Leslie and Schanzenbach, Diane Whitmore,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Food Consumption Patterns,” *FRB of Chicago Working Paper*, No. 2013-14, 2013.
- Meyer, Bruce D. and James X. Sullivan, “Consumption and income poverty over the business cycle,” *Who Loses in the Downturn? Economic Crisis, 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11.
- Paiella, Monica, “Does wealth affect consumption? Evidence for Italy,” *Journal of Macroeconomics*, 29(1), 2007, pp. 189~205.
- Parker, J. A., N. S. Souleles, D. S. Johnson, and R. McClelland, “Consumer Spending and the Economic Stimulus Payments of 2008,”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2013, pp. 2530~2053.
- Takahiro, Hattori and Komura Norihiro and Unayama Takashi, “Impact of Cash Transfers on Consump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idence from Japanese Special Cash Payments,” *Discussion papers*, No. 21043,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RIETI), 2021.
- Thaler, Richard H. and H. M. Shefrin, “An Economic Theory of Self-Contro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2), 1981, pp. 392~406.
- Yang Tzu-Ting, “Family Labor Supply and the Timing of Cash Transfers: Evidence from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Journal of Human Resources*, 53(2), 2018, pp. 445~473.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7&tabMenuId=93&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un>

defined, 검색일자: 2022. 6. 27.

\_\_\_\_\_,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8225&ancYd=20211228&ancNo=18634&efYd=2022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J100:5>, 검색일자: 2022. 10. 18.

\_\_\_\_\_,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109%EC%A1%B0>, 검색일자: 2022. 12. 6.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검색일자: 2022. 6. 27.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www.irs.gov](http://www.irs.gov), 검색일자: 2022. 9. 1.

## 부 록

〈부표 1〉 농식품패널 조사품목(대분류 및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가공식품	가루류
	가지가공식품
	간식류
	감가공식품
	감귤가공식품
	감자가공식품
	갯가공식품
	건과_건과류가공식품
	고구마가공식품
	고사리가공식품
	고추가공식품
	과일과채혼합과일가공식품
	기타가공식품
	기타곡물류가공식품
	기타과일가공식품
	기타과채류가공식품
	기타근채류가공식품
	기타나물류가공식품
	기타서류가공식품
	기타엽경채류가공식품
	기타유제품
	기타육류가공식품
	기타조미채류가공식품
	기타채소류가공식품
	기타특작류가공식품
	김밥재료세트
	김치

〈부표 1〉의 계속

대분류	중분류
가공식품	깨가공식품
	난류가공식품
	닭고기가공식품
	당근가공식품
	돼지고기가공식품
	두류가공식품
	딸기가공식품
	땅콩가공식품
	레몬가공식품
	마가공식품
	마늘가공식품
	매실가공식품
	메론가공식품
	무가공식품
	목가공식품
	무음과일가공식품
	밀가공식품
	바나나가공식품
	반찬류
	배가공식품
	배추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베리가공식품
	보리쌀가공식품
	복숭아가공식품
	부추가공식품
	분유
	사과가공식품
	산삼가공식품
	산양유
	상추가공식품
	생강가공식품
	생수
	소스류

〈부표 1〉의 계속

대분류	중분류
가공식품	쇠고기가공식품
	수박가공식품
	수산물가공식품
	시금치가공식품
	쌀가공식품
	쌈채소가공식품
	아이스크림
	알로에가공식품
	약용작물가공식품
	양배추가공식품
	양상추가공식품
	양파가공식품
	얼음
	연근가공식품
	열대과일가공식품
	오렌지가공식품
	오리고기가공식품
	오이가공식품
	옥수수가공식품
	요구르트
	우영가공식품
	우유
	유지류
	음료
	인삼가공식품
	자두가공식품
	잡곡가공식품
	장류
	조미료
	주류
	즉석식품
	차
	참다래가공식품
참외가공식품	

〈부표 1〉의 계속

대분류	중분류
가공식품	체리가공식품
	치즈
	커피
	콩나물가공식품
	토마토가공식품
	파가공식품
	파인애플가공식품
	파프리카_피망가공식품
	포도가공식품
	호박가공식품
건과_건과류	건과_건과류
곡물류	기타곡물류
	두류
	밀쌀
	보리쌀
	쌀
	옥수수
	잡곡
과일과채혼합	과일과채혼합
과일류	감귤
	기타과일
	단감
	떨은감
	레몬
	매실
	뽕음과일
	바나나
	배
	베리
	복숭아
	사과
	열대과일
	오렌지
자두	

〈부표 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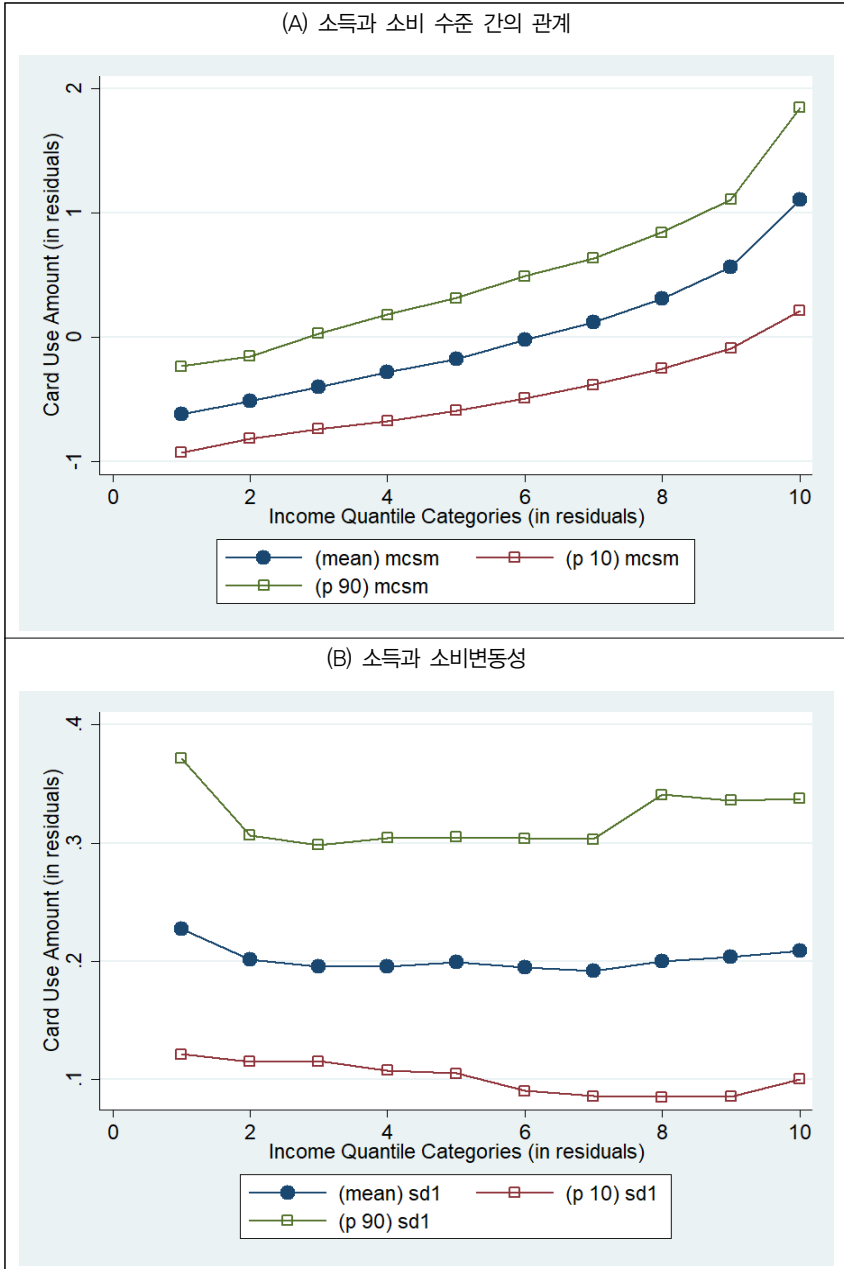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과일류	참다래
	체리
	파인애플
	포도
과채류	가지
	기타과채류
	딸기
	메론
	수박
	오이
	참외
	토마토
	호박
	근채류
당근	
마	
무	
연근	
우엉	
기타	기타
기타채소류	기타채소류
나물류	고사리
	기타나물
	콩나물
서류	감자
	고구마
	기타서류
수산물	어패류
	해조류
엽경채류	갓
	기타엽경채류
	배추
	상추
	시금치

〈부표 1〉의 계속

대분류	중분류
엽경채류	쌈채소
	양배추
	양상추
조미채류	고추
	기타조미채류
	미늘
	부추
	생강
	양파
	파
	파프리카_피망
	기타육류
	꿀
축산물	난류
	닭고기_국내산
	닭고기_기타
	닭고기_수입산
	돼지고기_국내산
	돼지고기_기타
	돼지고기_수입산
	쇠고기_국내산
	쇠고기_기타
	쇠고기_수입산
	오리고기
	기타특작류
	특작류
땅콩	
버섯	
산삼	
알로에	
약용작물	
인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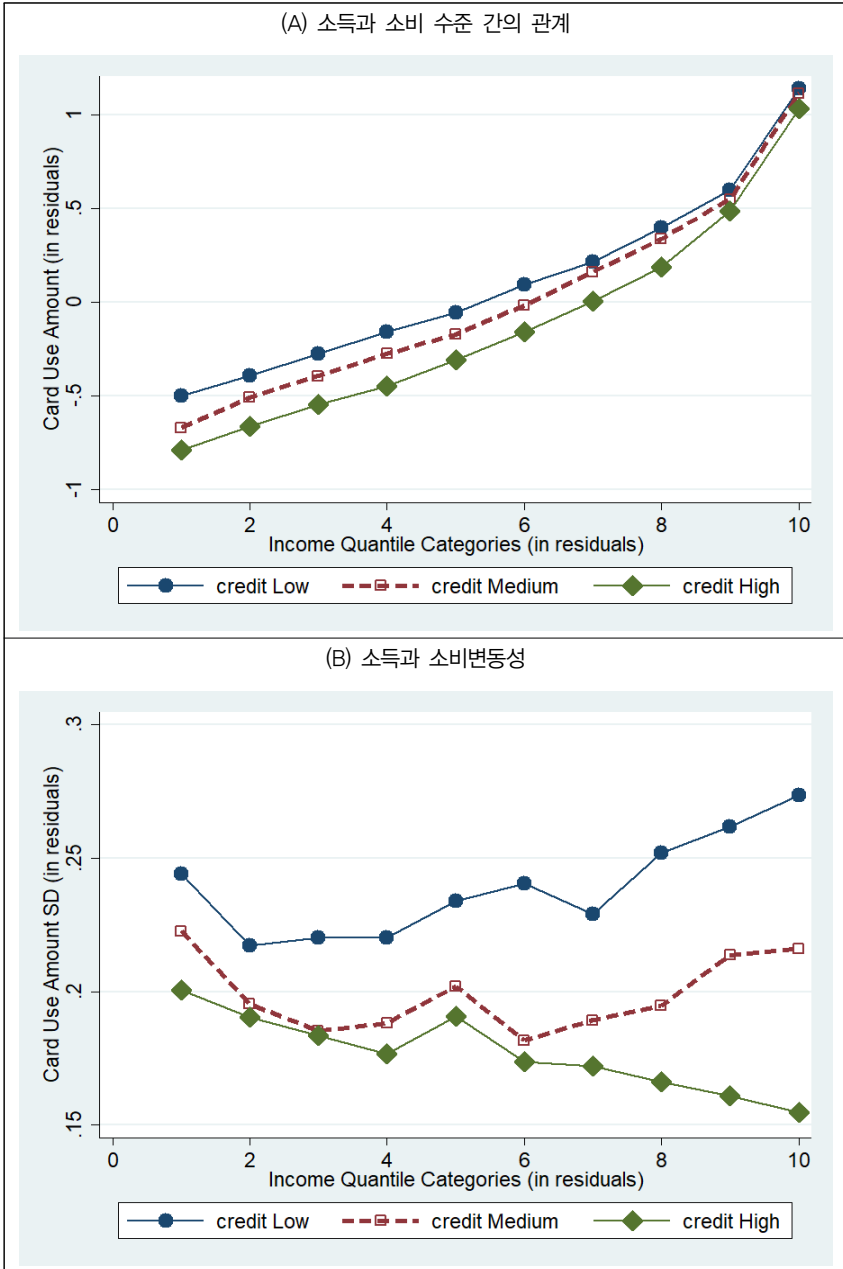
자료: 「농식품 소비자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그림 1] 소득과 소비 수준의 관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구매한 맞춤형 KCB 가구 신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부그림 2] 소득, 소비, 유동성 수준의 관계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구매한 맞춤형 KCB 가구 신용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

---

김빛마로 · 김문정

본 연구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가구소득에 충격을 주는 사건(event)을 외생적 변화로 활용하여 가구의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다양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근로빈곤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정책(근로장려세제)의 소비효과를 양적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 근로장려금 지급이 소비지출액 및 대출상환금액을 증가시키고, 신규 신용대출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 교육비, 통신비, 가사서비스 등에서 소비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농식품 소비의 경우 소비가 양적으로 증대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개선되는 패턴도 관측되었다. 상술한 분석 결과는 다양한 분석에서 강건하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현금 및 현물 지원 정책, 근로장려세제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The Effe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on the Consumption of Working Poor Households

---

Bitmaro Kim and Moonjung Kim

Using various micro-level data, we study consumption responses of working poor households to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To this end, we exploit the expansion of EITC in South Korea which was in effect from 2018 and argue this is a quasi-natural experiment induced by the policy change.

We find that EITC recipients increase their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debt payoffs. Specifically, EITC recipients increased their agricultural food, education, communication services, and housekeeping expenditures significantly. As for the agricultural food consumption, we also find some evidence that they consume more of “high-quality” goods after they receive EITC payments. Our main findings are robust to alternative specifications.



## ■ 저자약력

### 김빛마로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김문정

고려대학교 영문학,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자료 수집 및 정리

**정보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응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박주혜**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2-05

##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이 근로빈곤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연구

---

발행	행	2022년 12월 30일
저자	자	김빛마로 · 김문정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www.kjpt.re.kr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정가	가	17,000원
조판 및 인쇄	쇄	고려씨엔피
I S B N		979-11-6655-185-7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인쇄되었습니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代) www.kipf.re.kr



9 791166 551857  
ISBN 979-11-6655-185-7